

'99-142

농림부홈페이지
<http://www.maf.go.kr>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촌개발

총 5권중 제4권

1999. 11. 20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임·삼협조합, 농업기반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0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개발과(전화 589-2039, 589-2042)
 - 구 입 문 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전화 589-2032, 589-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4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03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02호)	109
V. 참고자료	137
1.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	139
2.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45조원) 계획	143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5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51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차율)	153
2. 토양개량사업(차율)	20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공공)	226
4. 받기반정비사업(공공)	236
5. 경지정리사업(공공)	263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302
7. 배수개선사업(공공)	316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339
9. 대중규모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75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조사연구사업(공공)	415
① 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	451
12.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68
13.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	499
II. 농업기계화	519
14. 농기계구입지원(차율)	521
15. 농기계사후관리지원(차율)	54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6. 농기계생산지원(공공)	574
III. 생산및유통개선	591
17.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차율)	593
18. 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610
① 협동조합 합병지원 ②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19.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공공)	619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9
20.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	681
II. 사육기반확충	691
21.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자율)	693
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 시설 ③ 경주마 육성사업	
22. 가축 계열화사업(공공)	751
23.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공공)	766
24. 가축개량사업(공공)	768
① 한우개량 ②젓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 개량 ⑤가축개량기반구축	
III. 생산및유통개선(원예)	809
25.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811
① 물류표준화 ② 규격출하 ③물류기기 공동이용 추진	
26. 생산자 조직육성지원(자율)	850
①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②공동규격출하촉진 ③인삼생산장려사업	
27. 산지유통 기반확충(자율)	873
① 산지유통센터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8.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지원(공공)	929
① 도매시장건설 ② 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수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9. 농산물 물류센터(종합유통센터) 지원(공공)	970
①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③ 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지원	
30. 농산물 직거래시설지원(공공)	1003
① 직거래장터지원 ②파머스마켓지원 ③ 직거래자금지원	
31. 채소 수급안정사업(공공)	1023
32. 농축산물 판매촉진(공공)	1030
33.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1035
34. 농산물 무역진흥센터건설(공공)	1057
35.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공공)	1063
IV. 생산및유통개선(축산)	1081
36. 축산물 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083
①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②축산물공판장건설	
37.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094
① 축산물가공유통시설 ② 소매유통시설 ③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자금	
④규격돈생산출하촉진자금 ⑤축산물등급판정 ⑥우수축출하포상금	
38. 가축공제 및 기술개발(공공)	1142
① 가축공제 ②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39. 축산 기자재 생산시설지원(공공)	1149
40.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155
41.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170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 위생시설 자금지원	
42.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195
43. 축산자조금지원(공공)	1203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 개선	1207
44.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자율)	1209
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5. 농촌가공산업육성지원(자율)	1257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기술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341
46. 농립기술개발사업(공공)	1343
47.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352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8. 기술보급사업*(공공)	1372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411
49.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1413
50.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자율)	1448
5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자율)	1467
5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498
5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510
IV. 소득원개발	1549
5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1551
55.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1600
56.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1617
5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631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645
58.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공공)	16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9.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1725

제5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749
60. 산림경영장비지원(차율)	1751
61. 영림계획(차율)	1755
6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760
63.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1765
① 임도시설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③ 사방사업	
64. 임업기술지도(공공)	1779
II. 생산및유통개선	1783
65. 임산소득증대(차율)	1785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6.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차율)	1813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7.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1830
6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833
① 임산물 유통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시설	
III. 인력육성	1879
69.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차율)	1881
70.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1886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1893
71.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1895
72. 산촌종합개발(공공)	1902
V. 산림자원조성	1911
73. 해외조림사업(차율)	1913
74. 산림조성(공공)	1920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산림생태보전	

I . 생산 및 유통개선

여 백

44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자율)

I.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과장 안병규, 사무관 김완수)입니다.

1. 목 적

- 중소농가가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방향

-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 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소농단지는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되 그 이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인증 등 유통지원

3. 근거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8	'99	2000(예산안)	2001~2004
사 업 량		개소 1,000	398	70	40	492
사 업 비	계	250,000	99,500	17,500	10,000	123,000
	보 조	72,900	42,800	3,500	2,000	24,600
	국고용자	77,100	16,900	7,000	4,000	49,200
	지방비	50,000	19,900	3,500	2,000	24,600
자 답	50,000	19,900	3,500	2,000	24,6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전업농육성 등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중소농지원 대책을 친환경농업육성과 연계하여 '95년도 부터 사업시작

(2) 지원대상자(단지)

- 소유농지 2.0ha이하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단지), 다만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소유농지 2.0ha이상 규모의 농가도 참여 가능 (2.0ha 이상 경작농가가 참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함.)
 - 농가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참여대상지역 및 농가수 확대 유도
 - 단지구성원 중에 유기농법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단지에는 벼 재배농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벼 재배시는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유도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되 그외 지역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3)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단지당 250백만원(국고20%, 지방비(교부세)20%, 융자40%, 자부담20%)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상환

(4) 지원시설

구분	시설내역
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퇴비살포기○ 유기자원화 생산시설(토착미생물생산시설 및 창고, 배합기, 로더, 운반차량 등 포함)○ 기타 시설 및 장비 (예냉시설, 냉장차 등)
개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형 하우스 또는 비가림시설○ 환경친화형 축사○ 기타 시설장비

- 지역실정과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단지당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동·개별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개별시설로서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2을 초과할수 없음
 - 기타시설 및 장비중 단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퇴비살포기, 당도측정기, 간이농약분석기, 토양검정기, 예냉시설, 냉장차도 지원 가능

- 기타 타농림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중에서 중소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 확산차원에서 오리농법을 비롯한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가능
 - 산지직판장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
 - 푸른들 가꾸기와 연계하여 사료작물 재배시 사료작물 수확기계 지원가능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개소 40	백만원 10,000	6,000 (60%)	2,000 (20%)	4,000 (40%)	2,000 (20%)	2,000 (20%)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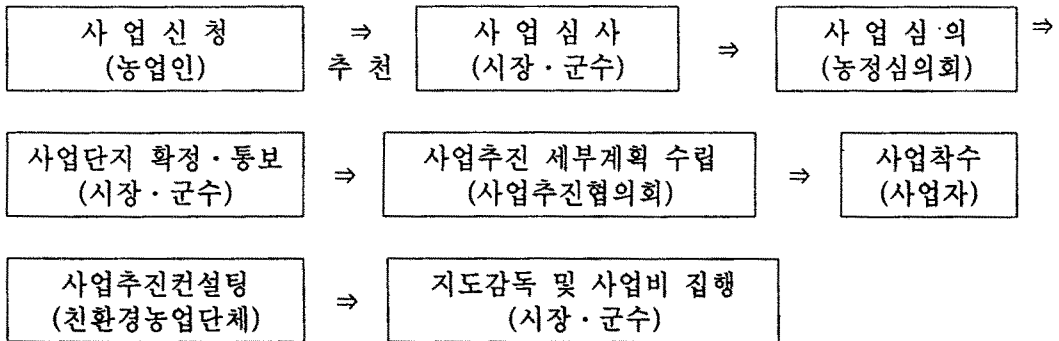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 : 산업·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주) 추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협,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등

(2)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시장·군수는 참여농가대표 2~3인, 친환경농업단체 지역대표, 행정·지도·농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운영
 - 임무 :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추진방안 수시협의 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설별(공동·개별) 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 참여농가의 합의를 얻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공동시설 및 장비의 경우 지자체, 농협·임협 등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후 공동이용토록 유도

○ 사업대상 및 사업계획 변경

-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승인된 단지(참여농가 포함) 및 사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농가 대표가 추진협약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장 변경시 읍·면·리간 변경은 시장·군수가, 시·군간 변경은 시·도지사가 변경신청을 받아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시설설계

○ 환경친화적 하우스

- 이미 개발되어 있는 농가보급형 하우스(예: 1-2W형, 무기등형 등)를 선택하도록 하되 참여농가 희망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가자율선택 가능

○ 환경친화적 축사

-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또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가 공동 개발 보급한 『유기·자연농업형 축사설계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규모를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도를 작성 시공

○ 예냉시설

-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예냉시설 설계도를 이용(농업과학기술원, 식품개발연구원의 설계도)

○ 토착미생물생산시설

- 자체설계도 작성 시공

○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기타시설

- 유사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기존시설 활용

- 시장·군수는 예냉시설, 냉장차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생산품목, 출하물량,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근의 기존예냉시설, 냉장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복 또는 과잉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 설치된 환경친화형 하우스 및 축사에 대한 규모확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음.

(4) 시공업체 선정

- 단지대표자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되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시공

(5)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6)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단지대표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설계서를 요하는 정도의 건축물 기성고는 전문직이 확인)에 따라 검정후 사업비를 시공업체(농가 직접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대표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를 제출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유인비 등 필요한 경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라. 기타사항

- 소유농지 토지대장상 논, 밭의 소유 개념이며 동일거주인(처, 부모)은 동일인으로 간주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운영 약관을 만들어 운용
- 토착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유기질비료는 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되 판매 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아서 판매
- 단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은 희망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보증을 받아 출하
- 추천단체는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여 매년말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기술·경영지도 실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기술·경영지도단체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사업비 회수 명령을 할 수 있음
- 동 사업시설·장비는 사후관리기간내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동사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준공·구입 후	시설 10년, 장비 5년	타용도 및 사업 목적외에 사용 금지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사항 등을 기록

○ 중요재산의 관리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나. 보고 기타

○ 사업계획 보고(별지1호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2월20일까지) (2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1호서식으로 전산입력)

- 시·군 → 시·도 → 농림부
(4월20일, 9월20일까지) (4월말, 9월말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 3월20일까지) (익년 3월말까지)

6. 2001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2)”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 영농조직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고, 추천기관·단체의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추천서(추천기관·단체는 기술, 경영지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추천서,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5(사업개요)의 “가(2)”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으로 하되 논에 타작물재배,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설치시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함.

○ 우선순위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중산간지에서 유기·자연·토종농업 선도농가가 있는 영농조직으로서 단지참여 희망농가중 신청일 현재 1농가 이상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하고 있는 영농조직

2순위 : 유기·자연·토종농업을 하고자 하는 영농조직

3순위 : 중소농으로서 고품질농산물생산 단지화가 가능한 영농조직

○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를 확정

바. 기타사항

-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의 시설메뉴 외에도 타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시설·장비)중에서 중소농가 소득증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권자(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함

【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 보고서 기재요령 】

※ 모든 숫자는 정수로 기재하고 금액단위는 백만원

1. 조사시점을 기준
2. 단지명칭을 기재하되 약칭으로 기재, 예)자연농업협회사주시지회 → 자농나주시회
3. 사업지원 년도기재
4.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농법을 기재하되 단지참여 농가마다 농법이 다를 때는 혼합으로 기재
- 5.~13. 단지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력, 직업, 영농종사경력, 전문교육이수실적(누계), 영농상황 등 경영장부 기록실태를 기재
14. 단지참여농가중 친환경농업실천농가수를 기준하여 기재
15. 법인은 법인등기일 비법인은 결성일 기재
16. 단지위치가 겹치거나 일부지역이 부분적으로 겹칠때는 상위번호를 기재
 예)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중산간지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부지역은 중산간지이고 일부지역은 평야지일 때는 중산간지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밖이고 일부는 개발제한구역내일 때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표기
 * 중산간지 : 해발 250m이상, 평야지:해발250m이하
 * 단지의 반경거리는 사업시설물 위치를 기준함
17. 단지 참여농가 전체의 소유농지
18. 단지 참여농가수
19. 사업신청시 추천기관을 기재(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협, 유기·자연농업협회 등)
20. 소득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큰 작목을 기재
21. 단지의 공동사업 자본금, 공동부채, 공동자산평가총액, 공동기금조성액 기재
22. 참여농가 평균의 연간 농업소득을 사업전, 후로 구분 기재
23. 단지참여농가 전체의 영농규모로서 경종농업이 이모작일 경우에는 면적×2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닐 하우스의 재배면적은 채소, 과수작목 등 경종농업에 포함하여 년3기작일 경우 면적×3으로 환산기재, 시설원예란에는 비가림시설 등의 하우스 시설규모를 기재
24. 단지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을 기재
25.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하며 단지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토착미생물 생산 시설은 건축물과 부대장비 및 구입할 장비와 시설을 구분 기재하며 사업비 금액 총계는 250백만원임
26. 최종변경계획 내역을 기재
27. 항목별 사업계획에 대한 시설설치 공정 진도 및 장비구입 실적 진도를 기재
28. 토착미생물생산시설의 부대장비(28항)에 대한 대수 예) 로다 2대인 경우 □에 “2” 기재
29. 유통·판매현황을 기재하되 겹치거나 중복시는 상위번호를 기재

II. 친환경농업지구구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과장 안병규, 사무관 김완수)입니다.

1. 목 적

-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안전농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고자 함.

2. 추진방향

-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 농토배양을 통한 흙살리기 확산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 실천
- 환경오염방지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 축산폐수 및 폐영농자재 수집 등
-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

3. 근거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2004	
사 업 량	개소 189	-	5	6	5	173	
사 업 비	계	378,000	-	10,000	10,000	10,000	348,000
	보 조	151,200	-	4,000	4,000	4,000	139,200
	국고융자	-	-	-	-	-	-
	지방비 자 담	151,200 75,600	- -	4,000 2,000	4,000 2,000	4,000 2,000	139,200 69,600

* 2000년도 사업량은 지구당 단가(10억원 또는 20억원)에 따라 변경 가능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농약·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친환경농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GR 등 친환경농업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처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조직

○ 지역

- 정부에서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
- 사업참여농가가 50호 이상이고 지역내 전체농가의 1/2 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 * 대상지역 선정시 참여농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가급적 참여농가 확대 유도
- 친환경농업실천 의지가 강한 경우 당해 행정구역단위(읍·면)를 사업대상지구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
 - * 행정구역단위를 사업대상지구로 할 경우에는 농협 등의 단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거나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중 정부가 시행중인 중소농사업단지로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가능 (동일한 시설·장비는 해당농가에 중복지원할 수 없음)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선정

○ 작 목

- 벼,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3)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지구당 1,000백만원,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지구당 2,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20%

(4) 지원대상사업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p><공동이용시설> 1.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장비(농약·화학비료·축산분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자원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기, 창고, 배합기, 로다, 운반차량, 분쇄기 등 ○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팽연왕겨 제조시설 및 장비 ○ 환경친화적 자재 제조시설·장비 ○ 병해충종합방제(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 천적곤충증식 시설·장비 ○ 농산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의 퇴비·사료화 제조 시설·장비 ○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및 공동퇴비 제조시설·장비 ○ 축분액비 저장시설 및 살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구내 발생량을 처리기준으로 설치 (외부반입 불가) ○ 토양개량제 살포장비, 푸른들가꾸기와 연계한 사료작물 수확기 ○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및 재활용품 처리시설·장비 ○ 토양유실방지시설 및 토양검정에 필요한 장비 ○ 기타 농약·화학비료 경감 및 축산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간이농약분석기 	
<p><개별시설>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비닐하우스(부대시설 포함), 축사, 버섯재배사, 오리농법 실천 시설·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직포, 비가림시설, 관정, 퇴비살포기, 오리 목책 등 포함 - 기타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타 안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p><공동이용시설>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도측정기, 예냉시설, 냉장차,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및 기타 직거래·계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p><공동이용시설> 4. 친환경농업 기술 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교육용기자재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p>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p>
<p>5.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 메뉴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선택하여 사업 추진
 - 지원대상사업메뉴 중 공동이용시설에 우선을 두고 사업추진 유도
- 지원대상사업 중 1~3항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 투자되어야 함.
- 1~5항목중 1항목이 전체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구입비는 전체사업비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사업메뉴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함. 다만,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사업자 중 최근 5년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규모를 확대하거나 증축시는 지원가능함.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개소 5	백만원 10,000	4,000 (40%)	4,000 (40%)	-	4,000 (40%)	2,000 (20%)

* 사업량은 지구당 단가(10억원 또는 20억원)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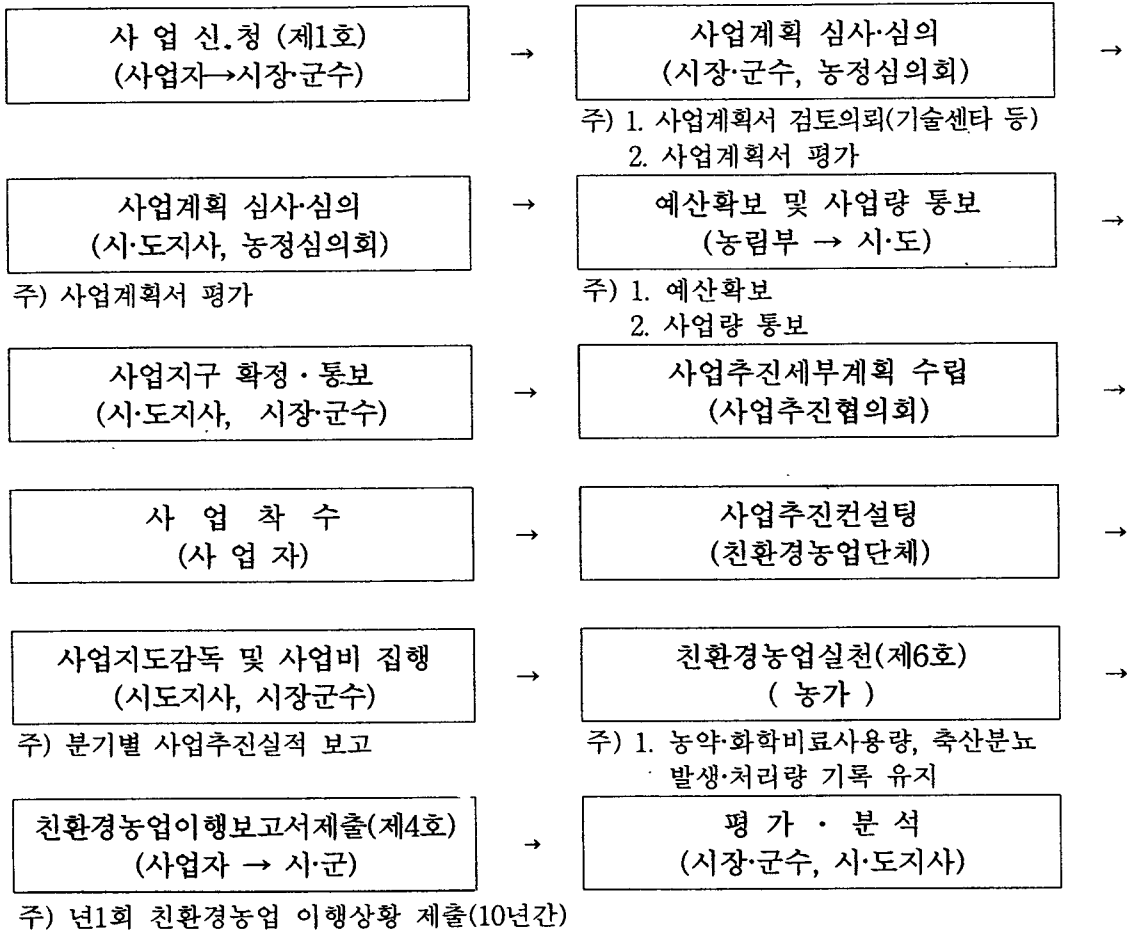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 : 산업·농정과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 농림부장관이 확정통보한 사업량에 따라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보고하고 사업계획 승인전에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함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참여농가 4~5인, 친환경농업단체 지역대표, 행정·지도·농협 등 전문가로 협의회 구성·운영
 - 임무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추진방안 수시협의 등

- 농업환경기초조사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실시전에 농업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도농업기술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시·도지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참여농가 대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를 경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는 주요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기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업체가 공사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 사업자는 사업내용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별지 제5호 서식)이 가능함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여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마을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 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라. 기타사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 “관리 카드”를 비치·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부터	10년간	○ 친환경농업 이행기간 및 장비 내구연한을 감안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10년간(장비는 5년)타인에게 시설을 양도를 할 수 없음. ○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장비	장비구입시부터	5년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내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이용시설 운영 약관”을 만들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인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자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비치하여야 함.

○ 사업자 대표

- 사업자 대표는 참여농가의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의 기록이행상황을 분기1회이상 확인·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1년차부터 향후 10년차까지 매년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해 1.31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행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 농법현황(유기, 자연, 토종, 오리, 우렁이농법 등), 품질인증(유기, 무농약, 저농약)등

※ 생산물의 농약잔류분석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양의 성분분석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결과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매년 벼농사가 끝난 후 관련 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성적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도 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의 농약잔류분석을 매년 벼농사가 끝난 후 관련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성적표를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소속 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산물 품질관리, 각종농법,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의 재배조건 및 포장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품질인증 및 참여농가가 많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 협

- 지역농협장은 친환경농업지구에 판매한 농약·화학비료량을 수사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농협장은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서울)이용, 위탁 판매 주선, 민간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판매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참여 및 지도 등 친환경농업지구 내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농업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고 전년도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사업지구를 도내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시켜야 함.

나. 보 고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이행보고(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3.20까지) (익년3.30까지)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2001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 가(2)”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다.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의 대표, 친환경농업단체 또는 농협 등과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 신청

라.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공통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서류(첨부서류 누락시 사업신청 불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붙임1)
 - 현재의 영농현황(붙임2)
 - 각서 및 참여 동의서(붙임3)
 - ※ 주민회의록 사본 첨부
 - 친환경농업단체 검토의견
 - 부지사용 승인서(붙임4)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1조 내지 제19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별로 아래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붙임5)를 발급 받아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보완
 - 읍면동 : 농가, 경지면적, 지구현황 등 일반여건
 - 농업기술센터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인증 현황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 협 : 재무구조,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기준(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1.사 업 계획서 (200점)	가.농약·화학 비료, 축산분 뇨 등 오염 경감(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의 단계별 절감계획, 축산분뇨의 자원화계획 등 환경오염경감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나.농업환경 유지·개량 (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농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퇴비)사용, 객토 및 토양 개량제공급, 깊이갈이 등 종합 농토배양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개량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다.친환경농업 육 성 (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농업육성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
	라.유통·판매 대 책 (50점)	○ 상 : 50점(신청자중 1명이내) ○ 중 : 40점(신청자중 2명이내) ○ 하 : 30점(상,중 이외의 신청자)	○ 현재의 유통·판매 실태 및 앞으로의 유통·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대책 등 장기운영 계획에 대한 평가
2지도자 (100점)	가.지도력 (30점)	○상 : 30점(신청자중 1명이내) ○중 : 25점(신청자중 2명이내) ○하 : 20점(상중이외의 신청자)	○ 과거 이장, 영농회장, 4H회장 등 지도자 경력 반영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나. 학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대학졸업자: 20점 ○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자: 15점 ○ 기타 학교졸업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외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관이 인정한 특농가농장 및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민간단체(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단체) ※ 교육기간은 통산일수를 적용하며 단위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만 통산일수에 반영됨
	다. 영농교육 훈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25점 ○ 3개월이상 : 20점 ○ 1개월이상 : 15점 	
	라. 영농경력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15-25년 : 25점 ○ “ 10-14년 : 20점 ○ “ 10년이하: 15점 	
3 일반여건 (100점)	가. 영농규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ha 이상 : 25점 ○ 30 ~ 64ha : 20점 ○ 30ha 미만 :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의 지목상 논·밭 면적 기준
	나. 농가의 연령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 25점 ○ 40~49% : 20점 ○ 40% 미만 :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세의 순수농가(학생, 취업자 제외)로서 주민등록표상의 연령을 적용(여자 포함) ※ 20~50세 농가인구/대상지역 농가의 20세 이상 인구(남녀포함).
	다. 벼재배 농가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이상 : 25점 ○ 60~89% : 20점 ○ 60% 미만 :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벼 재배기준 ※ 벼재배농가/대상지역농가
	라. 관광 및 홍보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25점(1개소 이내) ○ 중 : 20점(2개소 이내) ○ 하 : 15점(상·중외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관광·홍보여건을 종합판단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4.친 환경농 업여건 (100점)	가.친 환경농 업실천 농가 (30점)	○20% 이상 : 30점 ○10~19% : 20점 ○10% 미만 : 10점	○ 전년도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생산 (품질인증, 표시신고) 실적기준 ※ 품질인증농가/대상지역 농가수
	나.사 업 참여도 (30점)	○80% 이상 : 30점 ○60~79% : 20점 ○60% 미만 : 10점	○ 사업참여 농가의 동의서에 의함 ※ 사업참여농가/대상지역농가수
	다.기준시설 (20점)	○5억이상 : 20점 ○2~4억원 : 15점 ○2억원 미만: 10점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설 투자사업한 투자총액 기준 ※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한 금액도 포함되며 최종정산 금액 기준임
	라. 판매방법 (20점)	○ 참여농가의 80% 이상 : 20점 ○50~79% : 15점 ○50% 미만 : 10점	○ 자체유통판매망(직거래 포함)을 통하여 판매 ※ 연간 생산량의 1/2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객관적인 자료 제시)

※ 1~3항의 평가시 상은 신청자중 1명 이내로, 중은 2명 이내로 평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다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보고서(붙임6)와 지방비 확보의지 등을 감안한 검토의견서(붙임5)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본일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2000. 2. 28)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도지사는 평가 순위별로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붙임7) 및 사업비 집계표(붙임8)를 작성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등 종합 검토 의견서(붙임5)를 작성하여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신청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본일체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2000.9.30까지)

○ 우선순위

-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평가결과 점수를 적용한 순위

※ 평가결과, 사업계획서상 ①농약 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 ③친환경농업육성 ④유통·판매대책 항목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방비 확보의지 등을 감안한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중 시·도평가 항목인 “1.사업계획서” 항목을 평가하여 시·군의 평가 점수와 합산, 평균치를 적용하고 여타 “2.지도자, 3.일반여건, 4.친환경농업여건” 항목 점수는 시·군 평가 점수를 적용, 순위를 정하여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단가 10억원 또는 20억원 규모로 선택)
- ※ 아래 사업계획에서 5)장기운영 계획이 어느 한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가. 현 황

□ 기본현황

- 위 치 : 사업대상지역 등
- 인 구 : 세대수, 농가수, 인구수(남, 여)
- 농가현황 :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규모, 농법 등
 - 노 동 력 : 20~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 경지면적 : ha(논, 밭)
 - 영농규모 : 경종, 축산, 비닐하우스
 - 농 법 : 일반농법 농가수, ha, 친환경농업농가수, ha

□ 조직현황

- 대표자(지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 학력, 경력 등 상세히 기록
 - ※ 필요시 객관적인 근거자료 첨부
- 조직 : 조직명,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회원수, 사업내용 등 상세히 기록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 총 투자금액 : 백만원
 - ※ 세부사업내역 (별지제2호서식)
- 본 사업과 연계가능여부 및 활용계획

나. 지구의 특징

지리적·기후적 특징

다. 친환경농업 실천방법 및 생산물의 특징

- 농법, 농산물의 특징 등
- 관광·교육·홍보적 특징
- 유통·판매의 특징
- 후손이 물려받을 여건 등
- 기 타

라. 사업내용

1)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 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개별시설·장비는 개별 농가명을, 공동시설·장비는 수혜(이용)자 ○○○외 명으로 기재

2)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3)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4) 세부사업 추진일정 :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소요액

5) 장기운영계획

- 현재의 실태와 연차적 절감·개량·육성계획 -

- ①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오염경감 계획 및 이행방법
-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 계획 및 이행방법
- ③ 유기·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이행방법
- ④ 유통·판매대책 및 이행방법

- 6)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 친환경농업확산대책
- 7) 사업비 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8) 투자·예상효과 : 세부사업별 예상 효과
- 9) 사업계획 도면

바.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사업신청자 작성)
2. 현재의 영농현황(사업신청자 작성)
3. 각서 및 참여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8. 사업비 집계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참여 동의를 받은 후, 지역의 농업·교통·인적조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설·장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 사업대상지구의 위치, 지리·기후적 특징, 인구,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 규모, 농법 등 기본현황
 - 대표자의 학력, 경력 등 지도자의 인적사항 및 조직의 명칭, 목적, 회원 수, 사업내용 등 조직 현황
 - 유기·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실천농가 및 농법,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표시 현황, 판매방법 등 농산물의 품질실태 및 교육·홍보·관광·유통·판매의 특징 등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현황(붙임 1)과 그 활용계획
- 친환경농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사업비 산출근거, 투자예상효과,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분기별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소요액, 현재의 농업환경 실태와 연차별 오염원 경감, 농업환경유지·개량,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유통·판매 대책 등 장기운영 계획 작성
 - ① 농약·화학비료,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계획 및 이행방법
 - ② 농업환경 유지·개량계획 및 이행방법
 - ③ 유기·자연농업 등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이행방법
 - ④ 유통·판매대책 및 이행방법
 - ※ 사업계획서 평가(시장·군수, 시·도지사)시 상기 ①~④항의 장기운영계획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로 평가되면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는 본 사업시설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논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사업자선정 후순위를 부여함
-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기술교육장으로서의 활용계획 등 작성

(붙임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2)

현재의 영농현황

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작규모 ha	참여동의		품질인증여부		재배현황				판매방법여부		
			가	부	가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가	부	
세 대 주 (동거가족)													
계													

주) ※ 전체농가중 20세 이상의 남, 여를 전부 기재하고 세대주 외는 이름만을(,)내서로 표시할 것

※ 재배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판매방법은 연간 생산량의 1/2이상을 자체유통망(직거래포함)을 통하여 판매한 농가

(붙임3)

각서 및 참여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 지 면 적 : ha
- 사 업 참 여 자 : 대표자 의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 허위, 과대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문구를 명시 하여야 함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사 업 참 여 자 주소	성명	인 “
“ ”	“ ”	“ ”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을 것(동의 이후의 책임은 본인(동의자)이 짐)

(붙임4)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평)중 m(평)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승낙자 (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군수 귀하

※ 지목상 논에는 본사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붙임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의 명

2) 검토의견

-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의견
 - 읍·면 : 농가, 경지면적, 지구현황 등 일반여건
 - 지 도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 검 : 품질인증 현황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 협 : 재무구조,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시·군 지방비 확보 의지 등 종합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읍·면·동, 지도소, 농검, 농협 등 각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발급받아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보완
- 시·도 : 사업목적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등 종합 검토의견

년 월 일

기관명 ○○○○ 관인

※ 기관별 각각 작성

(붙임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사·군 → 도 제출>

항 목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1. 사업계획서	가. 오염경감대책 50점 나. 농업환경유지·개량 50 다. 친환경농업육성 50 라. 유통·판매대책 50 소 계 200		
2. 지도자	가. 지도력 30 나. 학 력 20 다. 교육훈련 25 라. 영농경력 25 소 계 100		
3. 일반여건	가. 영농규모 25 나. 농가의·년령 25 다. 벼재배농가 25 라. 관광맞홍보여건 25 소 계 100		
4. 친환경농업여건	가. 친환경농업실천 30 나. 사업참여도 30 다. 기존시설활용 20 라. 판매방법 20 소 계 100		
계	16개 항목 500점		

※ 사·군은 1-4항까지의 전항을 평가하여 사·도에 제출

(붙임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시도	사업지구	순위	평 가 점 수				비 고	
			계 (500점)	1.사 업 계획서 (200)	2 지도자 (100)	3.일반여건 (100)		4.친환경농업 여 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항은 시군 평가점수와 시도평가점수의 평균치를, ○2~4항은 시군평가 점수를 기록

※ 시도는 1항을 평가하여 시군의 1항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평균함

(붙임8)

사업비 집계표

< 시·도 → 농림부 제출용 >

시·도	사업지구	순 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소 계					
소 계					
총 계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소(사업지구 명칭) :
2. 주민 등록 번호 :
3. 성 명 :
4. 사업 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량)	금 액	시설별(량)	금 액	
				※ 주민회의록 등 주민동의서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인)

시 · 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심 사 제 의

(/ 분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민등록번호 :

3. 성 명 :

사업내용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 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 다음분기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시장·군수 → 사·도지사 → 농림부)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항 목 별		사업시행전(A)	사업후(1년차)(B)	대비(B/A)	비고
① 농 약	사 용 량	kg	kg		%	
	잔 류 량	ppm	ppm			
② 화학비료 사용량		kg	kg			
③ 축산분뇨(처리량/발생량)		() / (·) 톤	() / () 톤			
④ 친환경농업 유자개량 (토양)	산 도					
	유 기 물	%	%			
	규 산	ppm	ppm			
	중 금 속	ppm	ppm			
⑤ 친환경농업 육 성	유 기 농 업	농가	농가			
	자 연 농 업					
	토 종 농 업					
	오 리 농 업					
	우 령 이 농 법					
	·					
⑥ 품질인증	유기 재 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년 월 일

○○ 군 수 귀하

보고서 제출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대표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이행 보고서를 사업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익년 1.31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①항중 생산물(쌀)에 대한 농약잔류분석은 농검에, ④의 전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험·분석한 성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위 치		TEL	
대 표 자	한글		사업내용		
	한문				
사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중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장·군수 귀하</p>					

※ 사업내용중 시설·장비별로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함

Ⅲ.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과장 안병규, 사무관 김완수)입니다.

1. 목 적

- 벼재배에 있어 병해충종합관리기술(IPM)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INM)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 조성하여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토록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들녘단위로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친환경 벼재배기술을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마을별로 전담지도팀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을 집중지원
- 시범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 도모

3. 근거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7	'98	'99	2000 (예산안)	2001-2005
사업량(개소)	300	-	-	16	16	268
사업비(백만원)	13,600	-	-	726	726	12,168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IPM·INM 실천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전과 안전한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시행

(2) 지원대상

- 마을·들녘단위로 50ha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에서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대상면적을 가급적 100ha수준으로 확대하여 조성)

(3)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개소당 45,400천원(국고보조 80%, 지방비20%)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시범마을조성	개소 16	백만원 726	581	581	-	145	-

* 2000년 지원대상은 신규로 선정치 않고 '99 사업대상으로 하며, 인근 벼재배면적을 추가확대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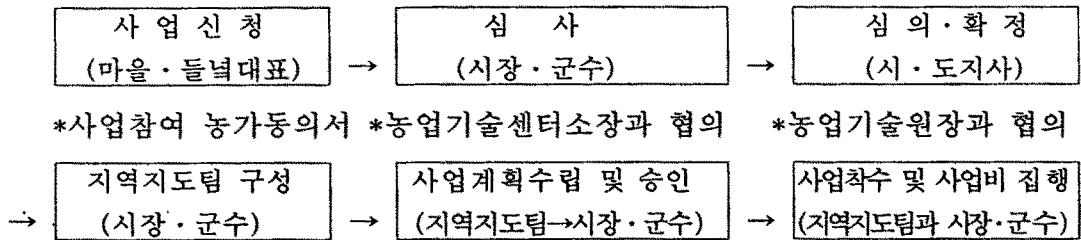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환경농업과(전화 : 02-503-7284~5)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전화 : 0331-299-2715)
- 도 농산담당과(농업기술원)
- 시·군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체계



- 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확정 내역을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역지도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2) 전담지도팀 구성 및 임무

- 지역지도팀 : 10명 이내
- 팀장 :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담당과장 협조)
- 반원 : 농업기술원 분석요원을 포함하여 2명,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대학, 민간 전문가 등 각1명

<주요임무>

- 사업계획 수립(붙임 1. 참조) 및 승인요청
- 사업비(지도운영비, 조사재료비, 친환경농업실천비)의 교부신청 및 사업비 관리의 총괄
- 시범마을 영농실태조사 및 토양, 용수, 생물상 등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
 - 조사·분석이 어려운 항목은 농업기술원 또는 중앙지원팀에 의뢰
- 협약서 작성, 재배력작성, 영농단계별 기술지도계획 수립

- ※ 참여농가의 협약·지도 불이행시 실천비 지급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범마을 농업인 교육·평가회, 시범마을 운영협의회 구성지도
- 중앙기술지원팀과의 기술·조사·분석 지원요청 및 협조
-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등

○ 중앙기술지원팀 구성 및 임무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등의 소속 관계전문가로 구성

<주요임무>

- 지역지도팀에 대한 기술 및 농업인 교육지원
 - 재배기술, IPM·INM기술, 경영분석기술 등

(3)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임무

○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5-6명으로 구성

<주요임무>

- 마을의 의사결정 및 지역지도팀과의 연락유지
- 사업참여농가의 영농계획 파악 및 친환경농업실천기록 유지
- 친환경농업실천 협약서 작성 및 홍보(표찰설치 등) 등

(4) 참여농가의 임무

- 친환경농업실천협약서 이행 및 기록유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지도팀의 지도를 받아야함
 - * 참여농가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대장 기록 유지, 시비처방에 따른 토양 개량, 교육참여, IPM·INM 실천기술 등 친환경농업 이행 추진
-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추진
 - 사료·녹비작물재배
 - 볏짚시용, 규산질비료시용, 기타유기질시용(액비, 퇴비 또는 유기질비료)

(5) 사업비 집행방법

- 지역지도팀의 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교부신청하고, 각각의 사업비를 집행
 - 현지출장지도비, 교육·홍보비 등 지도팀(중앙지원팀 포함)의 운영비

- 토양(비옥도, 농약잔류, 중금속), 용수, 생물상 등 조사에 필요한 시약· 실험
자재 구입등 조사재료비
- 교육이수, 사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규산질비료공급, 오리농법에 필
요한 목책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하여 농가에 직접지원하는 비용
- ※ 항목별로 1/3수준으로 집행하고, 사업규모(대상면적)에 따라 사업내용간
상호조정이 가능함
- 각팀은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증빙서류를 팀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라. 사업비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지원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
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지역지도팀에게
보조금 검정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지도팀장은 거래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정산함
 -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시·군농업기
술센터 소장에게 위임

마. 기타사항

- 동사업의 사업자는 참여농가 및 지역지도팀이 되며, 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역지도팀의 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자 대표역할을
수행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범마을로 지정되면 3년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지도팀장은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 농업환경 변동실태조사 결과,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등 관계자료를 보존하여 다음해 사업추진에 활용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결과보고
 - 전담지도팀→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부장관
 - 전담지도팀→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농림부장관
- ※ 농촌진흥청장은 전국단위의 종합보고서 작성제출(배포)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2000년 사업시행요령중 (2) 지원대상요건에 적합한 자

다. 신청절차

- 마을·들녘 대표자는 참여 농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참여 농가의 동의서

○ 선정기준 및 절차

- 시장·군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대상지 중에서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도별 4-5개소를 신규로 선정함.
- ※ 동일 사업대상지를 3년간 계속사업을 하게되므로 2000년 사업대상지 (16개소)는 2001년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됨

○ 우선순위

- 시범마을 선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우선하고, 동일 조건시는 사업대상면적, 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이 우선함

바. 기타사항

- 2001년도에 지원조건, 사업지침이 달라 질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양태선, 행정사무관 배호열(농산물가공산업육성, 기술·경영지도), 농업사무관 김판중(특산단지육성), 행정사무관 박영호(명품개발)입니다.

I. 농산물가공산업육성

1. 목 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원료농산물의 구입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가공제품의 포장개선 및 홍보를 통한 상품성 제고로 수출 및 판로 확대
- 신규지원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 지원시설의 경영정상화 및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저장·자동화 시설 등에 우선 지원
- 저장·자동화시설 등 추가시설 지원시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경영정상화와 컨설팅 사업의 연계성 강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2004	
사 업 량	개소 848	46	25	20	20	60	
사 업 비	백만원 계	345,987	26,396	10,843	8,300	10,000	30,000
	보 조	124,164	5,290	-	-	-	-
	용 자	142,904	14,765	7,590	5,810	7,000	21,000
	자부담	78,919	6,341	3,253	2,490	3,000	90,0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가공사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대상자

- 시설비(전통식품가공업, 산지일반가공업)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 생산자 단체란 농가 5호 이상이 출자하고 운영기간이 1년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가공동이이란 농가 5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공동조직
 - 일반업체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식품 가공업체(민법 및 상법상 법인)
- ※ 일반업체의 사업참여 규모는 지역내 가공공장 규모, 생산능력,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판단

○ 운영비(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지정업체

(3) 지원대상품목

- 농림부 고시 제1999-69호('99.10.8)에 의거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 기타 국내산 농산물로써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받은 품목
-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유사품목은 원료의 수급현황,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균형지원

(4) 대상지역

- 농어촌특별조치법상의 농촌지역(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군의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읍·면의 지역, 동의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5) 지원기준 및 조건

□ 공통 조건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담 30%
 - 용자조건
 - 시설비 : (일반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8.0%
(기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5.0%
 - 운영비 : (일반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8.0%,
(기타) 2년거치 3년상환, 연리5.0%
- ※ 용자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신규지원

- 시설비(기준사업비)
 - 농가공동 : 5억이내,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20억이내
-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예> 기준사업비와 용자금 및 자담금 계산 예(가공공장의 기준사업비가 300백만원인 경우)

- 용자금 : 사업비 300백만원의 70% 용자(210백만원)
- 자담금 : 사업비 300백만원의 30% 자부담(90백만원)

○ 운영비(기준사업비)

- 포장디자인개발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 용기금형개발비 : 업체당 최고 50백만원(기획조사, 디자인개발, 목형, 금형, 생산용금형단계까지)
 - 홍보물 유인비 : 업체당 최고 5백만원 (팝프렛, 전단인쇄비)
- ※ 수출용은 수출실적에 따라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
(수출용 추가지원시는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내용확인후 타당성 인정후 지원)

□ 추가지원

- 대상업체 : 시설비를 이미 지원 받은 업체 중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성장유망업체, 가공공장 컨설팅사업을 받은 업체 중 컨설팅결과 시설·장비의 보완이 요구되는 업체 및 시설자동화·현대화로 경영활성화가 가능한 업체 등
- 사업품목 : 공장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저장시설(저온저장고 포함)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 가공공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 기계 장비 및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지원

(6) 지원시설의 종류 등

- 시설비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 부속건물, 오폐수처리시설, 가공기계류 등 (부지구입비는 제외)
 - ※ 저장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은 가공공장 본래기능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에 한해서 지원하며, 가공공장의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은 지원 불가
- 운영비
 - 포장개선사업 : 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 홍보지원사업 : 홍보물 유인비(팜플렛, 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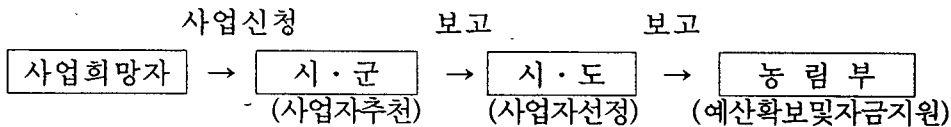
(7) 대상자 자격조건

- 가공공장 시설부지 확보
 - 신청당일까지 당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권(지상권)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 (입지기준확인서 첨부)
 - ※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산림법, 상수원관리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거 가공공장 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사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 등 보다 후위 순위로 인정
- 담보물 확보 :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첨부(별지 제4-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저 1억원 이상 출자된 법인으로 다음서류 첨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의사록 (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 (시장·군수가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각종 규정을 준수여부, 특히 출자비율 확인 (1인당 출자비율 25%이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총출자비율 준수 등)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2000 사 업 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어촌구조개선)			
			계	보조	융자	
합 계	개소 20	백만원 8,300	5,810	-	5,810	2,490
○농산물가공산업육성	20	8,300	5,810	-	5,810	2,49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 농산물가공사업 세부시행체계도 : (참고1) 참조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 → 관할 시장·군수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4호, 제4-1~4-5호 서식) 및 대상자자격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나. 사업희망자 추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 후보자 선정조서(별지제2호 서식)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장·군수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자 추천

다.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조서(별지제3호 서식)에 의견서(시장·군수의견서 포함) 및 지원순위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예산을 확보

라.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판단기준

- 기술·경영컨설팅을 받은 업체로 컨설팅 결과 추가시설 등을 권유한 업체
- 신제품 개발, 판로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시장성이 높은 업체
- 부지확보, 자부담금 확보 등 사업의지가 양호한 업체

마. 사업타당성 조사 : 농림부장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희망자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사업타당성을 조사토록 조치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 보고

바.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농정심의회 또는 가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도별 예산배분 계획을 확정시달 ('99.12월중)
-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결과 종합점수가 60점이하인 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선정의 신속한 대체 등을 위하여 동 심의 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최종확정된 자가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자 확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

사.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각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 시설비 : 시·도지사(추가지원 포함)
- 운영비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 (02) 504-9417~8, (02) 500-2677~8
- 시·도 : 농정국(농림수산국) 농산물유통과(농정유통과, 유통특작과, 감귤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 시설물 설치

- 농가공동의 사업대표자는 공동참여자와 함께 주요자산의 출자내역, 공장건설, 경영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자체정관을 작성
- 시설공사는 부실방지를 위하여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체 등을 선정 시공하되 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의 감리 및 공사감독하에 시행
 -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 가공공장시설의 계약체결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토록하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의 감리 및 공사감독하에 시행
-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보존등기 완료하고 지원목적대로 사용.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가공공장 건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철저
 -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실시

□ 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포장개선사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업체별, 용도별(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개발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 개발계약·용기금형개발 계약체결 등 사업실시
 -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 공인디자인 전문회사 이외의 무자격 디자인회사와 계약불가
-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 의뢰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디자인 전문업체도 가능
 - 유리병 제조업체로서 법인신고를 필한 업체
 - * 유리병 중개업체(딜러)와 계약은 불허

- 홍보지원사업
 - 홍보물 제작회사(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홍보용 팜프렛·전단을 유인 활용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고, 특히 본 지침에서 정하는 포장디자인개발회사 또는 업체와 디자인개발 계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 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체 이외의 다른업체와 계약시 재계약토록 지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승인후 불가피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사항 : 시·군간 사업장 변경
 - 시장·군수 승인 및 신고사항
 - 시·군내 사업장 변경(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승인)
 - 사업대표자 변경(신고)
 - 품목변경(신고)
 - 상호변경 및 품목추가 등 기타 경미한 사항(신고)

라.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협중앙회장(농특회계사무국) → 농·축·임·협·중·앙·회·장 → 농·축·임·협·시·도·지·회(지역본부) → 농·축·임·협·시·군·지·부
- 신청 및 지급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결정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자 (시·군지부에서 지급)
-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의 원칙)에 의거 자부담금을 미리 집행한 후 기성고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원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 설치한 시설물 등 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은 지원 할 수 없음.
- 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리스도입 시설비는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된 사업비를 당해 사업시행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 불가.
 - 만약, 상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지원자금 회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강력한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기성고에 따라 지원된 용자금은 즉시 사업시행자의 대표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시행 대표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및 기계·장비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또는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의 회수는 물론, 그 규모에 따라 1~5년간 정부지원사업자금 지원 중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 시장·군수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수시로 관내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공장 가동상황을 파악하여 경영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경영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 검사일	10년 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부동산에는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대지를 포함
○ 가공 기계류	설치일	5년간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천재지변, 기타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건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처분함이 효율적이라고 당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공 기계류의 신규교체 시에는 예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준용
○ 포장디자인개발용 필름 및 용기	구입일	3년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준용	○ 목 적 - 이면 허위계약방지 - 지원자금 정산자료 활용

나. 보고·기타

(1)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공통)

보고서명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서식
1. 사업추진 및 자금 집행실적(가공공장건설)	○ 매분기익월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별지 6호
2. 운영실태보고	○ 익년 4월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8호
3.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당년 3월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9호
4.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실적	○ 매반기 익월 10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10호
5. 사업정산 실적 (가공공장건설·포장개선·홍보사업)	○ 익년1월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7,11호

(2) 본 지침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유통과 또는 산업과 (제주도는 감귤과)

○ 농산물 가공사업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수산물 가공사업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 (2000. 1. 20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 (2000. 2. 28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 (2000. 3. 31일까지)

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시설의 종류등은 2000년도 지침과 동일

마. 기 타

○ 2000이후에 융자금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신청서식 및 보고서식

1. 신청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시설비 지원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후보자 선정조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대상자 추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 의견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별지 제4-1호]
 - 의견서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4-2호]
 - 의견서 (농협군지부장) [별지 제4-3호]
 - 의견서 (연구기관 또는 식품공학 전공교수) : 신제품 또는 시제품 미생산 업체에 한함 [별지 제4-4호]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확인서 (시장·군수)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4-5호]

□ 포장개선사업비 및 홍보비 지원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신청현황 [별지 제5-1호 서식]

2. 보고서식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보고(분기보)'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7호 서식]
- 생산·판매 실적보고(연보) [별지 제8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연보) [별지 제9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실적 보고(반연보) [별지 제10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m ²	건물	m ²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구분 1	계	정부용자	자부담		
		기준사업비					
		초과사업비					
		총사업비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p>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품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p>							
<p>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예정지의 위치도 1부. 3.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및 5. 삭제('95.6.2)</p>						수수료	
						없음	

27273-03711 민
'93. 8.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 당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지방부존자원 활용 측면
- 3) 고용효과
- 4) 향후전망
- 5) 기 타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기계류 점	사업구분 창설·증설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백만원
시설자금 기지원내역			

※ 시설자금 기지원내역(추가업체)은 지원년도와 지원금액(보조,용자구분)기재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현직책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붙임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기업체명 및 근무부서 기재

다. 조직현황

○ 영농법인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 인 명		등기연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 자 액 : 억원 (비농업인 억원, 비농업인 억원)		
사업실적			

※ 사업실적자료 붙임

○ 농가공동 (공동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 소	소요경지 면적(평)	제품원료생산량		참여형태	날인
			원료(톤)	금액 (백만원)		

※ 참여형태는 출자(금액명기), 원료제공, 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동참여자의 총회의사록 및 자체정관 붙임

○ 일반업체

연 월 일	회사연혁 및 사업실적

3. 제품개발 내역 (계획)

* 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품 목		원 료 명	
<p>○ 제품개발내역 (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조달방법 :- 제조가공방법 :- 제품특징 및 내용 <p>○ 연구용역상황 (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 약 일- 계약완료일- 계약기간 :- 계약내용 :- 비 용 :			

4. 건설계획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 모	대 지	평	기계류 : 종, 점	
	건 물			
입지조건	제품과 원료의 수송, 노동력 확보, 주변지역 피해가능성, 부지 조성, 용수확보, 진입로확보, 공장설립관련법령상 제약요인 등 기재			
용 수	월 사용량 기재			
전 력	월 사용량 기재			
도 로				
통 신				
기 타				
공 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3」	금액	비고
1. 대지(자부담)					
2. 건 물 1」 가. 작업장 나. 일반창고 다. 저온창고 라. 사무실 등 마. 기 타					
3. 구축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자담) 다. 오페수시설 라. 기 타					
4. 가공기계 2」					
5. 공기구비품					
6. 전기공사					
7. 설 계 비					
8. 기 타					
계					

※ 주1」 건물의 경우 비고란에는 건축구조계획 기재 (예 : 철골조판넬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구조 등)

2」 가공기계의 경우 규격 및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수량 및 총금액만 기재 (세부명세는 뒷면 “다”항 “주요가공기계명세”에 구체적으로 기재)

3」 단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

다. 주요 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계명 1」	규격	생산능력2」 (톤/시간)	수량	단가	금액	구입 (계획)처	비고 (TEL)
		W×L×H					

※ 주1」 기계명은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능력은 각가공기계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기재하며 저장탱크일 경우에는 저장능력 및 1회전 처리기간 명기 (필요시 견적서 붙임)

라. 사업부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고

※ 가공공장 시설부지 조건 『2000년도 사업지침 (4) 대상자 자격조건』에 맞아야 함.

5.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 모 (평)	단 가 (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계	응 자	금융기관 차 입	자부담
부지매입(자담)(A)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기 타					
	구 축 물 - 용수시설 - 수배전시설 (자담) - 오·폐수시설 - 기 타					
	가 공 기 계					
	기 타					
	시설자금합계(B)					
총 계 (A + B)						

※ 저온창고는 100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 기준

※ 시설자금 합계란은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 금액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자금조달계획

○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 기 자 금				
외 부 차 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요청액은 제외

○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용 도
계						

○ 담보물 현황

소유자	종 류	면적(m ²)	추 정 가 격		지 번	비 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계						

6.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원료명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조달처 : 구입원료의 생산지

※ 조달방법 : 계약재배, 자가생산, 농민직구입, 도소매상 등 구입으로 기재하되 계약재배의 경우 관련 확인자료 첨부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가 (원/kg)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기존생산능력을 비교란에 별도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기존 생산능력이 있으면 기재

※ 제품명은 생산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단가는 생산제품의 계획판매단가를 기재

※ 생산능력은 1일8시간 기준하여 년300일로환산하여 기재(기계의 생산능력기준)

8. 판매방법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수 량	금 액	판매(예정)처	비 고

※ 제품별, 판매회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 (예정)계약서, 상담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9. 생산·판매실적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구 분	년 도	물 량	금 액	주수출국	비 고
생 산	전전년도	톤	백만원		
	직전년도				
판 매 (수출)	전전년도	톤 (톤)	백만원 (천\$)		
	직전년도				

※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실적 있으면 기재

※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신고내역등), 경영장부상 매출액, 생산일보 등 판매 및 생산실적 확인 자료붙임 (수출업체는 수출실적자료)

10. 기술개발실적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구 분	적 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실적	
가공식품 KS표시허가실적	
디자인 개발실적	
신제품 개발실적	
가공산업관련 수상실적	

※ 적요란에 관련기관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특허출원 사항 등)

11. 기술인력 확보계획

성 명	주 소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 기술관련자격증이 없을 경우 사본 붙임

[별지 제4-1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 건)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 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지역내 경합여부, 기대효과 등

※ 시장·군수 의견서를 업체별로 각각 별도로 구체적으로 작성

2000 . . .

시장 · 군수 직인

[별지 제4-2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년실적, 금년계획)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계약재배 및 조달 가능성 등이 사업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00

○ ○ 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4-3호]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200 년 월 일 기준)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용자			자담		

2. 재산상태

자산종류	수량	예상평가액	부채종류	차입처	금액
주택,대지, 건물,공장		천원			천원
계	-				

3. 조합거래상황 및 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 여, 부 ○ 조합이용도 : 적극, 보통, 거래없음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유, 무 - 조사기준일 연체금액 :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대위변제시설 : 유, 무 ○ 신용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개인정보신용조회표 활용)
--	---

4. 대출가능액 (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담보대출	공장(대지,건물) 잡종지, 전·답		천원		
신용대출					
계			천원		

※ 담보대출의 담보종류는 대지,건물,전·답,과수원,임야,공장,선박으로 구분

5. 종합의견

200 년 월 일
 ○○○농협협동조합장 직인
 농협 군 지부장 직인

[별지 제4-4호]

의 견 서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 견)

- 제품 생산공정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 ※ 신제품 생산업체 또는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는 업체

200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기록)

출자내역 확인서

1. 사업체명 :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2. 대표자 :

3. 법인소재지 :

○ 조합원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준조합원(영농법인), 비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출자자가 기업인 경우 성명란에 기업체명(대표자)기재

200

위 내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 시장·군수 관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가공사업 후보자 선정조서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구분	항목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
자격요건	1. 대표자의 지도력				
	2. 구성원				
공장입지	3. 인·허가 요건				
	4. 기존사업자와의 경합성				
	5. 원료권 형성				
	6. 주변환경				
사업계획	7. 사업계획				
	8. 생산계획				
	9. 원료조달계획				
	10. 자금조달계획				
	11. 판매계획				
신용상태	12. 부채				
	13. 자기자본 확보				
	14. 담보물 보유				
사업전망	15. 국내시장 경쟁력				
	16. 해외시장 경쟁력				
종합평가				우선순위	
구비서류	1.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전문가 의견서 1부.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단위 : 백만원)

순위	사업명	공장 예정지	대표자	사업명	가공 품목	주원 료	사업 형태	구성 원	시설규모			자금조달계획			
									부지 (㎡)	건물 (㎡)	설비 (종)	구분	계	정부 융자	금융 기관 차입
1												기준			
												초과			
												계			
2												기준			
												초과			
												계			
3												기준			
												초과			
												계			
계												기준			
												초과			
												계			

※ 순위란은 운영주체 구분없이 전 추천업체에 대한 순위기재

(포장개선, 홍보)사업 지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지원형태	전통()산지()기타()		지정년도 공장가동일	
	주생산품			전년매출액	백만원
	공장품목	대지: 평, 건물: 평(공장: 평, 창고: 평, 기타: 평)			
사 업 계 획	사업명			총 소요액	백만원
	재원조달 (백만원)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부동산() 기타()				
<p>상기와 같이 (포장개선, 홍보)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시도지사 귀하</p> <p>시장·군수</p>					
<p>첨부서류 : 1. 사업현황 (소정양식) 1부.</p> <p> 2.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 (수출용개발의 경우)</p>					

< 붙임서류 >

사 업 현 황

1. 가공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내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담보제공계획

(단위 : 천원)

보 증 서			부 동 산				
발행처	보증금액	기 간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	추정가액	선순위액

[별지 제5-1호 서식]

(포장개선, 홍보)사업 신청현황

시군별 (우선 순위)	소재지 (업체명)	생산 품목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계	음자	자담	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전통	산지	인증

심사제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 (가공공장건설)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정상추진여부 (부진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공사추진(월일)					
			대지	건물	기계류	계	음자	자담	계	음자	자담	부지확보	승인일자	착공일		준공예정	공정
			평 (m')	평 (m')	점											%	

주)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총공통-9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정산 실적보고 (가공공장건설)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조합 및 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량(규모)						사업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지	건물(A)	기계류(B)	대지	건물(C)	기계류(D)	C/A	D/B	계	음자(E)	자담	계	음자(F)	자담	비율(E/F)	차년도이월액(E-F)	불용액(E-F)	착공일
			평 (m)	평 (m)	점															

주1)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2) 차년도 이월 및 불용액이 있을 경우 발생내역 및 사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별도붙임

[별지 제8호 서식]

'99년도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보고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휴대폰:() -						
	생산품목											
	업체구분	전통, 산지, 특산	경영형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가공동, 개인, 주식회사								
	*변경사항	당초: ⇒ 변경:										
시설규모	부지	건물	기계	오페수	시설투자비	계	보조	용자	자담			
	평	평	점	평	(백만원)				(실투자비)			
가동실적	연간생산능력(톤)	가동일수	생산량(톤)	총매출액(백만원)	국내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수출국					
원료조달	자가생산(구성원)	계약재배	산지생산자	산지조합	산지수집상	도매시장	기타					
	%	%	%	%	%	%	% % % % % %					
판매방법	백화점	대형슈퍼(할인점등)	도소매상	농수축협	우편주문 전자상거래	대량소비처(외식업체등)	현지직판	기타				
	%	%	%	%	%	%	%	% % % %				
비용	계	원료구입비	인건비	대출이자	전력수도료	판매비	홍보비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현황	상용직	인원: 명,			연간인건비: 백만원							
	일용직	연인원: 명,			연간인건비: 백만원							
태	품질관리상황	①명인지정, ②전통식품품질인증, ③위탁검사, ④자체검사, ⑤미 실시										
	회계처리방법	①복식부기 자체처리, ②세무사위탁, ③간이장부기록, ④기타										
	사업전망	①크게신장, ②약간신장, ③전년과 비슷, ④약간저조, ⑤크게악화										
	주요 애로사항	①자금부족, ②판매부진, ③원재료조달, ④설비노후, ⑤금융비용상승, ⑥임금상승, ⑦기타 ()										
	건의사항											
	조사자 의견											

- 작성요령 : ① 모든 자료는 '99. 1. 1. ~ '99. 12. 31.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② *변경사항은 대표자, 업체명, 생산품목, 주소, 전화번호 등 업체현황 변경사항 기재
 ③ 첨부 : 업체 관리카드 사본, 결산재무제표 또는 소득신고서

자체심사 가26-58

[별지 제9호 서식]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 유인			비고(전통, 산지,인증 업체별구분)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심사제외

[별지 제10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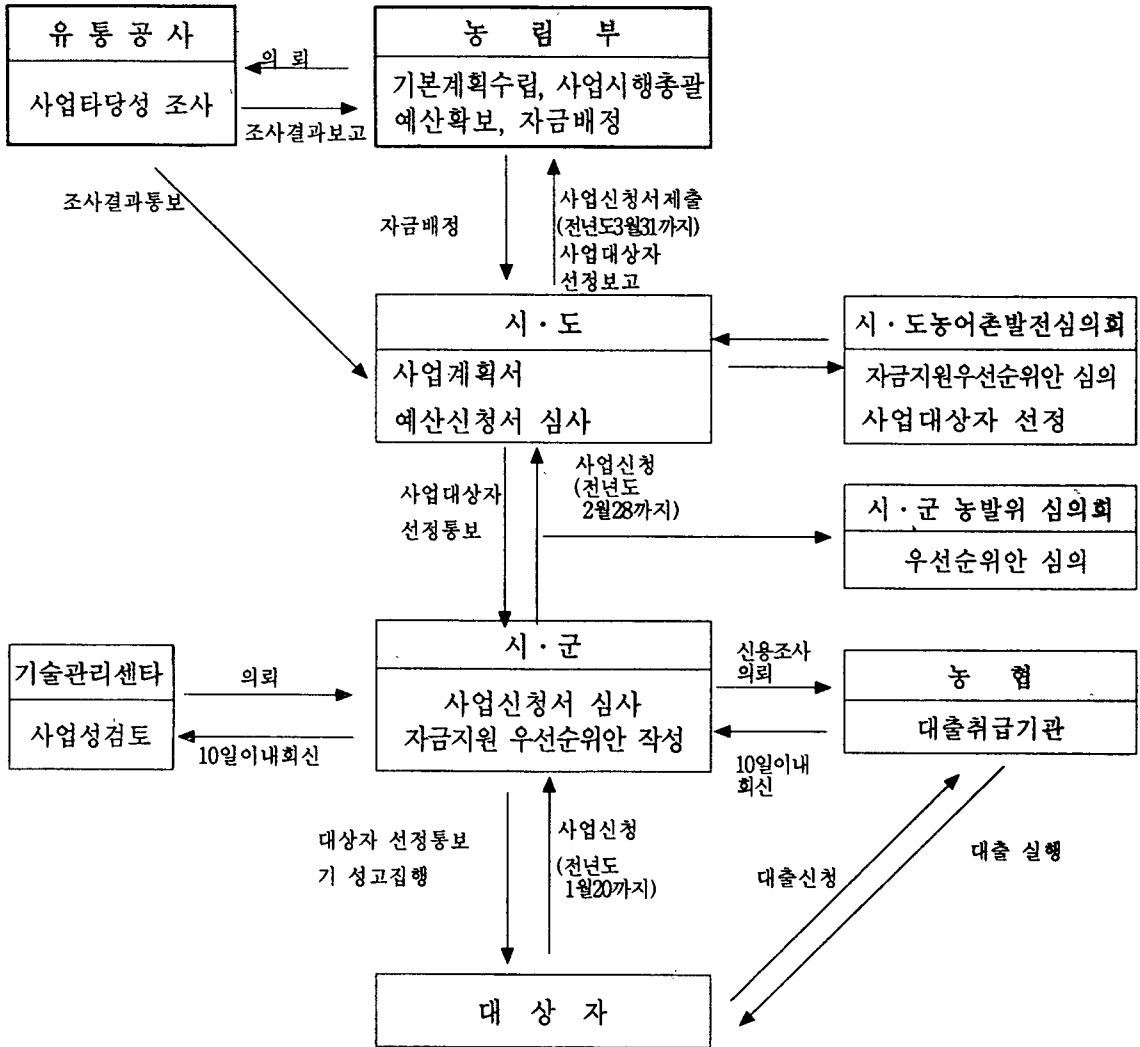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 업 계 획										추진실적										
		사업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 유인		사업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유인						
계	용자 자담	용기 형태	수 량	소요 금액	포장 방법	건 수	소요 금액	지 질	수 량	소요 금액	계	용자 자담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계약 일	완료 예정일	공 정	
																%						%

< 참고1 >

농산물가공공장 사업시행 체계



II. 농산물가공공장 경영·기술지도

1. 목 적

- 농산물 산지가공업체의 관리수준을 정밀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경영능력 배양 및 운영내실화 도모
- 창업 및 공장경영에 필요한 기술·경영·관리·행정에 대한 자문으로 시행착오에 따른 경영손실을 사전에 방지
- 수급조절, 농외소득원 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가공업체를 조기 경영정상화시켜 농업·농촌발전의 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기관, 대학, 민간 컨설팅회사가 참여하는 기술·경영컨설팅 전문가 풀(pool) 구성 운영
- 각 분야 전문가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 후 경영혁신 방안을 구체화한 경영혁신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가공공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종합컨설팅 체제 확립
 - 업체의 경영부진 요인들을 동시에 해결하여 경영혁신 효과 극대화
- 업체별 전담 컨설팅팀을 지정·운영하는 책임 컨설팅 체제 구축
- 경영혁신사업계획서 결과 자동화, 현대화시설 등 추가시설 권고시 정부자금 우선지원
-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가공업체지도 및 정책방향 모색
- 유통 및 가공전문기관인 농유공 및 한식연의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거양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3 및 제15조, 제26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1조,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1~2004
사 업 량		개소	-	260	260	300	900
사 업 비	계	- 백만원	-	1,560	1,560	1,800	5,400
	보 조	-	-	1,092	1,092	1,260	3,780
	용 자	-	-	-	-	-	-
	자부담	-	-	468	468	540	1,62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내 용

- 경영활성화대책이 필요한 가공업체에 대하여 경영·기술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배 경

- 지금까지 공장건설 자금 지원 등 주로 물량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가공업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경영노하우 제공필요
- 농산물가공공장 다수업체가 경영부실 또는 경영이 미흡함에 따라 경영·기술 컨설팅사업 지원 필요

(3) 사업시행 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사업기간 : 2000.1 ~ 12월

(5) 지원대상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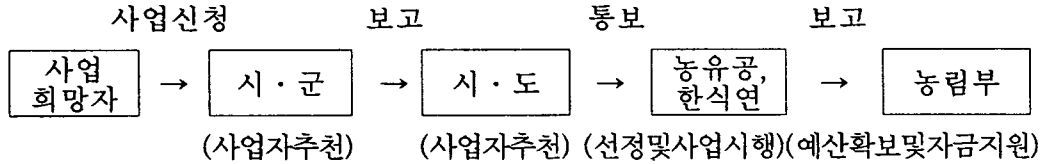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
- 사업비 단가 : 업체당 6백만원 (평균단가)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3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자부담
		사업비합계	예산액 (농어촌구조개선)			
			계	보조	융자	
농산물가공업체 경영·기술지도	개소 260	백만원 1,560	백만원 1,092	1,092	-	468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신청서 : 별첨) → 관할 시장·군수



나. 사업희망자 추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한식연원장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식연원장에게 추천

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선정대상 : 농산물 가공공장 중 국산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선정순위 : 컨설팅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

- ① 경영상태가 부진하여 경영개선이 시급한 경영체
- ② 컨설팅지원을 통해 경영혁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체
- ③ 사업규모가 큰 경영체
- ④ 기타 정책적으로 컨설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영체

선정절차

- 한식연원장은 시·도지사의 사업신청 내용을 취합,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라. 사업비 신청 및 예산확보 : 농림부장관

- 농유공사장은 한식연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신청
- 농림부장관은 농유공의 사업비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예산을 확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4-9417~8)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0342-780~9266)

다. 컨설팅팀 구성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이 연구기관, 대학, 민간 컨설팅회사, 기타 전문
관련기관의 컨설팅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종합컨설팅팀 구성
- 컨설팅팀은 분야별 신청업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라. 컨설턴트의 자격요건(경영, 기술분야 공통)

- 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 이상
- 학사취득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석사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식연원장이 인정하는자

마. 담당부서별 기능

농 립 부	기본계획수립, 예산지원, 컨설팅사업 총괄
농 유 공	사업비 신청, 보조금 지급검정 및 집행정산, 정산결과 보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컨설팅대상업체 선정, 컨설팅팀의 구성 및 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수립, 컨설팅사업제안서 심의, 자금집행, 경영혁신사업계획서 심의, 중간점검 및 사후 관리지도, 종합평가 및 정산보고
컨 설 팀	컨설팅사업제안서 작성, 기술·경영평가 진단, 경영혁신 사업계획 수립, 정기지도·자문 실시, 컨설팅수행결과 보고
가 공 업 체	경영혁신사업계획서 이행, 지도내용이행

바. 세부추진 방법

(1)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한식연원장은 우리부 농림사업실시규정(농산물가공공장 경영·지도 : 농림부훈령 제965호)에 따라 컨설팅 세부추진계획수립 추진

(2) 컨설턴트 선정

- 한식연원장이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적합한자중에서 적격자(업체) 선정

(3) 컨설팅 계약 체결

- 한식연원장이 가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
 - 컨설팅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업체와 계약 체결
- 한식연원장은 지원대상업체의 특성에 따라 컨설팅팀을 구성
 - 컨설팅팀은 컨설팅내용 및 추진계획이 명시된 컨설팅 사업제안서를 작성 한식연원장에게 제출

(4) 경영혁신사업계획서 작성

- 컨설팅팀은 지원대상업체의 기술, 경영, 마케팅 현황등을 정밀 진단한후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식연원장에게 제출
- 한식연원장은 경영혁신사업계획서를 심사, 수정, 보완 후 최종 경영혁신 사업계획서 확정

(5) 컨설팅 실시 및 결과 보고

- 담당 컨설팅팀은 계획된 사업이 완결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자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정보 등을 제공
- 한식연원장은 경영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 완료후 컨설팅팀은 컨설팅 수행실적 및 결과를 한식연원장에게 보고

(6) 성과분석 및 종합보고

- 한식연원장은 컨설팅팀이 제출한 결과보고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그 효과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
- 한식연원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농유평사장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7)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 신청 및 지급
 - 신청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 농림부장관
 - 결정 : 신청의 역순
-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에 의거 집행
- 동 사업비로 컴퓨터 등 기계 장비 구입 또는 컨설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불가

< 행정사항 >

- 경영·기술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농유공, 한식연) : '99.12.31
- 사업신청 및 컨설팅 실시상황 보고 (농유공, 한식연) : '99년 매분기 익월 10일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 (농유공, 한식연) : 2001. 3. 31

< 별첨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	FAX () -
종업원수	총__명 [생산직: 명, 관리직: 명, 영업직: 명, 기타: 명]			
생산제품명				
사업구분 (하당하는 것에O표)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일반가공업(), 특산단지() 1군1특품사업(), 도비지원사업(), 기타()			
시설투자비 (천원)	건물	기계장비	기타	(합계)
컨설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일 : 200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업체명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 귀하</p>				

< 참고 1 >

기술 및 경영컨설팅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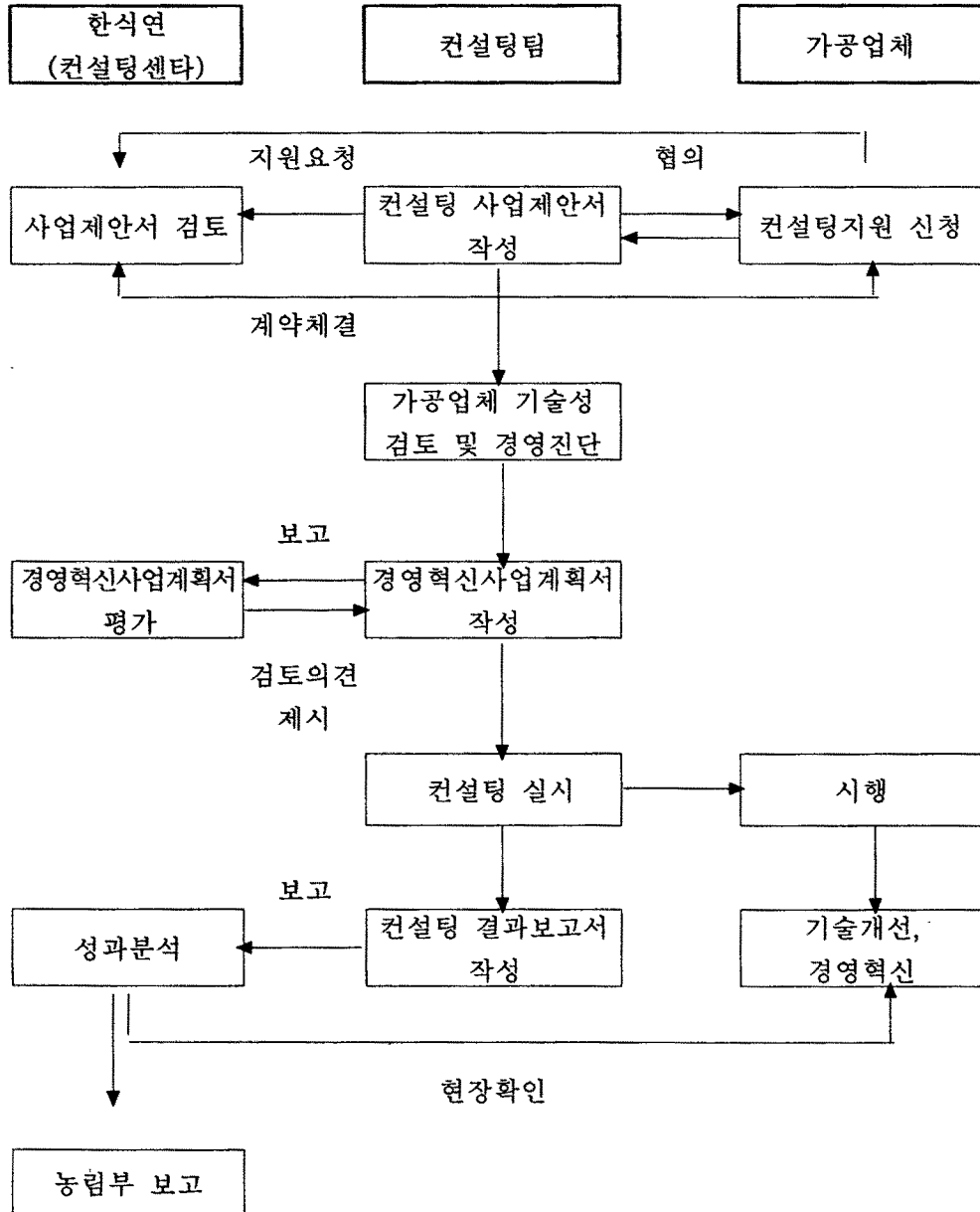
< 기술컨설팅 >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가 공 기 술	전처리기술, 건조기술, 추출·농축기술, 여과기술, 분쇄기술, 살균기술, 제품품질 평가기술, 저장기술, 유통기한 연장기술, 식품첨가물 활용기술 등
공정설계 검토	공정자동화 방안, 생산설비의 효율적 배치, 기계장비의 효율성 평가, 공정흐름도의 분석, 생산능력 제약요소 진단 등
저장/유통기술	원부재료의 보관, 제품의 보관 및 유통방법, 저장시설 및 운영방법의 개선 등
제품의 다각화	신상품 제조기술, 가동을 제고기술, 부산물활용기술 등
위생관리기술	공장위생, 개인위생 등
포장 / 디자인	포장재질, 포장용기, 포장방법, 디자인, 포장의 표시사항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생 산 관 리	생산일정계획, 적정재고관리, 원부재료 조달방법, 품질관리, 제품 다각화, 품목 조정, 비용절감 방안, 생산성 제고 방안 등
재 무 관 리	재무제표 분석, 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합리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방법, 보유자본의 포트폴리오, 전산기장, 재무제표 작성 등
판 매 관 리	시장분석, 판매전략 수립, 판매방법 개선, 판매촉진 전략, 신품로 개척의 접근방법 등
인 력 관 리	근로자의 숙련도, 고용형태의 적절성, 적정인력배치, 자동화 방안, 작업능률 제고 방안, 경영자 및 종업원의 의식교육 등
정 보 관 리	정보유형별 정보원 및 접근방법, 수집정보의 전산관리, 정보통신망 이용방법 등
사업타당성분석	생산계획, 판매계획, 기계장비계획, 제품별 가공기술, 추정시설투자비 산정,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컨설팅사업 세부추진체계



Ⅲ. 특산단지육성

1. 목 적

-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촌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성과 지명도가 높고 지역의 열이 담긴 농촌 특산품을 생산
-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육성하여 농촌일자리 제공 및 농외소득 증대
- 특산단지간 공조활동을 도모하여 생산제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향상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특산단지육성》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 2004년	
사 업 량	438	31	19	20	20	60	
사 업 비	계	110,864	11,270	7,997	5,700	6,286	18,856
	국 고	12,420	-	-	-	-	-
	지방비	12,420	-	-	-	-	-
	용 자	59,800	7,889	5,598	3,990	4,400	13,200
비	자부담	26,224	3,381	2,399	1,710	1,886	5,656

《특산품 전시판매장》

- '99년부터 지역특화사업 메뉴사업에 포함 포괄지원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을 생산·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지원대상자

- 특산단지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비농업인
(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3)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협(군지회 또는 단협) 및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지회의 사업성검토를 기초로 사업성검토 종합평점표(별표1)를 작성하고 사업지구를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후 지원한도 결정

지원등급	평점결과	지원한도	비고
1등급	75점 이상	3억원	단, 지원한도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융자금 대출잔액이 지원한도 이하일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2등급	75점 미만~ 50점 이상	2.5억원	
3등급	40점 이상~ 50점 미만	2억원	

※ 4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지당 등급별 지원 한도내에서 기존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가능한 신규단지 지원은 지양
- 신규단지 : 시설비, 운영비
- 기존단지 : 시설비, 운영비(다만, 운영비는 지원기준초과시 시·도지사 승인후 지원가능)

- 단지당 지원기준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기준액	
		국고용자(70%) 이내	자부담(30%) 이상
시 설 비	140백만원	98	42
운 영 비	60	42	18

- 지원조건

구 분	용자조건	비 고
시설비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시설자동화 및 사업장 신축 등
운영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5% (단, 비농업인 : 8%)	원료구입, 금형제작,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단 신규시설 투자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4) 특산단지 육성사업의 참여형태 및 대상품목

-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 지원대상품목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단, 일반공산품 및 식료품은 신규지정 대상품목에서 제외
- ※ 일반공산품의 개념은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말함(농촌의 부존자원을 직접 활용하지 않는 제품)

업 종 별	품 목
민속공예품	죽제품, 목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패각가공, 완초가공 등
농산자재	싸리제품, 지물제품, 인삼발 등
섬유직물	모시, 삼베, 마포, 자수 등
석재분야	돌벼루, 솥들, 돌가공제품 등

나.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계	예 산 액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70	5,700	3,990	-	3,990	1,710
시설비	20	3,000	2,100	-	2,100	900
운영비	50	2,700	1,890	-	1,890	81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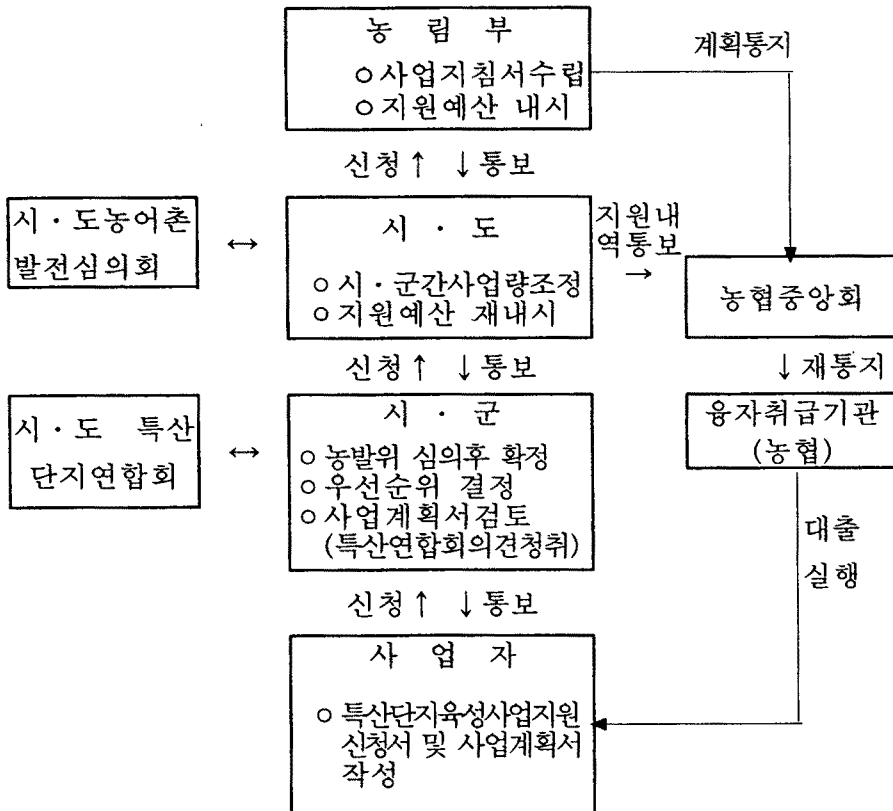
나. 자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02)504-9417, 9418)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서 수립 시달
- 사업자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자치구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제출
- 시·군 :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 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농정심의회의 심의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확정

○ 사업시행 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신규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선정하되, 농촌부존자원 활용, 농업인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 고부가가치제품·전통민속공예제품 생산이 가능할 경우에 선정하고,
-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가치가 있는 지역 특산품생산지구를 선정 지원
 - 조성실적(조성단지수) 위주의 무분별한 신규단지선정 지양으로 사업부실화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1군1명품육성사업」과 「1농협1특산품개발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품목 우선선정
-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존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되, 품목 또는 업종별로 통·폐합하는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농외소득증대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내실화에 집중 지원
- 농촌부존자원 활용, 전통민속공예품·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성검토는 신규 및 기존단지 구별없이 특산단지 도연합회 또는 군지회의 의견과 농협(군지회 또는 단협)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가 한다.

- 시·도지사가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선정절차

- 신규 및 기존단지에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0까지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기관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별표1)와 농정심의회 심의후 지원계획 확정(별지 제2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공예협동조합, 기타 품목별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 사업자는 시·군의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도 통보
 -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시는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예산변경 조치
 - 시·도간은 농림부장관이 변경조치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시·도별로 예산내시(추후 별도)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지원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용자금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용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기존단지 취소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3) 융자요령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자금 융자시 최대한 후취담보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시행대표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 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대출취급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와 운영비는 제외할 수 있다.

(4)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한다.

바.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과 농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와 농의소득증대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 등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

<행정사항>

《특산단지육성》

가. 사업자 준수사항

- 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기계)은 사후관리기간내 처분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처분제한기준 참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산단지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단지명), 선정년도, 선정권자, 단지규모 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특산단지 사업자는 연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자산, 자본, 부채, 손익 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농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대학,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기관, 특산단지연합회 등을 통하여 디자인 및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사업에 필요한 상품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현장어로 기술개발과제로 채택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유사제품과 차별화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다. 사후관리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2) 점검시기 및 내용

- 시장·군수는 대출취급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매반기 1회이상)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

(3) 점검결과 반영

- 사업성 검토결과 부실화 단지는 과감히 정리(퇴출)하고 사업전망이 있는 단지는 추가지원 요구시 기존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융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 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하여 부당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라 처리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 필요사항
	부 터	까 지		
건물(공장,공동 작업장,창고, 사무실 등)	준 공 검사일	10 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렵 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기자재의 화재, 손·망실,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 등을 기록
기 계	설치일	5 년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도지사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해 12월말 현재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단지정리(퇴출)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1.31까지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신규 및 기존단지 지원계획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존단지 지원계획(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서식)

《특산품 전시판매장》

가. 사후관리

- 기 지원한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을 다음해 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6. 2001년도 사업신청안내

《특산단지육성》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2000.1.20까지)
- 시장·군수 → 시·도(2000.2.28까지)

다. 신청자격

- 농업인, 비농업인(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단, 시·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마. 구비서류

-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양 식
1. 특산단지 사업 추진 실적 - 연도말 운영단지 현황 - 연도말 단지별 정리(퇴출)현황 - 연도별 선정 및 퇴출현황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1. 15 1. 31	별지 제5호 서식
2.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시·도→농림부	1. 31	별지 제7호 서식
3. 특산단지별 지원계획 보고 (총괄, 신규, 기존) -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 명세표	시·도→농림부	2월말	별지 제4호 서식
4. 특산단지 정리(퇴출) 결과보고	시·도→농림부	취소즉시	1.31보고시 누계하여 제출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서 농림부에 다음해 1.31까지 보고

[별표 1]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신규단지용 >

신규단지용		배점 (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특산단지 적합성	고용효과	31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 활용도		11	8.8	6.6	4.4	2.2	
시 장 성	판매방법	24	8	6.4	4.8	3.2	1.6	
	홍보전략		5	4	3	2	1	
	제품차별화 정도		4	3.2	2.4	1.6	0.8	
	동업계전망		4	3.2	2.4	1.6	0.8	
	경쟁상태		3	2.4	1.8	1.2	0.6	
사업추진 기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12	7	5.6	4.2	2.8	1.4	
	판매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재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10	6	4.8	3.6	2.4	1.2	
	채무상환 능력		4	3.2	2.4	1.6	0.8	
기 술 성	기술수준	10	5	4	3	2	1	
	상품성제고 노력도		5	4	3	2	1	
대 표 자 령	은행거래 신용도	8	8	6.4	4.8	3.2	1.6	
수 익 성	매출액경상 이익율	5	3	2.4	1.8	1.2	0.6	
	투자이익율		2	1.6	1.2	0.8	0.4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 신규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특산단지 적합성	고용효과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8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4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80% 이상 ~ 80% 미만 " 60% 이상 ~ 60% 미만 " 40% 이상 ~ 40% 미만 " 20% 이상 ~ 20% 미만 " 20% 미만
시장성	판매방법	A B C D E	이미 확보된 고정거래처에 의한 판매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지회사무소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통한 직판 대리점 등을 통한 위탁판매 주문판매(고정거래지에 대한 주문판매분 제외) 기타 일반판매
	홍보전략	A B C D E	대중언론매체(신문, 방송등)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대규모 수요처, 특산품전시판매전 등 전국적인 홍보 도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군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홍보전략 없음
	제품차별화 정도	A B C D E	지역고유 특산물로 타지역 생산불가 독창적 품질로 3년내 유사 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2년내 유사 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유사 경쟁제품 출현이 비교적 어려움 제품 차별성 없음
	동업계전망	A B C D E	매우 유망 비교적 유망 현상유지 장기적으로 사양화 예상 단기적으로 사양화 확신
	경쟁상태	A B C D E	독점 과점 보통 비교적 치열 매우 치열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사업 추진 기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A B C D E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전혀 문제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이 용이함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애로가 많음
	판매계획의 적정성	A B C D E	매우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확실함 비교적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나 달성가능성은 예측 불가 다소 무리한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매우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함
재무 상태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A B C D E	5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채무상환능력 $\frac{\text{차입금}}{\text{매출액}}$	A B C D E	20% 미만 ~ 40% 미만 2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기술성	기술수준	A B C D E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충분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가능 최신설비는 없으나 인력을 보유하여 기술개발 가능 인력은 없으나 최신설비 보유로 기술개발 가능 인력, 최신설비 등이 없음
	상품성 제고노력도	A B C D E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④ 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타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포장재 사용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이상 해당 " 3개이상 해당 " 2개이상 해당 " 1개이상 해당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대표자 능력	은행거래 신용도	A	최근 3년간 불량거래자(연체포함) 규제사실 없음
		B	최근 2년간 "
		C	최근 1년간 "
		D	최근 6개월간 "
		E	그 외의 자
수익성	매출액경상 이익율	A	4.7% 이상
		B	4.6% ~ 2.7%
		C	2.6% ~ 0.9%
		D	0.8% ~ △1.7%
		E	△1.7% 미만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frac{\quad}{\text{총자본}}$)	A	13.2% 이상
		B	13.1% ~ 7.6%
		C	7.5% ~ 2.8%
		D	2.7% ~ 0.6%
		E	0.6% 미만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기존단지용 >

신규단지용		배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특산단지 목적 합성	고용효과	30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 활용도		10	8	6	4	2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25	10	8	6	4	2	
	매출액 증가율		10	8	6	4	2	
	가동율		5	4	3	2	1	
사업추진 기 반	판매방법	15	8	6.4	4.8	3.2	1.6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4	3.2	2.4	1.6	0.8	
	제품차별화 정도		3	2.4	1.8	1.2	0.6	
재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10	6	4.8	3.6	2.4	1.2	
	채무상환 능력		4	3.2	2.4	1.6	0.8	
사업 전망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전망	10	4	3.2	2.4	1.6	0.8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4	3.2	2.4	1.6	0.8	
	동업계 전망		2	1.6	1.2	0.8	0.4	
수익성	매출액 경상이익율	5	3	2.4	1.8	1.2	0.6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기술성	상품성제고 노력	5	4	3.2	2.4	1.6	0.8	
	신제품개발		1	0.8	0.6	0.4	0.2	
합 -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기존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특산단지 지목적 적합성	고용효과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8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A B C D E	최근3년이상 흑자경영이고 순이익규모 증가추세 최근3년이상 계속흑자경영와 영업기간2년으로 흑자 최근 2년간 계속 흑자경영와 영업기간1년으로 흑자 전년도 흑자경영 그외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A B C D E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 " 19 ~ 15% " 14 ~ 10%, 영업기간 3년미만 " 9 ~ 5% 5%미만
	가동율 생산실적 (————) 생산능력	A B C D E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수익성	매출액경상 이익율	A	4.7% 이상
		B	4.6% ~ 2.7%
		C	2.6% ~ 0.9%
		D	0.8% ~ △1.7%
		E	△1.7% 미만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 총자본	A	13.2% 이상	
	B	13.1% ~ 7.6%	
	C	7.5% ~ 2.8%	
	D	2.7% ~ 0.6%	
	E	0.6% 미만	
기술성	상품성 제고노력도	A B C D E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④ 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포장재 사용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이상 해당 " 3개이상 해당 " 2개이상 해당 " 1개이상 해당 " 해당사항 없음
	신제품개발	A B C D E	신제품 월간 판매액이 전년도 월간 판매액의 50%이상 신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판매실적 있음 신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공인기관 시험 완료 신제품 개발중 신제품 개발없음

○ 참여가구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 가 공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번호	가구주명	주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참여형태	

-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시기별 소요금액				
	합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1/4	2/4	3/4	4/4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건 물							
	· ()							
	· ()							
	· ()							
	· ()							
	기계·기구							
·								
·								
·								
생산부대시설								
·								
·								
·								
운 영 자 금	소 계							
	원료구입비 기 타 (금형·디자인 개발 등)							

- *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하고, ()안에 신축·증축·개축·매입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을 토지와 일괄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적음.

3. 제조공정

*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4.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 (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등으로 구분
-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자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여가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경우에 한함)
-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 : 3월~6월)로 구분
-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1999)			당년(2000)			2년차(2001)			3년차(2002)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년말 재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전년말 재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전년말 재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전년말 재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 이월												

- *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제 품 명	수 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 매 실 적
				○ 판매기간 : 년도 ~ 년도(○○년간) ○ 제 품 명 : ○ 총판매금액 : ○ 판 매 처 :
향후판매전망 :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예) 판매기간 : '96~'98(최소한 3년간 이상)
 제 품 명 : 도자기
 판 매 처(상세히) : 서울 미도파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 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천원)

		전년(1999)	당년(2000)	2년차(2001)	3년차(2002)	
매출액 (A)						
제조원가및비용계	원료구입비 노무비 (취업) 노무비 (임가공) 경비 (제조원가계) 판매관리비 지급이자(원금제외) 세공과금 기타비용					
	원가 및 비용 계 (B)					
손이익(A-B)						
소득분석	참여형태별 가구수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가구당소득액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 *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형태의 참여가구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여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 개황"의 "참여가구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이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이익을 당해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별지 제2호 서식]

종합심사서

1. 단 지 명 :

2. 사업장소재지 주소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5. 참여형태 :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의 “참여형태” 작성방법에 준할것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년 월 일 .

○○시장·군수

(직인)

종합심사내용(심사의견)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 기 준 일	검 년 월 일	재원별	용 도	조 년 월 일	달 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점 년 월 일	검 년 월 일	점 직	검 성 명	자 날 인

- * (주) 1. 재원은 농특용자를 적음.
- 2.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중 하나를 적음.
-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사항

재원	재산명	조 년 월 일	달 일	조달금액	사용명세	처 분 년 월 일	처분사유	처분사항	점 직	검 성 명	자 날 인

6. 생산 및 판매상황

(단위 : 천원)

점 기 준 일	검 년 월 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 년 월 일	검 성 명	자 날 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 소득효과

점 기 준 일	매 출 액	제 원 가 및 비 용	손 익	소 득										점 년 월 일	점 직	검 성 명	자 날 인	
				총 소 득 액	가 구 별 소 득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가공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자재 가26-47

○○년도 농촌특산단지별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개,천점,톤,백만원)

업종별	우선순위 번호	품목	사업명	참여 형태	소재지	대표자		참여가구			제품생산	
						성명	전화	계	농가	기타	생산계획	
											수량	생산액
	합계											

및 판매계획			추정생산비			추정소득		사업비 조달계획		
판매계획			계	원료 구입비	기타 비용	총소득	가구당 소득	계	농특융자	차부담
계	내수 (금액)	수출 (금액)								

※ 작성요령

1. 업종별 : 작성순위(①민속공예품, ②농산자재, ③섬유직물, ④석재)대로 작성 기재
2. 우선순위번호 : 업종별 구분없이 지원대상자 순위번호 기재
3. 품 목 : 목공예, 석공예등 주된 생산품목을 기재
4. 사업명 : 세부적인 사업명(시설비 : ○○공장, ○○기계, ○○개발비(금형,디자인 등), ○○포장비등, 원료비 : ○○원료구입비등)으로 기재
5.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중 하나를 기입하되 혼합형 형태는 추가되는 것을 기입하고 말미에 (혼)을 기입함.
6. 소 재 지 : 사업장소의 주소
7. 참여가구 : 농가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가
8.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연간 총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을 기입하되, 판매계획은 내수·수출 구분 작성
9. 추정생산비중 기타비용 : 제잡비, 세금 등을 포함하되, 참여농가의 임금은 제외
10. 추정소득(정수로산출)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가구당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11. 추정소득 총 소득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소수점이하 생략)
가구당 추정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총 26-1

농촌특산단지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도, ○○시·군)

○연도말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선정년도	대표자	참여형태	참여수		총종사자수	생산실적	판매실적		비율	소효특과가동율	총소득	사업비					
						계	농가			내수	수출				농특자			자부담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합계																				

* (주) 작성요령 : 단지별 지원계획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작성방법에 준할 것
사업비는 사업추진 당해년도 분만 기재

○ 연도말 운영단지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단지명	대표자	참여형태	참여호수	선정년도	연도별 지원자금													
								'97까지			'98			'99			합계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연도말 단지별 정리(퇴출)현황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	선정년도	정리(퇴출)년월일	퇴출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심사제외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보고

1. 판매장 시설현황

매장별 (매장명칭)	판매장 소재지			시설규모		사업비				공사 착공일	매장 개장일
	시·도	시·군	읍·면	부지	건물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평		백만원				년월일	

2. 판매실적

○ ○ ○ 판매장

업종별	판매량	판매액	사업비용(관리비)	순손익
계		백만원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기타				

* 전시판매장별로 실적을 기입

3. 홍보실적

시·도 (매장)별	홍보매체별 홍보실적					제품판매업체 현황			
	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계	특산단지	지역 특산물	기타
	회					개소			

심사제외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성명	사업비지원대정산									비고 (준공일자, 검정일자, 수량 등 요점을 기입)	
				합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농특용자	자부담		
합계														

* (주) 상단/하단 구분(상단 : 정산액, 하단 : 예산지원액)하여 기입

IV. 명품개발

1. 목 적

-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수출가능한 식품을 개발·홍보하여 식품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요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2년 월드컵개최를 계기로 외국인의 기호에 맞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명품개발 추진
- 전문식품연구기관과 식품제조업체의 공동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수출상품화 도모
- 단기간내에 수출상품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발과제 선정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 (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0조 (가공기술의 개발·보급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투 자 계 획			
				'99년	2000년	2001	2002~2004
연구개발비 (보조)	백만원 -	-	-	2,000	1,500	2,000	-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배 경

- 향후 우리농업의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수요 창출이 절대필요

-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수출가능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 수출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확대 도모
 -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세계각국이 모이는 자리로 우리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수출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나. 지원대상 : 산학·산연 공동연구기관

다. 지원조건

- 대기업 참여 개발제품 : 해당제품 연구·개발비의 50% 지원
- 중소기업 참여 개발제품 : 해당제품 연구·개발비의 80% 지원
-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 6억원 이내 (3년이내)

라. 개발과제 선정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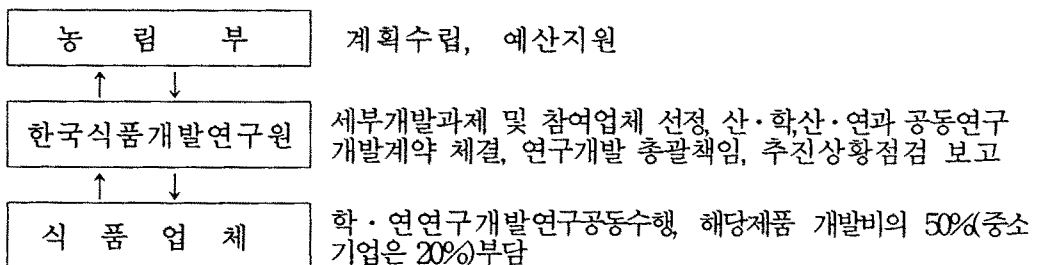
- 선정기준
 - 단기간내 (2002년 월드컵 개최이전)에 제품개발 및 상품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
 - 제품개발후 수출 및 명품화가 가능하도록 자금력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의 개발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방법
 - 명품개발에 참여 희망업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신청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선정기준에 의거 과제선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식품산업과 (02-504-9417~8)

다. 사업시행체계



※ 이 사업은 '99년도(연구개발 1차년도)에 연구개발 품목 및 업체를 선정하여 3개년('99~2001)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여 백

46	농업 기술 개발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과장 안병규, 농업 사무관 이상혁)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목시켜 농림축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들이 영농·영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타 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합시켜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친환경농업, 가공·유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과제별로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계 획				
	'94~'97	'98	'99	2000년	2001~2004
계	1,665	385	330	315	1,455
첨단기술개발	820	207	225	205	1,081
현장애로기술개발	845	158	85	90	294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	-	20	20	20	8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배 경

-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림업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각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역량집중과 국가간 기술이전 규제강화로 우리 농림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하여 '94~2004 기간 중 농특세를 재원으로 4,150 억원을 투자

나. 사업의 종류

○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 7대 핵심기술분야 기술개발(첨단농업적합형 품종개발 및 종자처리 기술, 기계화·자동화시스템 개발, 첨단가공·저장·유통기술, 생명공학기술, 기능성소재 및 고기능성제품 개발, 환경친화형 기술,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 및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을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품목별 일관기술개발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현장중심의 기술개발로 영농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 농업인개발과제 : 지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용 기계·자재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다. 지원대상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민(단체)등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업인개발과제
 - 농업인(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 구성)

라.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전액 국고보조
- 기업참여시 사업비 지원기준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마.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별	연구기간	연구비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3년 이내 (필요시 1~2년 추가지원)	5억 이내
- 기획연구과제	5년 이내 (필요시 1~3년 추가지원)	10억 이내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3년 이내	2억 이내
- 농업인개발과제	2년 이내	3천만원 이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3억 이내

바. 과제신청방법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농업인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사·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사. 2000년도 사업비 : 315억원

- 첨단기술개발사업 : 205억원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90억원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20억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환경농업과(02-503-7284~5)

- 농림기술관리센터(관리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5-6번지 옥토빌딩 3층
 - 전화 : 02-575-6900 (FAX : 02-575-6905)

다. 과제공모

- 첨단기술개발과제
 - 기술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 개발보급시 농림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애로기술 (과제지정방식에 의하여 공모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연구팀 선정)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특히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기술개발 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 영농·영림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기술로서 농업인들이 개발을 원하는 기술
 -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시 농림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 농업인개발과제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실용기술
 - 농업용 기계·자재 개발
 -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선정·지원되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기관이어야 하며, 총괄책임연구자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어야 함.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실시 :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 기술개발성과 보급 및 활용 :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림기술관리센터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나. 기타사항

-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99.3.12. 농림부훈령 제980호)에 의거 추진
- ※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rp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 :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업인개발과제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 국·공립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 농업인개발과제

- 연구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함
- 협동연구팀에 참여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과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됨

다. 신청절차

- 과제공모시 『농업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pc.re.kr>)에 제출·접수
다만, 농업인개발과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라. 과제공모기간

○ 공고 시기

- 첨단기술·현장애로기술·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2000년 11월 중
- 기획연구과제 : 2000년 9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0년 10월 중

※ 과제공고 : 관보,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다만 농업인개발과제는 농림축산업 관련전문지에도 게재

○ 접수 기간

- 첨단기술·현장애로기술·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2001년 2월 중
- 기획연구과제 : 2000년 11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0년 11월 중

마. 구비서류

- 『농업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 1부(농업인개발과제는 4부)
- 기업참여시 『농업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농업인(단체)의 참여시 『농업기술개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 산업체, 농업인(단체), 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배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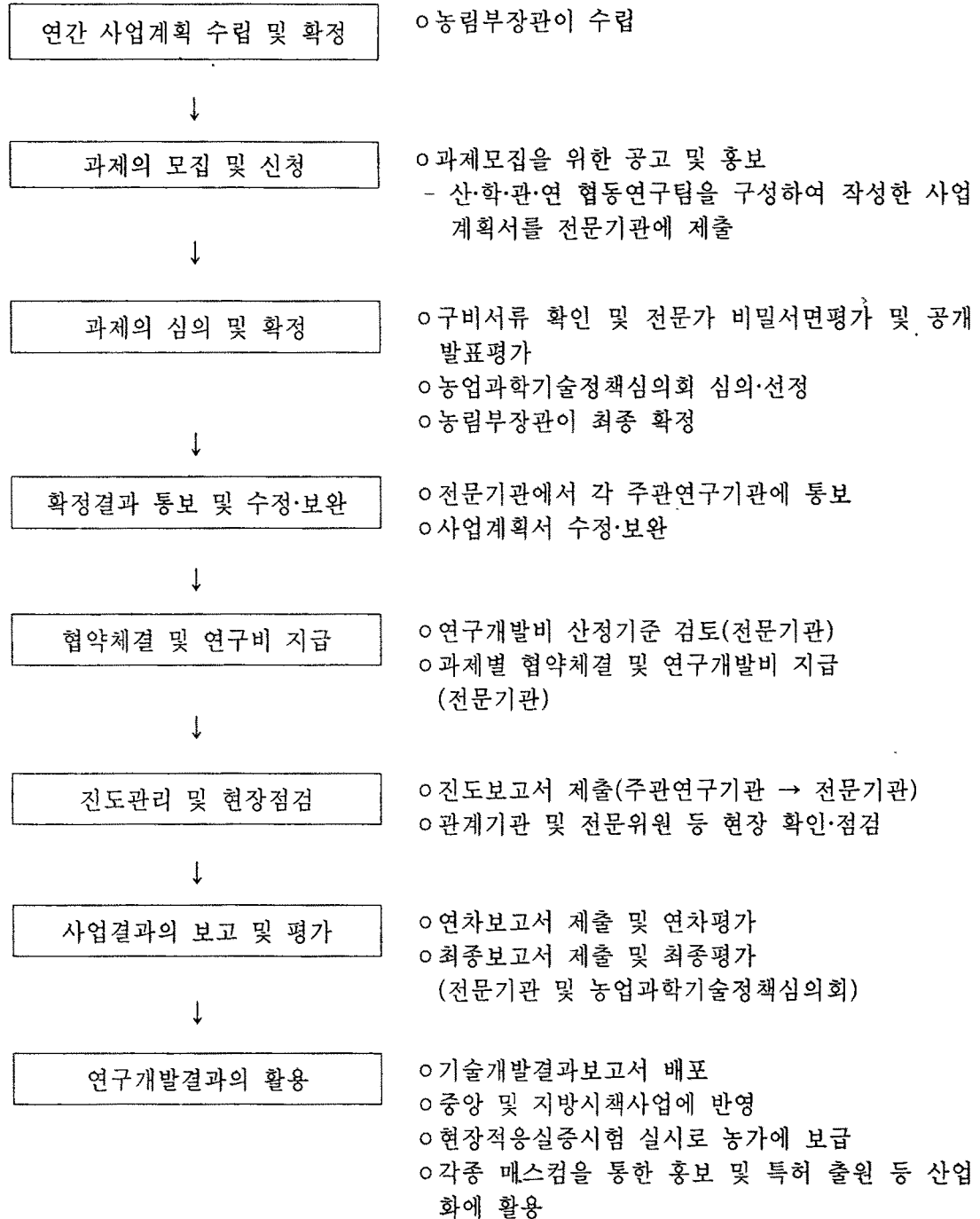
(3) 과제 평가방법 : 4단계 평가

- 1단계 : 실무위원단 사전검토
- 2단계 : 비밀서면평가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 4단계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

(4) 과제의 심의 및 확정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농림부장관 최종확정

(5) 사업추진체계



I.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남, 생활지도관 박영자, 생활지도사 심미옥)입니다.

1. 목 적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손쉽게 회복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시설 설치
- 농작업 피로회복시설 설치 및 건강관리기구 비치 등 건강생활환경 조성
- 시설 및 기구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및 관리 추진
- 농업인들의 피로 회복, 정보 교환, 교육 등 종합적인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6-'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개소 638	162	102	60	60	157	97	
사업비	계	백만원 29,470	5,670	5,100	3,000	3,000	7,850	4,850
	보조	14,735	2,835	2,550	1,500	1,500	3,925	2,425
	지방비	14,735	2,835	2,550	1,500	1,500	3,925	2,425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비닐하우스증 및 농부증 심화
- 농작업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을단위 피로회복 시설이 필요함
-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2) 사업기간 : 2000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마을 중

- 연중 농작업 부담이 과중하고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마을
- 활용가능한 마을주민이 많은 마을
- 시설을 설치·활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대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마을 주민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과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설치 및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
- 시설 및 기구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 시설 설치, 운영비 마련, 시설 활용 및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적극 활용·관리할 수 있는 마을

(4)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시설

- 피로회복시설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구비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찜질방, 목욕실 등
 - * 찜질방, 목욕실 등의 규모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
 - 권장시설 : 식품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생활체육시설 또는 쉼터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 농작업 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구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의 연령층,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60	백만원 3,000	1,500	1,500		1,500	
부 산	1	50	25	25		25	
대 구	1	50	25	25		25	
광 주	1	50	25	25		25	
경 기	5	250	125	125		125	
강 원	6	300	150	150		150	
충 북	4	200	100	100		100	
충 남	5	250	125	125		125	
전 북	5	250	125	125		125	
전 남	13	650	325	325		325	
경 북	8	400	200	200		200	
경 남	10	500	250	250		250	
제 주	1	50	25	25		25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 단 농촌생활개선업무가 시군청으로 이관된 시군은 시군청이 사업주관기관임 (이하의 모든 해당 내용도 이를 기준으로 해석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31 - 299 - 2680)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및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변경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 계획 수립												
○ 시설 설치 및 기구 구입												
○ 교육 및 활용 지원												
○ 평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5년간 사후 활용지도 실시
- 설치마을에서는 설치완료 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및 기구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시설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피로회복시설 및 50만원이상 기구	준공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나. 보고·기타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 보고 : 3. 20한 (별지 3호 서식)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결과 보고 : 6. 20, 9. 20, 12. 20(별지 4호 서식)
-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카드 제출 : 12. 20(별지 5호 서식)

6. 2001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농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을 활용·관리할 수 있는 농촌마을

다. 신청절차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함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연중 농작업 부담이 과중하고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마을
- 활용가능한 마을주민이 많은 마을
- 시설을 설치·활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대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으며, 마을 주민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설치 및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
- 시설 및 기구의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 시설 설치, 운영비 마련, 시설 활용 및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적극 활용·관리할 수 있는 마을

○ 선정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마을의 설치여건 및 사업계획서를 선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설치가 가능한 사업량(예산)을 도 농업기술원 및 특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특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요구함.
-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시도별로 예산배분계획이 확정 통지되면,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통지하고 시군에서는 이에 따라 신청마을의 1년간의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정함.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서

1. 마을 명 :
2. 설치장소(주소) :
3. 설치방법(신축, 개축 등) :
4. 설치 시설 및 규모 : 총 평

기본 시설			권장 시설					
건강 기구실	짚질방	목욕실	식품 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휴식실 (문화 교양실)	옥외 쉼터	옥외 체육 시설	기타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 기타 :

5. 사업비 : 총 백만원(지원 자부담 기타)
 - 자부담금 및 기타사업비 확보 계획 :

6. 운영관리계획

- 시설 운영 및 관리비 확보 계획 :
- 전담관리인 확보 계획 :
-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실시·계획 :
- 마을내 건강지도자 양성 계획 :
- 보건소 등의 협력 유치 계획 :

첨부 : 관련서류 각 1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별지 3호 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계획

마을명	설치장소 및 방법	설치시설 및 규모	사업추진계획(시기를 월(月)로 표시)						운영관리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사전교육	계획수립	시설설치 및 기구구입		교육 및 활용지	평가	운영비 확보 (방법, 천원)	관리인 확보 (명)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회)	건강 지도자 양성 (명)	유관기관 협력 유치 (회)
						착공	준공							

* A4 형으로 작성

<별지 4호 서식>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실적 (○/4분기)

마을명	주요시설	사업 추진 실적(○, ×)						사업비 집행 실적(백만원)					
		추진위원회 구성	사전교육	계획수립	시설설치 및 기구구입		교육 및 활용지	평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행정 지원 등)
					착공	준공							

* A4형으로 작성, 사업비 집행 실적은 누계 실적 기록, 설치대상 전 마을 보고

<별지 5호 서식>

연번	도별	번호

2000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1. 마을명

--

2. 마을위치도(읍면소재지를 기점으로) 3. 일반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width: 100%;"></div>	가구수 :	호	인구 :	명	
	- 농가 :	호	- 남자 :	명	
	- 비농가 :	호	- 여자 :	명	
			※ 활용인원 :		
	경지면적 :	ha	축산규모 :		
		- 논 :	ha	- 소 :	두
		- 밭 :	ha	- 돼지 :	두
		- 하우스 :	ha	- () :	
○ 시군 소재지에서의 거리		km	주작목 :		

4.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 및 편의시설까지의 거리(단위:km)

목욕탕	찜질방	헬스센터	보건소	노래방		

5. 조직(학습단체) 현황

조직(학습단체)명	참여인원	주요활동현황	기금(천원)

6. 설치 현황

크기 (평)	시설설치방법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신축	개축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행정지원)

7. 시설 및 기구내역

시 설		기 구	
구 분	규모(평)	품 명	수 량

8. 평면도

--

9.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				활동계획
소속 및 직책	성 명	연령	전화번호	

10. 운영 · 관리 계획

시 설 개방방법	운영비 확 보	전담관리인 확 보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실시	건강지도자 양 성	유관기관 협력유치	마을 행사 등 기타 활용

11. 사진

<외부전경>

<활용장면>

II. 지역특화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과장 이수철, 지도관 정길영, 지도사 박삼수)입니다.

1. 목 적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의 실용화 촉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
- 생력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 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 작목입식 후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에너지절약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 추진과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시범사업 추진 확대
- 협업경영,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특산품 생산 규모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농업 육성
- 시범사업장을 농업인 산교육장으로 활용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1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 2항, 동시행규칙 제13조

4. 연도별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4	
사 업 량	1,499	376	342	431	548	1,600	
사 업 비	계	106,340	35,458	31,728	34,515	39,490	160,000
	보 조	19,368	7,092	6,346	6,903	8,398	32,000
	용 자	46,336	14,183	12,690	13,806	15,396	64,000
	지방비	19,368	7,092	6,346	6,903	7,998	32,000
자부담	21,268	7,091	6,346	6,903	7,698	32,0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89년부터 UR대응책으로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자 : 해당 사업별로 재배(사육)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시범사업명	개 소 당		지 원 내 용
	규 모	사업비	
○ 하우스환경개선	20a	30	자동·강제환기시설, 하우스경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비시설, 공기교반기, 등
○ 인공배지양액재배	20a	60	양액재배시설(베드시스템), 냉·난방시설, 하우스경보시설, 폐액살균장치 등
○ 시설원예에너지절약	20a	30	상,하이동식커튼시설, 지중난방시설, 공기교반기, 변온관리시설 등
○ 사과저수고밀식과원	1ha	50	자근대묘, 지주, 자동관수 등
○ 과수조류피해방지	1.5ha	30	골조시설
○ 장미양액재배	30a	100	양액재배시설, 하우스 자동화시설 등
○ 백합상자 재배	30a	50	재배용상자, 양액혼합기, 상자용배지 등
○ 우리꽃 상품화 시범	10a	50	이동벤치, 관수시설, 차광시설, 자동하우스 등
○ 수출용 백합종구생산	30a	100	구근수확기, 세척기, 선별기 등
○ 누에동충하초실증	누에	100	재배실, 냉, 난방시설, 철재잡박, 과습기 등
○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10~20상자 균상45m ²	128	환경자동화, 재배사, 균상 등
○ 신품종버섯안전생산	재배165m ²	40	자동관수, 재배사, 송풍장치, 종균 등
○ 수출규격돈품질향상	규격돈10천두이상	72	컨테이너돈사, 수송전용차량 등
○ 유희농경지 사료 자원화	소200~300사료포20ha	100	트렌치사일로, 조사료공동생산장비 등
○ 한우고급육생산시범	5~10농가 소200두	300	축사, 조사료생산장비, 인공수정시설 등
○ 재래닭 실용사육시범	연간20천수	100	종계, 계사, 급이기등 사육시설
○ 경비절감형축산분뇨처리	돼지15천두 이상	80	축분교반기, 발효시설 등
○ 산지초지액비시용	초지3ha이상	60	스프링쿨러시설, 전기목책시설 등
○ 가공용감자생산	10ha	50	전용파종기, 수확기, 승용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 지역특성화기술개발	-	-	사업내용, 사업비에따라재배및사육(두수)시설지원
○ 기술보급활력화지원	-	-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용자 4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 업 명	사업 량	개소당 사업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548	-	백만원 39,490	23,794	8,398	15,396	7,998	7,698
○ 하우스환경개선	100	30	3,200	19,200	6,400	12,800	6,400	6,400
○ 기존하우스 이용 인공 인공 양액재배	60	60	3,600	2,160	720	1,440	720	720
○ 시설원예에너지절약	95	30	2,850	1,710	570	1,140	570	570
○ 사과저수고밀식과원	20	50	1,000	600	200	400	200	200
○ 과수조류피해방지	20	30	600	360	120	240	120	120
○ 장미양액재배	10	100	1,000	600	200	400	200	200
○ 백합상자재배	5	50	250	150	50	100	50	50
○ 수출용백합종구생산기계획	10	100	1,000	600	200	400	200	200
○ 우량꽃 상품화 실증	5	50	250	150	50	100	50	50
○ 누에동충하초버섯생산	20	100	2,000	1,200	400	800	400	400
○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30	128	3,840	2,304	768	1,536	768	768
○ 신품중버섯류안전생산	25	40	1,000	600	200	400	200	200
○ 한우고급육 생산	8	300	2,400	1,440	480	960	480	480
○ 유희농경지이용자급사료	18	100	1,800	1,080	360	720	360	360
○ 재래닭 실용계 사육	10	100	1,000	600	200	400	200	200
○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18	72	1,296	778	259.2	519	259.2	259.2
○ 경미질감형 축산분뇨퇴비화	13	80	1,040	624	208	416	208	208
○ 산지초지 액비사용법 개선	6	60	360	216	72	144	72	72
○ 고품질가공용감자생산	18	50	900	540	180	360	180	180
○ 지역특성화기술개발시범	47	-	9,104	5,462	1,821	3,641	1,821	1,821
○ 기술보급활력화지원	10	-	1,000	700	700	-	3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보급국 원예축산과(0331-299-2742)
- 도 : 농업기술원
-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신 기술에 대하여 수용능력이 높은 지역 또는 농업인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선정
 -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농업인은 제외
- 선정절차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입식작목의 품목,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가공, 판매, 이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3인이상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협의회 구성 운영
- 사업포기 등 대상농업인 변경시에는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 검토
 - 품목별 생산자 조직과 수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을 평가
 - 중앙 및 지방단위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지급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규정 제4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하여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사후 기술지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 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농업기술원장은 시·군별,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 분석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진첩을 비치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 확산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0 하우스환경개선	0 점적관수시설	사업추진 연도	사업시작 후 2년	사후관리기간 내처분금지
	0 자동및강제환기시설	"	3	
0 인공배지양액재배	0 양액재배베드시설	"	3년	
	- 냉방시설	"	3년	
	0 하우스경보시설	"	3년	
0 시설원예에너지절약	0 상, 하이동식 수평커튼	"	3년	
	0 지중난방시설	"	3년	
0 사과저수고밀식과원	0 자동관수시설	"	2년	
	0 지주시설	"	5년	
0 과수조류피해방지	0 골조시설	"	5년	
0 장미양액재배	0 양액재배 베드시설	"	3년	
0 백합상자재배	0 재배용 상자	"	3년	
	0 양액혼입기	"	3년	
0 수출용백합종구생산기계화	0 구근수확기	"	5년	
	0 구근세척기	"	5년	
	0 구근선별기	"	5년	
0 우리꽃 상품화 실증	0 자동화하우스	"	5년	
	0 이동식 베드	"	3년	
	0 관수시설	"	3년	
0 누에동충하초 버섯생산	0 버섯재배사	"	5년	
	0 냉·난방기자재	"	3년	
	0 잠박 등 기자재	"	3년	
0 환경자동조절 버섯	0 버섯재배사	"	5년	
	0 생력균상시설	"	3년	
	0 환경자동기자재	"	3년	
0신품종 버섯류 안전생산	0 버섯재배사	"	5년	
	0 균상시설	"	3년	
	0 각종기자재	"	3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0 한우고급육생산	0 우 사	사업추진 연도	사업시작 후 10년	사후관리기 간내 처분금지
	0 트랙터	"	5년	
	0 수확기	"	5년	
	0 곤포기	"	5년	
0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0 컨테이너돈사	"	5년	
	0 수송용차량	"	5년	
0 재래닭 실용계 사육	0 계 사	"	7년	
	0 급이기	"	3년	
	0 급수기	"	3년	
	0 환기시설	"	3년	
0 유희농경지사료자원화	0 트랜치 사일로	"	5년	
	0 비료 살포기	"	5년	
	0 파종기	"	5년	
	0 곤포기	"	5년	
	0 수확기	"	5년	
0 경비절감형축산분뇨 퇴비화	0 축분 교반기	"	5년	
	0 발효시설	"	5년	
0 산지초지액비 시용 방법개선	0 스프링쿨러 관수시설	"	3년	
	0 전기목책	"	3년	
0 가공용 감자생산	0 전용파종기	"	5년	
	0 땅속작물수확기	"	5년	
	0 승용관리기	"	5년	
	0 저온저장고	"	10년	

※ 시설 및 중요 장비중 상기에 명시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단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중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재산은 3년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나. 보 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보고 : 3월말
- 사업추진 결과 보고 : 11월말

I.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과장 박대균, 지도관 최동현), 원예축산과(과장 이수철, 지도관 정길영),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남, 지도관 신영숙), 지도기획과(과장 김재호, 지도관 성중환)입니다.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 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촌여성 보유기술의 산업화 연계 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
-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농업기술의 집중적 개발보급으로 지역간 균형적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배로 농업인의 자율선택 유도
- 농작물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 국민식량의 지속적 자급을 위한 초다수성 품종 종자를 일정량 확보
-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대책 추진
- 토양검정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망을 이용한 토양관리 정보 제공
- 해외유입 병해충 등 신속 정확한 진단에 의한 방제대책 수립 추진
- 지역농축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임가공 활동 추진
- 지역특성화된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사들의 활동기반 조성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계	'93~'97	'98	'99	2000	2001~2004
사업량		개소 20,590	5,549	1,426	1,854	1,761	10,000
사업비	계	백만원 125,000	20,642	9,024	11,294	14,040	70,000
	보조	62,500	10,321	4,512	5,647	7,020	35,000
	지방비	62,500	10,321	4,512	5,647	7,020	35,0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1) 배 경 : 1962년부터 새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추진
- (2) 지원대상자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시범농가에 지원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국가 기반기술 시범

시범내용

- 식량작물 우량품종시범, 신육성 벼품종 시범, 초다수성 벼품종 시범
-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운영,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2000년 기술지원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함
- 주요 지원내용 : 시범사업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식량작물 시범

○ 시범내용

-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정밀균평 벼재배
- 보리, 콩, 참깨 등 밭작물 기계화 시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0년 기술지원사업 기본지침에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소득작목 시범

○ 시범내용

- 채소 :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
- 과수 : 과수 토양감응형 관수시범, 과원 보온덮개 제조시범,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 고품질 배 Y자수형 시범, 성페로몬이용 해충
방제,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 화훼 : 국화비가림재배, 장비관비재배기술보급, 분화 저면관수 재배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 축산 : 한우 산우능력 향상, 위생우유 생산 시범, 사료용 치커리 흑염소
사육 등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0년 기술지원사업 기본 지침
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시설 및 장비, 재료비, 교육 및 평가경비 등

□ 환경보존 농업기술시범

○ 시범내용

- 병해충 종합진단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천적증식 시설설치
- 토양환경 종합개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 돼지분뇨 오염방지, 가축방역 무인소독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0년 기술지원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토지임차료, 예찰소 운영비, 시범사업시설 및 재료비

□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 지원규모 : 개소당 30백만원
- 지원내용 : 생산설비 설치비, 시범사업재료비 등

□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

- 지원규모 : 8개소,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내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재료비, 수용비, 여비 등 지원

(4) 지원조건 : 보조 100% (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액) 내용

사업명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7종)	개소 1,761	백만원	백만원 14,040	7,020	7,020	-	7,020	-
○ 국가기반기술시범(6종)	588	52	3,072	1,536	1,536	-	1,536	-
○ 식량작물시범(5종)	89	17.5	1,560	780	780	-	780	-
○ 소득작목시범(16종)	669	6.5	4,378	2,189	2,189	-	2,189	-
○ 환경보전농업기술(8종)	387	10.4	4,030	2,015	2,015	-	2,015	-
○ 농촌여성 농외소득(1종)	20	30	600	300	300	-	300	-
○ 기술선도 벤처농업(1종)	8	50	400	200	200	-	2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국가기반기술 시범	식량작물과 (0331-299-2200)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식량작물 시범	식량작물과 (0331-299-2200)	"	"
소득작목 시범	원예축산과 (0331-299-2200)	"	"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식량작물과 (0331-299-2200)	"	"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	생활개선과 (0331-299-2200)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기술선도 벤처농업 육성	지도기획과 (0331-299-2662)	"	"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 대체가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선도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선정절차

- 대상농가중에서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각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기계장비,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새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기술 파급효과 거양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
- ※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단위사업별 지정된 2~7년간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기기는 기기의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후 2~3년까지 처분제한(구체적인 내용은 2000년 기술지원사업 지침 참조)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상황 보고 : 3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계획보고 : 3. 20까지(별지1호서식)
-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추진실적 보고 : 12. 20까지(별지2호서식)
-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에 의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선정절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업기술센터 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나.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장이 농촌에 입지해야하며, 지역농특산물을 직접 가공·생산하거나 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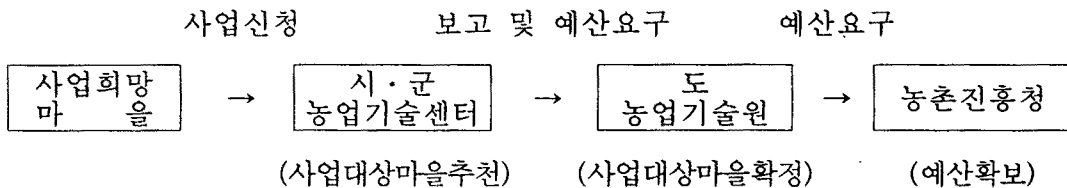
○ 신청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지역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사업희망 전년도 1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3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4호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촌여성이 경영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지역농특산물을 가공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지역
 - 당해 사업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가능한 사업지역을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희망마을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현지조사 후 사업계획서(별지4호서식)와 심사의견서(별지5호서식)를 첨부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대상마을 보고 및 예산요구
- 도농업기술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예산 요구

○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2000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계획

1. 사업명 및 생산제품

2. 사업지역

3. 사업배경

4. 사업추진개요

- 참여 인원 :
- 대표자 성명 : (나이)
- 사업 규모 :

사업장 규모	소요예산				제품생산 가능시기	예상소득 (1인당)
	사용내역	지원	자부담	계		
계						

- 자부담분 조달방법 :
- 공동작업장 확보 방법 :
- 참여농가의 평균 소득 : 농업소득 천원, 농외소득 천원

5.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6.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별지 2호서식>

2000 농촌여성 농의소득사업 추진결과

1. 사업추진결과

○ 사업명 및 생산제품

○ 사업지역

○ 사업개요 (대표자 성명 및 나이)

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인원 (명)	작업장 규 모	자부담분 조달방법
사용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							
계							

2. 소득분석

참여인원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	1인당순소득	제품생산시기

* 조수입, 경영비, 순소득은 사업장의 전체의 것을 기록하고, 1인당 순소득은
앞의 전체순소득을 참여인원으로 나눈 것

<별지 3호서식>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신청서

사업지역	마을현황				주재배 작 목	대표자		사업내용	
	가구수		인구			성명	전화번호	사업명	사업규모
	농가	비농가	남	여					

위와같이 2000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4호서식>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 기대효과

2. 마을여건 및 참여자들의 관심도

3. 자부담분 조달능력 및 조달방법

4. 참여농가의 평균 농가소득 : 농업소득, 농외소득

5.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및 생산제품
- 나. 사업지역
- 다. 공동참여농가수
- 라. 대표자 성명

6. 세부사업계획

- 가. 공동작업장 규모 및 확보방법
- 나. 소요예산 및 사용내역

소요예산				제품생산 가능시기
사용내역	계	지원	자부담	

다. 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라. 예상소득

<별지 5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1. 사 업 명 :

2. 대 표 자 :

3. 사업지역 :

(의 견)

-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지역특성상 적합여부 및 사업의지
- 사업장 입지 : 인·허가요건, 기존사업장과의 경합성, 주변환경
- 사업계획 : 시설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여부
- 사업전망 : 제품의 상품성, 판매전망, 농어가 소득 기여도 등

년 월 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인

II.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 (과장 김재호, 농촌지도관 김진군, 농촌지도사 김이기)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 능력배양
- 영농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농촌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 농기계 현장이용자에 대한 안전이용 및 정비점검 능력배양

2.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재배기술 및 경영교육을 위한 참여식 교육 강화
-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 농업인력 양성교육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력의 함양과 생활개선 실천의지 함양
- 최신형 농업기계 중심으로 안전이용 및 정비점검교육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1항(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7	'98	'99	2000 (예산액)	2001년	2002~2004	
사업량(천명)	12,400	7,895	1,046	859	396	551	1,653	
사 업 비	계	95,863	53,217	9,683	5,261	5,326	5,594	16,782
	국비(중앙)	9,800	6,811	967	336	318	342	1,026
	보 조	21,622	3,707	2,445	2,462	2,504	2,626	7,878
	지 방 비	64,441	42,699	6,271	2,463	2,504	2,626	7,878

5.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2) 추진계획

○ 중앙 : 정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6.3천명)

- 실수요품목별교육(1.3천명)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귀농인교육
- 유관기관, 단체위탁 및 협력교육(5.0천명) : 영농공개강좌

○ 도 : 농업기계 교육(1.4천명)

- 시책관련교육(1.4천명) : 기계화영농사, 농기계 귀농인교육

○ 시군 : 현장애로기술 및 취약기술 실천과제 교육(388.4천명)

- 실수요품목별교육(378.0천명) :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 학습단체회원교육(10.4천명) : 4-H 회원과제 및 회원 진로지도교육, 생활 개선회교육

(3)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별표 1]

나. 2000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지방비
		사업비 계	예 산 액(재원명)			
			계	국 비	보 조	
계	명 396,031	백만원 5,326	2,822	318	2,504	2,504
< 기술지도 >	6,250	318	318	318	-	-
○ 품목별전문교육(중앙)	6,250	318	318	318	-	-
< 기술보급사업보조 >	368,381	4,228	2,114	-	2,114	2,114
○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00	3,000	1,500	-	1,500	1,500
○ 품목별 상설교육	57,960	580	290	-	290	290
○ 청소년교육	10,250	328	164	-	164	164
○ 생활개선회교육	171개소	320	160	-	160	160
< 농촌활력화시범사업 >	21,400	780	390	-	390	390
○ 농업기계교육훈련	21,400	780	390	-	390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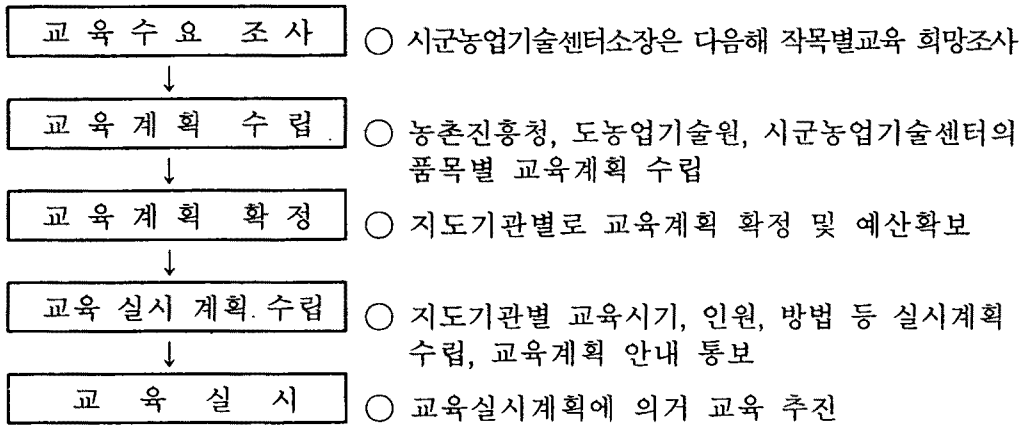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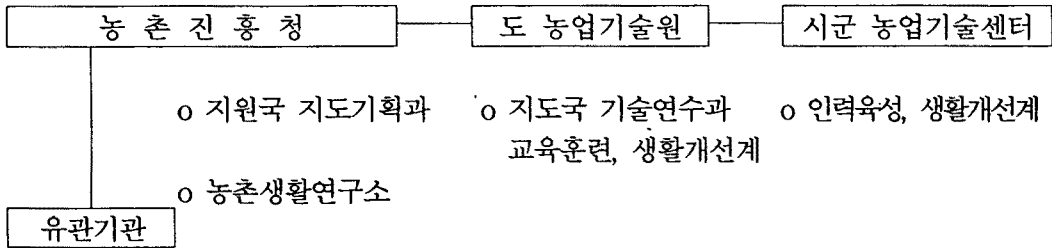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 (전화 : 0331-299-4669)
- 시 도 : 도농업기술원 기술연수과
- 시 군 :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기관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다. 보고·기타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함

[별표 1]

2000년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 (내용)	방법
농촌진흥청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2-3월 (4일)	명 1,000	○교육작목에 대한 영농 경험이 있고 보다 새 로운기술을 필요로 하 는 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교육수요조사 시 희망한자	○매년 희망작 목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과정설정(배, 포도, 양돈, 느타리버섯 등)	전일합숙교육 -주간:강의,실 습, 견학 -야간:영농정 보 교환,시청 각, 기타
"	귀농인 교육	11월 (3일)	250	○'98년이후 귀농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교육수요조사 시 희망한자	○매년 희망작 목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과정설정(배, 포도, 양돈, 버섯 등)	"
농촌진흥청 (희망주 산지역)	영농공개 강좌	3-11월 (1일)	5,000	○전문기술교육 참여 희망농업인	○개방화대응 지역주산 성 장작목	이론강의 병행 질의응답식 교육
도 농업 기술원	기계화영 농사교육	연 중 (2주)	1,000	○기계화영농사 요원	○종합반 편성 운영	이론 및 실기 실습
"	귀농인 농업기계 교육	연 중 (1주)	400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귀농인	○정비수리 핵심기술	이론 및 실기 실습
"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	3-11월 (1일)	9개소	○생활개선회임원	○합리적인 농가경영 ○농산물가공 ○생활개선회 활동	강의, 실습 (지방비)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 (내용)	방법
시군 농업 기술센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12월 (연4회 이상)	57,960	○품목별 조직 농업인대상 중심	○품목별생산 및 유통단계 별 핵심기술 지도	강의,토의,사 례발표,실기실 습,견학 등
시군 농업 기술센터 (지역별 주산지의 공공시설)	새해영농 설계교육	1-2월 (1일)	300,000	○품목별조직농업 인 ○주산단지 등 참여희망농업인	○공통교과: 농어촌발전 대책지역농정 시책 ○전문교과: 과정별 전문 기술 및 '98 개선과제 핵심 기술	새품종, 새기 술 등 핵심기 술중점교육(강의, 토의, 사례발표 등)
시군농업 기술센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한기 (1~2 일)	20,000	○농업기계 공동이 용조직 기간 요 원 및 실수요자 ○교육희망 부녀자 등	○신규농업기계 기종 중심 정 비점검요령 ○운전조작 및 교통안전	실기실습 중 심
"	4-H회원 전문교육	연 중 (1-3일)	10,250	○4-H회원 및 영 농후계세대 회원	○과제분야별 교육 ○진로지도교육	강의,토의,사 례발표,실습, 현장체험
"	농촌여성 과제교육	연 중 (1일)	162개소	○시군생활개선 회원	○의식주,생활개 선,가정경영등 ○여성 지도력 배양 ○ 지역사회 활동 참여	강의,실기실습 (지방비)

Ⅲ.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과장 김재호, 농촌지도관 구현희)입니다.

1. 목 적

-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후계인력의 확보
- 영농4-H회원의 과학영농 체험학습으로 영농 정착유도

2. 추진방향

- 영농4-H회원의 영농 학습활동으로 전문농업능력 배양
- 영농4-H회원의 영농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
- 우수 영농4-H회원의 사기 진작으로 영농4-H 활성화 도모
- 영농후계인력의 체계적육성 시책에 기여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계	'92~'96	'97	'98	'99년	2000	2001~2004
사업량 (명)		3,300	-	-	400	400	400	2,000
사 업 비	계	16,000	-	-	2,000	2,000	2,000	10,000
	국고보조	8,000	-	-	1,000	1,000	1,000	5,000
	지방비보조	8,000	-	-	1,000	1,000	1,000	5,000
	국고융자	-	-	-	-	-	-	-
	자부담	-	-	-	-	-	-	-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영농4-H회원에게 4-H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양성 필요

(2) 지원대상

- 영농4-H회원(영농활동과 관련된 우수 학교4-H 포함가능)으로서 과제이수 능력을 갖추어 전문농업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3) 1인당(개소당)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 지원규모 : 5백만원(1인 또는 개소당)
- 재 원 : 국비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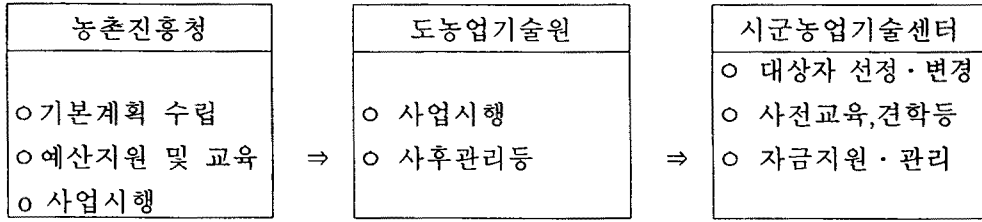
(4) 지원내역

- 영농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야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수경 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기계구입, 컴퓨터 구 입, 기타 농업기반 시설 등
축산 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농기계 구입, 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시설 등

※ 지원자금은 종자, 비료, 농약, 유류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5) 사업시행 체계



나. 2000년도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재 원 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명 400	백만원 2,000	1,000	1,000		1,000	
시범영농 지원	400	2,000	1,000	1,000		1,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특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 부서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전화번호 : 0331-299-2666)
- 도 : 농업기술원 인력육성업무 담당과
- 시군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업무 담당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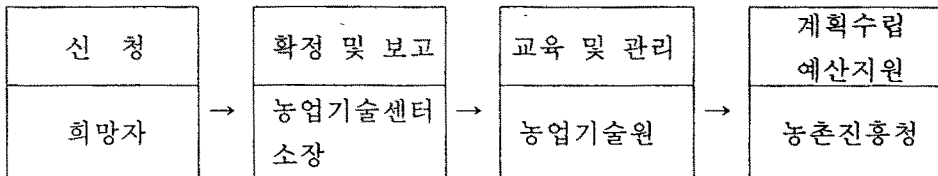
구 분	배점	평 가 방 법
영농기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농림사업시행지침 제5권 1536쪽 별표1 영농규모 평가 기준에 의한 환산면적 - 1.5ha 이상 : 15점 - 1.5ha ~ 1.0ha 미만 : 10점 - 0.7ha ~ 1.0ha 미만 : 7점 - 0.7ha 미만 : 5점
학 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기준 - 농업계 전문(대학) 및 농업계고등학교 : 10점 - 일반계 전문대학 및 일반계 고등학교 : 8점 - 중학교 : 5점
교육훈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3일 단위로 1점씩 가산(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99농림사업통합지침서 제5권 1520쪽에 제시된 교육훈련기관만 인정
영농관련단체활동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연합회장 : 시군3, 도4, 중앙5점(1년당) ○ 4-H연합회임원 : 시군2, 도3, 중앙 4점(1년당) ○ 4-H회원 활동 : 1점(1년당) ※ 2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단체 활동도 이에 준하여 배점
영농경력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종사 경력 1년단위로 1점씩 가산(총10점)
자 격 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 범위내에서 가산
영농정착의욕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기준 작성활용
사업계획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 평가

※ 영농기반은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은 100%,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2) 우선 순위

- 평가점수가 높은 자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4-H활동 점수가 높은 자, 자격증소지자, 농업계학교 출신 자 순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 추천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신청 서류(붙임참조)를 확인후 평가하여 산학협동심의회(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확정된 대상자 현황을 붙임 양식에 의거 도 농업기술원장에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은 선정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농업기술원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 군 통보
- ※ '99년도에 2000년도 사업대상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신청을 받은 시도는 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 신청대상이 본 지침의 대상자격과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거 신청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자금배정
 - 보조금 : 농촌진흥청 → 도지사 → 시군 → 농업기술센터 → 신청자
-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군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집행 및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관리책임 : 특별·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장
- 현지도도
 - 지도점검자 : 특별·광역시,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공무원
 - 지도내용 : 영농 과제이수 상황, 전문기술 경영지도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국고보조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의 취소사유 해당시
- 사업대상자 및 장소 변경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대상자 변경시 15일 이내에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관리
 - 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
- 관리기간 : 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기간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 (별첨양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농업기술원장, 특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대상지의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영농4-H회원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기타서류 : 교육훈련이수 확인, 영농단체활동 확인등에 필요한 서류

마. 기타사항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2000년도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

<별표 제1호> 2000년도 시도별 지원내역(국비)

시도별	사업량(명)	국비(천원)	비 고
계	400	1,000,000	
서울	-	-	※ 배정기준 : 시군수 및 영농 4-H회원수를 감안 배정
부산	1	2,500	
대구	1	2,500	
인천	2	5,000	
광주	1	2,500	
대전	1	2,500	
울산	1	2,500	
경기	54	135,000	
강원	36	90,000	
충북	27	67,500	
충남	46	115,000	
전북	40	100,000	
전남	62	155,000	
경북	62	155,000	
경남	58	145,000	
제주	8	20,000	

<별표 제2호>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졸업년월일		
지원사업	분야	농업, 축산	작목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백만원 ()년도		
영농어 기반	경지면적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평					
	시설규모	우사, 돈사, 계사: 평, 두, 수, 비닐하우스: 기타:					
	장비	트랙터: 이앙기: 트럭, 승용차: 컴퓨터: 기타: 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포상경력 영농어기 술자격증 및 주요경력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어 교육훈련	기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4-H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학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4-H활동확인서, 교육훈련확인서, 영농기반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시설현황 (평)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농기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
재배현황 (평)	벼	보리	사과	배	포도				계
가축보유현황 (두수)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
기타특기사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도

○ 세부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계								
수도작								
화훼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자재구입			←---	-----→
재배관리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 (향후 년차별 영농계획 등을 작성)

[별표 제4호 서식]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1. 일반현황

구분	합 계	결혼여부		연 령 별(세)			학 력 별				
		기혼	미혼	21-23	24-26	27-29	국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합계											
남											
여											

2.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및 실적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	채소	과수	화훼	기타	소계	한우	육우	양계	기타
합계												

3.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	채소	과수	화훼	기타	소계	한우	육우	양계	기타
합계												

<별표 제5호 서식>

사업추진결과 보고

시도명 :

(단위 : 명, 천원)

분야별	계	채 소	시설채소	화 훼	과 수	축 산	
인 원							
지원액							

※ 지원실적은 금회/누계로 작성

IV. 농업계 특성화 대학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과장 김재호, 농업연구관 권혁모)입니다.

1. 목 적

- 지역여건에 알맞은 농업의 개발과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국립대학교를 선정
- 첨단시설 및 기자재, 장비 등의 지원으로 실험·실습위주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지역농과대학(특성화대학 중심), 도단위 농업관련연구소,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은 지역 농림업 발전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14개 특성화대학에 특성화분야의 연구,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등 집중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교, 백만원)

사업명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농업계 특성화 대학지원	사업량	14	7	10	14	14	14
	국고보조	11,500	7,000	8,194	7,975	7,365	25,466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업계특성화대학 : 서울대농생대, 한경 대학, 강원대 농대, 충북대 농대, 충남대 농대, 전북대 농대, 전남대 농대, 순천대 농대, 경북대 농대, 안동대 자연과학대, 경상대 농대, 진주산업대, 제주대 농대, 강원대 임대

(2) 지원조건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농림계 학교 등 시설지원 : 국고보조 100%

(3) 지원시설의 종류

-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및 장비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 산 액(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농업계 특성화 대학 지원	14	7,365	7,365	7,365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농림계학교등 시설지원
 - 농촌진흥청 : 기본계획 수립
 - 대 학 교 : 사업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0331-299-2658)
- 도농업기술원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승인

-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의 기본계획에 의거 해당 학교로부터 '99. 12월 말까지 2000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0년 사업계획을 승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사업추진

- 도지사는 다음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함
 - 사후봉사 및 운영조작에 따른 문제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시설물의 공사계약을 일괄 발주
 - 사업의 기성고(공사 감독자의 확인등)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리온실등 첨단시설물의 공사계약시에는 자동화시설의 조작기술지도, 사후봉사 기간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서에 명문화 하도록 함
 - 시설,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는 사전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하여 고가의 시설·장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및 승인
 - 각종 장비 및 기자재는 학과 또는 연구과제별로 중복 구입치 말고 공통장비·기자재를 우선 구입
 - 과학기술센터시설은 대농민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위주로 하고 회의실, 교육연구실, 행정실 등은 최소규모로 조정 시행
 -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과 실험실습위주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우선 구입
 - 자금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도지사

- 도지사는 분기별로 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원된 시설·장비가 정상 운용되도록 지도·감독
- 첨단유리온실 등 계절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큰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대응 투자 등 사전 조치토록 유도

○ 도지사는 매년도말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요구시 학교별로 차등지원요구

- 사업 추진실적 자체 점검·평가시에는 당해 사업의 계속성 여부, 투자우선순위, 대응 투자실적(Matching Fund), 농업인교육 및 컨설팅실적, 특성화분야 연구 및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평가

나. 보고사항

내 용	보 고 기 일	비 고
○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승인후 10일 이내 (2000지원사업 : '99.12월말)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승인후 10일 이내 (요청 : 즉시)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	붙임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정산결과 보고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 건축물등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2001년도 사업계획 제출

가. 제출기관 : 도지사 → 농촌진흥청장

나. 사업계획 제출절차

-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농림부에 기 제출한 특성화대학 5개년 투자계획 상에 계획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 (2000. 2월 말까지)

< 별지 1 >

자체 가 26-12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OO사업)				
학 교 명	시 설 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 수량)	사 업 비	비 고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2 >

자체 가 26-13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OO사업)							
학교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규모)	사업비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규모)	사업비	
		평, 개	천원		평, 개	천원	
주) 1.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변경승인 요청의 경우는 도지사의 검토의견 첨부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3 >

심 사 제 외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4분기)							
(○○사업)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사업비	집행액	사업추진 상황	사업진도	완료 예정일
		평, 개	천원	천원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4 >

총 공통 9

사업정산결과 보고						
(OO사업)						
학교명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액	비고
		평, 개				잔액 발생 사유 등
주) 1. “비고”란에는 잔액발생 사유 등을 기록						

(보고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Ⅲ. 인 력 육 성

여 백

49 후계농업인 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심재천, 농업서기관 오병석)입니다.

※ 이 사업은 '99년까지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목 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재촌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정규 농업계학교 출신자 및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조기 영농 정착유도 및 영농기반 조성
- 미혼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업량	52,823	7,862	4,819	5,000	6,000	18,000	
사업비	계	1,021,347	240,000	150,000	150,000	210,000	810,000
	용자	1,021,347	240,000	150,000	150,000	210,000	810,000

* 어업인후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육성 지원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수도작 : 30~50백만원, 축산분야 : 20~30백만원, 기타 : 20~50백만원

4) 지원조건

가)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금리 및 용자기간 : 국고용자 100%, 연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후계농업인이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자와 사업자금 지원은 신청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사업자금을 용자받지 못한 자는 의무 종사기간(36개월, 28개월)이 끝난 후 후계농업인 자격이 자동 상실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 납부시기 조정 가능

나) 융자 취급기관

○ 경종 농업분야 : 농협중앙회, 축산분야 : 축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의 중앙회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 단위에 위치한 계통기관(지역농협)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지원시설의 종류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분야별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수경 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대형농기계,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지원금의 50%이내), 폐수처리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지원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 비료, 농약, 유류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의 타 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8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나. 2000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명 5,000	백만원 150,000	150,000	-	150,000	-	-
후계농업인 지원	5,000	150,000	150,000	-	150,000	-	-

* 융자조건 : 연리 5.0%, 5년거치후 10년상환

<추진체제>

가. 사업주관기관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의 장, 시장·군수

- 농업기술센터(특별시·광역시, 기타시), 읍·면 : 대상자 심의·추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외 단위기관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TEL 02-503-7216)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다.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가 400점이상된 자 중에서
선발 및 지원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 영농정착의욕 (150점)</p>	<p>○ 읍·면 등 심사위원회 또는 생산자단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p>○ 읍·면 등 심사위원회 또는 생산자단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후 평가</p>
<p>○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50점)</p>	<p>○ 학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 : 100점 -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p>*영농정착 의욕이 강한자에 대하여는 재학중인 자도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 인정</p> <p>○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이상 : 50점 - 2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p>*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등 인정</p> <p>*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 일수에 반영</p>	<p>○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법시행령 제 79조 내지 제82조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p> <p>○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외의 훈련기관 -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재학중의 장기현장 실습기간 포함)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 훈련기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 영농경력 (100점)</p>	<p>○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미만은 50점으로하되, 6년이상 1년단위로 10점씩가산, 4-H경력은 1년단위로 5점씩 가산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는 재학기간을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미만 0점 . 1년이상 6년미만 50점 . 6년이상 7년미만 60점 . 7년이상 8년미만 70점 . 8년이상 9년미만 80점 . 9년이상 10년미만 90점 . 10년이상 100점 - 군근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5점씩 가산(1년미만은 5점) 	<p>○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졸업자 및 재학중인자는 재학기간을 영농 경력으로 인정</p> <p>○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농 종사경력도 인정</p> <p>○ 농업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 경력으로 인정</p> <p>*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 대상자 포함</p>
<p>○ 영농기반 (150점)</p>	<p>○ 영농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ha이상 : 150점 - 1.5ha~2.0ha미만 : 125점 - 1.0ha~1.5ha미만 : 100점 - 0.5ha~1.0ha미만 : 75점 <p>*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영농기반으로 인정</p> <p>*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단, 5년이상 장기계약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p>	<p>○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p> <p>○ 영농기반이 농업진흥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배점 (1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반 전부 있는 경우 : 30점 - 영농기반의 50%이상 있는 경우 : 15점 <p>*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p>
<p>○ 영농사업 계획 (150점)</p>	<p>○ 영농 사업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50점(신청자의 15%) - 중 : 120점(신청자의 70%) - 하 : 90점(신청자의 15%) 	<p>○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p> <p>*사업계획의 타당성·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평가</p>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가점사항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농업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중 영농 사업 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영농세대주)에 대하여는 총점(7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50점 가산 ○ 환경친화적 농업을 영위하거나 토착기술을 현대화하여 자원절약형 농업을 영위하는 가족농에 대하여는 총점(7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교육(경영과정포함)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점수(5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1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가점 ○ 특수전문대를 제외한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1/2 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2) 우선순위

- 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농업계 학교출신자 우선선발등)를 제외하고는 평가 점수가 높은자 순
 - 다만,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 학교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여성 순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과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 선정(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일반적인 경우 >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책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400점 이상된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후계농업인) 심의·추천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후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400점이상된 자)만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용자취급기관 임직원
- 선도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읍·면·동 후계농업인 대표 1인이상 포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에 위임된 경우 >

- 시장·군수 등은 지역내 후계농업인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심사·추천이 가능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에 심사·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 대상자 심의·추천 권한을 부여
 - 이 경우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지역내 농업인들이 알수 있도록 공지·홍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후계농업인 지원대상자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품목별 전문심사위원회(6인이내)를 구성하고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 합계가 400점이상된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자는 추천한 생산자단체와 동일 품목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한함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은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품목별 생산자단체 전문심사위원회>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이 지정하는 농업인 4인등 총 6인이내
(이 경우 후계농업인 대표 2인이상을 포함)

나) 대상자 순위 결정

- 시장·군수 등은 읍·면 등의 장과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 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정심의회 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특수전문대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과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중)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출신 우선선발 원칙)
-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9)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고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내에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제외. 이하같다)을 지원받은 경우 선정할 수 없으며, 여성(영농)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 선정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선정된 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선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여부를 용자취급기관을 통하여 농정심의회 이전에 확인 실시

다)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 등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400점이상된 자만 선정 또는 자금지원
 -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 시장·군수 등은 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과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 인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산업기능요원 지원대상 포함)의 20%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 (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자금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 시장·군수 등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즉시 대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및 계통보고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인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신고)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후계농업인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이미 자금지원을 받은 후계농업인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사업시행년도 제외)가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 제출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 『농림사업평가규정』(농림부훈령 제881호, '96.12.26)에 의한 사업평가결과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시·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비 예산액의 일정율을 각각 증액 배정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배정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위탁관리자(농협중앙회장)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축협중앙회장에게 대여
 - 농·축협중앙회장은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 기관에 배정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 변경 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융자실시등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 의함
- 사업자금의 융자는 후계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융자할 수 있음.

- 용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통보한 영농기술교육 이수자와 영농기술교육 면제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하며, 용자된 자금의 타목적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시장·군수 등의 사업추진 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인출토록 함
 - 단, 공통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용자 가능
 - 시장·군수 등은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가축입식, 농지구입등)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마.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1) 교육훈련

- 시장·군수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후계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교육	2~5일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후계농업인
영농기술교육	1주이상	선도농가, 농업계학교, 농업기술센터	

※ 영농기술교육기관은 현지여건, 후계농업인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등이 결정

- 다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인은 영농기술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와 관련된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등) 졸업자
 - 최근 2년이상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림부, 농진청 계통기관이 인정하는 전문 영농교육기관에서 4주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및 1개월이상 독농가(선도농, 시범농장등)입주훈련 이수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사업 계획상의 관련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통교육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전원이 이수토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의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은 공통교육 및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영농기술교육 면제자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비후계자 등록자 교육·훈련
 - 시장·군수 등은 '98. 12말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전담지도사의 지도아래 영농 4-H활동 또는 독농가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예비후계자의 자질과 부모의 영농기반 등을 감안하여 작목선택에 대한 상담 실시
 -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예비후계자는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에 입학 추천

2) 해외연수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은 후계농업인중 사업추진 실적이 뛰어나고,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와 후계농업인 육성업무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시행

3) 교육훈련 계획제출

- 농촌진흥청장은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국내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계획(예산포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년도 전년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관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년도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년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사업대상자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또는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 시장·군수 등은 융자취급기관장의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
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
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
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
- 예비후계자 등록자 관리
 - 시장·군수 등은 '98. 12말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는 등록을 취소
 -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영농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이상 되는 자

나.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1)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이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다음사항의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1일 2~3일 교대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예 : 수도작 후계자가 정육점운영 등)중 후계농업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재학 기간동안 사업장 관리 및 용자금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졸업후 2개월 이내에 영농복귀이행 등의 각서를 제출하는자는 후계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2)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 등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정상 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 등은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관조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라. 후계농업인의 교체 및 승계

1) 후계농업인의 교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2) 후계농업인의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후계농업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 등은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이 경우 승계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에 한함)
 - 시장·군수 등은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 기관(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 미혼인 여성후계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인 승계절차에 준함)

마.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1)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인이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농촌발전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

2)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지원

-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농민단체 육성 도모

3) 농산물의 판매지원

- 농·축협중앙회장은 후계농업인의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
 - 농산물 협동출하반에 적극 참여 유도
 - 규격포장, 운송, 판매등 알선 지원
 - 판매매장을 이용한 주말시장개설등 전시판매 지원
 -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간행물 배부, 운송자금의 지원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과 축협중앙회장은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를 알선

4) 농촌인력육성업무 추진에 관련된 세부사항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인력육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바. 보고 (보고기관 → 농림부)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인 선정결과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축협중앙회장	읍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축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 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시·도지사	예비후계자 관리현황	매년 1.30까지	별지 제11호서식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농업인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
 - 단,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 '98. 12말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와 30세미만인 미혼 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
 - 산업기능요원(농업인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시행년도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
 -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시·군 또는 읍·면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등을 마친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단,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농·축산경영자금 제외)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 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예비후계자 관리(등록)카드, 한농연 추천서(별지 12호서식),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2000년도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잠정 결정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노지채소	0.21	0.21~0.43	0.43~0.64	0.64~0.86	0.86
시설채소	0.08	0.08~0.16	0.16~0.24	0.24~0.32	0.32
사과	0.21	0.21~0.43	0.43~0.64	0.64~0.85	0.85
배	0.11	0.11~0.23	0.23~0.34	0.34~0.46	0.46
포도	0.12	0.12~0.24	0.24~0.37	0.37~0.49	0.49
감귤	0.25	0.25~0.51	0.51~0.76	0.76~1.02	1.02
	두 미만	두 미만	두 미만	두 미만	두 이상
한우(번식)	18	18~36	36~54	54~72	72
낙농(비육)	10	10~20	20~31	31~41	41
낙농	2	2~5	5~7	7~10	10
양돈(비육)	36	36~73	73~109	108~145	145
양돈(번식)	8	8~15	15~23	23~31	31
	수 미만	수 미만	수 미만	수 미만	수 이상
양계(산란)	756	756~1,512	1,512~2,268	2,268~3,025	3,025
양계(육계)	2,459	2,459~4,918	4,918~7,378	7,378~9,837	9,837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담배	0.37	0.37~0.75	0.75~1.12	1.12~1.50	1.50
인삼	0.26	0.26~0.51	0.51~0.77	0.77~1.02	1.02
양잠 (약용)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평미만	평미만	평미만	평미만	평이상
벼 (느타리)	28	28~57	57~85	85~113	113

※ '98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 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만 50%인정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 규모 (평)	소 유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계								
농지 구입								
농기계구입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	
한우 입식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향후 영농계획 등을 작성)

후계농업인 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 가 기 준 (점 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자체가 26-2

후계농업인 선정결과 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 계	결혼여부		연 령 별				
		기혼	미혼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함.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계													

후계농업인 관리카드

사 진 (반명 합판)	① 성명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고유 번호	
	④ 현주소 우편번호 :		⑤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③ 연락처 전화번호 :	
					⑥ 주사업(희망)작목 :	
					⑦ 자금지원(희망)내역	
				후계인	년 분기	백만원
				전업농	년 분기	백만원
⑧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 결혼여부: ㉔미혼 ㉕기혼		⑩ 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 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m ² ,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저온냉장고, 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후계농업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혼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체가 26-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증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자체가 26-6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 별	사업 취소 연도 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 년도	지원액 (용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자체가 26-7

예비후계자 관리현황

1. 성별·직업별·연령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성 별			직 업 별			연 령 별					
	계	남	여	농업종사	학생	기타	20세이하	21~25	26~30	31~35	36세이상	
서울 · · ·												
제주												
계												

2.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시도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서울 · · ·														
제주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예비후계자중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되 매년 12월말 기준 작성

50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심재천, 사무관 이진원) 입니다.

1. 목 적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자에게 국고 융자 지원
- 영농기반이 취약한 귀농창업자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

3. 근거법령

- 대통령지시사항 :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하여 사회안정망 강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년	2002~2004
사 업 량			750가구	500가구		
사 업 비	계	백만원	150,000	100,000		
	보 조		-	-		
	융 자		150,000	100,000		
	지방비 자부담		-	-		

* '98년도에 실업대책 예비비 200억, 농기업경영자금 200억 2차지원(400억원)
'99년도 추경(농특회계)에서 150억, 농협자금 200억 융자지원(350억원)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자
 - '99.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 포함)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한 자(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는 시장. 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관련된 사항은 같음)
 - 3일이상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 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정부·지자체, 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 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 단, 자금배정일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우선 지원
- ※ 단, 타 농업정책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2) 지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대출최고한도 : 1가구당 2,000만원
- 대출금리 : 5.0%(대출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적용)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나. 2000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가구 500	백만원 100,000	100,000		100,000		
귀농자영농 창업자금지원	500	100,000	100,000		100,000		

* 융자조건 : 연리 5.0%, 2년거치후 3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업기술센터(광역시, 시·군) : 귀농상담,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평가의견서 작성, 사업신청자 신용조사의뢰,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귀농자 관리, 교육·훈련 및 컨설팅, 사후관리
- *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는 시장
- 농협의 단위기관 : 사업비지원, 지원용자금 관리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TEL : 02-503-7216)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 : 농정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귀농자는 『사업신청 및 계획서』(붙임 2호서식)를 작성하여 영농교육이수 증명서(붙임 6호 서식) 또는 농축산계학교 졸업증명서등 영농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사업신청 및 계획서』 해당란에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사업신청 및 계획서의 평가는 귀농인으로서 영농정착의 진실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 여부 등을 심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협에 사업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용조사를 의뢰 받은 농협장은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결과 통보서』(붙임 5호 서식)를 3일 이내에 작성 통보한다.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정한 후 『귀농자 창업자금 대출자격 확인서』(붙임 3호서식)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영농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농협에 통보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농협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신청 및 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 대출기관이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 * 시장·군수는 지원 신청자들의 영농정착의지, 영농기반확보 수준, 영농교육 및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
- *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교육훈련기관 또는 현장체험 농가로 지정한 곳에서 귀농자영농체험 기술·경영교육(2~3개월)을 이수한 귀농자는 자금 신청시 최우선 순위 부여

라. 자금지원

- 대출사무소 : 귀농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회원 농협
- 대출실행 : 대출사무소는 배정받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귀농자 창업자금 대출 자격확인서 접수순으로 대출실행
- 규정적용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자금용도 :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과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구입비에 한해 사용토록하여 초기 과잉투자에 의한 부실화를 방지토록 지도
 - 단, 농기계 구입자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영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하되 용자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농업기계화 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단, 가축입식자금은 지원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 단, 농지구입 및 농가주택 구입은 자부담임
- 대출금지급 : 대출금은 반드시 채무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붙임 4호서식)에 의거 채무자에게 지급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 영농자재구입비 등 운영자금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에 지출 예정인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음

마. 한도관리

- 시·군지부별 배정근거는 '99 귀농동향 및 자금집행실적에 따라 수시 배정

바. 사업계획의 변경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가 농업경영의 여건변동으로 부득이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붙임 10호 서식)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함
 -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사본을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귀농창업자금 수혜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용자금 지원 연도부터 용자금 상환 완료년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사업대상자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날 또는 최종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용자취급기관장의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자금이 사업계획외의 타용도 전·유용 등 용자금 회수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확인결과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시장·군수가 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 할 것을 통보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귀농창업 자금 수혜자에 대해 용자취급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 기술교육 및 컨설팅 실시

나. 귀농창업자금 수혜자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1)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다음사항의 용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붙임 제8호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가 지원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정상화 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정상 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창업자금 수혜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이 경우 본자금의 변칙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후 시장·군수간 귀농자의 영농정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천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이관·인수
 - 이 관 조 치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인 교체 :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증인이 교체될 때까지 전 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이전전 용자취급기관에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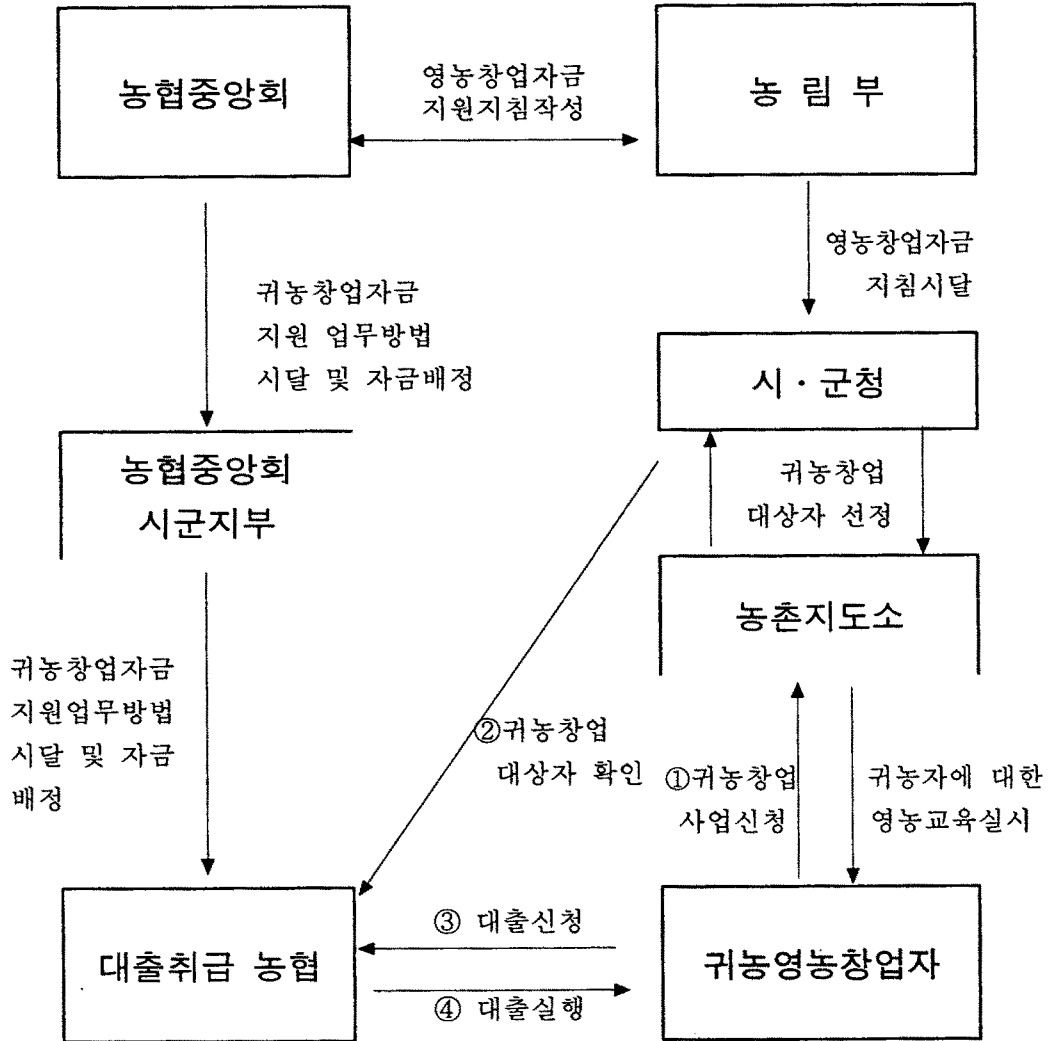
라. 귀농창업자금 수혜자의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귀농창업자금 수혜자가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이 경우 승계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사업승계 신청자는 『사업승계신청서』(붙임 11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청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승인 결과를 관계기관(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붙임 11호 서식)

마. 행정사항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분기 1회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전문영농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기영농정착을 유도하고
- 시장, 군수는 관내 귀농인력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인력 영농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동 협의회의 구성은 귀농담당 행정부서 관계관,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농·축협등 농업인 관련단체, 관할구역내 후계자대표 등 농업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교육 및 훈련, 영농기술지원 및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지도토록 함
- 각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 집행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필요시 시·군간 수시 전·수배를 실시하여 자금의 사장 방지
- 시·도지사는 자금집행 실태를 매월 15일 기준을 18일까지, 말일기준은 익월 3일까지 『시·군별 창업자금지원 추진실적』(붙임 12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는 본 보고실적에 따라 시·도별 예산 전·수배 및 자금배정

귀농자영농창업자금 대출취급 절차도



[붙임 2호 서식]

사업신청 및 계획서

가.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인)	연령	만 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동거가족	명(배우자,부,모,자녀 명)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나. 현재의 영농기반

구 분	농 지(평)			시 설		농 기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다. 사업계획

- 사업명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	규 모	투자계획(천원)			비 고
		합 계	융자지원금	자부담금	
계					

* 세부사업은 논, 밭, 농업시설, 농기계등 영농기반을 종류별로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라. 사업계획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평가의견

(이 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작성하므로 사업신청자는 기입하지 말 것)

* 평가의견은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붙임 3호 서식]

귀농창업자금 대출자격 확인서

1. 귀농자 인적사항

주 소	(우편번호)	전화 번호	자 택: 사업장 :
귀농자명	주민등록번호	전주소지 (전직장)	

2. 확인요청내용

영농 기반 현황	구 분	농 지(평)			시 설		농 기 계	
		계	논	밭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소 유 임 차 계	소 유							
	임 차							
	계							
교육 이수 내용	교육과정명					교육주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향후 영농 계획								
확인서 용도		귀농창업자금 용자 신청						

본인이 귀농한 영농창업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확인요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인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번호 :
4. 사업명 :
5.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총투자계획(A=B+C)	용 자(B)	자부담(C)	비 고

6.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D)	비율(D/A)
시설자금			
운영자금			
합 계			

*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실적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예정인 운영자금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사업실적을 확인하오니 여신관리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_____ 농협 귀중

[붙임 5호 서식]

신용조사 결과 통보서

(년 월 일 현재)

농림사업 신청자중 용자금액이 3천만원(귀농자 창업, 후계자와 쌀전업농은 2천만원)미만으로 일괄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 신용조사 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대출신청 금 액	대출자격 여 부	대출부적격사 유

주 1)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3일내에 작성 통보

2) 대출부적격사유는 다음 해당사유의 번호를 기입

- ① 금융기관 신용정보 불량거래자(장기연체 및 특수채권보유등)
- ②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자로서 신규대출 제한중인 자
- ③ 기타(사유를 상세히 기입)

2000 년 월 일

() 농업협동조합장(인)

_____ 귀하

영농 교육 이수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자는 다음의 영농 교육(기초, 전문기술교육, 귀농자
영농체험기술·경영교육등)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명 :
- 교육기간 :
- 교육내용 :

2000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기관장) ㉞

[붙임 7호 서식]

귀농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취소 의뢰서

- 1. 성 명 :
- 2. 주 소 :
- 3. 주민등록번호 :
- 4.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 5.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혼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을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상기인의 귀농자 창업자금지원 사업을 취소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조사·확인자 : ○○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시장·군수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상기인의 귀농자 창업자금지원 사업비를 회수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의뢰자 : 시장·군수 (인)

농협 귀중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붙임 9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변경내용 :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규 모		용자지원액		사 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인

[붙임 10호 서식]

사업승계 신청(승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승계사유(구체적으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당초대상자				승계예정자의 ()
승계예정자				당초대상자의 ()
사업승계로 인한사업계 획변경여부				

위와 같이 사업승계를 추진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위의 사실을 승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인

5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과장 허윤진, 사무관 김영준)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농·축협이 사업수익성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단계별 추진계획
 - '99년에 농·축협 각 1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 2000년에는 원예특작·축산분야에 대해 전국 확대 시행
 - 2001년 이후 전면적인 종합자금제도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2000.1.1시행)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2000년도 지원계획

	'99 사업비			2000 사업비			
	계	국고 용자	자담	계	국고 용자	농축협 용자	자담
합 계	백만원 21,400	15,000	6,400	백만원 277,143	162,000	32,000	83,143
원예특작	10,000	7,000	3,000	-	-	-	-
축 산	11,400	8,000	3,400	-	-	-	-

※ 원예특작과 축산으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 자담은 대출약정에서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자담을 30%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영농규모, 연령,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

※ 농업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1년이상)를 제출

2) 지원조건

- 원예특작·축산분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
 - ※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2000년에는 허용하지 않으나 시설·개보수자금을 종합자금으로 지원받은 후 종합자금 대출절차에 따른 대출약정을 통해 운영자금만을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가능함
- 지원조건 : 자부담비율은 대출약정에서 개별 사안별로 정함
 - 금 리 : 연리 5.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인삼 식재·시설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 자금용도 :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등(토지매입·임차자금은 지원제외.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지원 가능)
 - ※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한우, 착유우 모두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가축입식비 제외)
 - ※ 일회성 농자재로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예: 봉지, 포장상자 등 포장재, 반사필름 등)에는 운영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상한액 없음)

나.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대출취급기관

※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2)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대출취급기관의 소속부서(사무소)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출취급 승인을 얻은 지역농협·전문농협과 지역축협·업종축협

※ 대출취급승인을 얻은 지역농협·전문농협과 지역축협·업종축협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 중앙회 및 해당 농축협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사무소에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취급사무소」라는 표지를 부착

3)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과(02-503-7261)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축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전문 농협 및 지역·업종 축협에 신청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사후관리·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사업대상자 선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 농·축협은 사업자 선정전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종합자금융자협의회등을 통해 시·군과 협의(다만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우선 존중해야 함)
- 선정기준
 - 농축협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취급사무소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보(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협에 통보

3) 선정방법

-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 지침과 농·축협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농·축협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인허가등 행정사항 및 대상자 선정안에 대해 종합자금융자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침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협이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2000년 예산 : 국고·지방비 20억원, 자부담 50%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라. 자금대출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농림부훈령 제915호) 등 정책여신관련 규정과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마.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자금 중 용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소정보화사업으로 관리되거나 종축등록을 한 경우에만 인정)
 -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발급한 매매증명서를 첨부한 한우암소도 인정
- 자부담금의 검정·정산 여부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농·축협중앙회장이 정함
- 운영자금은 검정 및 정산 대상에서 제외

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목적 외의 용도. 이하 같음)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농정기관(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축협이 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농·축협은 개별 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거래 기록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연 2회 이상 영농상태 및 경영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및 추가지원에 반영

- 회계기록 및 경영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가지원시 우대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 합동으로 「사후관리점검반」을 구성, 반기별로 점검 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협 컨설팅 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의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추진
 - 경영기록 관련 교육·지도, 회계프로그램 보급, 사업계획수립과 관련된 조언·자문, 경영·기술진단과 처방 등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선택,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노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간에 정기적인 정보교류 및 지역내 적정 투자수요, 투자방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협의
- 시·군은 농·축협의 사후관리업무에 협조하는 한편 농·축협의 자금 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사후관리실태를 연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결과와 의견을 취급사무소에 통보하며 문제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보고주기별로 매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2000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2001. 3. 20까지

아.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농지법·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자.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운영체제도



6. 세부사업내용

- (*) 이 지침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① '99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 전업농 육성사업(원예특작)과 ② '98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5개 축종별경쟁력제고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경주마육성 제외)에서 지원하던 사업내용과 유기축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지원 가능
- (*) 농기계구입이 필요할 시 2000년에는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도록 유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체 사업의 일부로서 지원(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등 관련 사업이 종합자금제와는 별도로 존치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함)

원예·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채소·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등 시설장비
 - 선별기, 절화선별결속기, 저온수송차량등 기계장비
- 과 수
 - 과원조성(키낮은밀식사과원조성), 부직포, 비가림시설, 방조망설치 등
- 특 작
 - 버섯 : 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등
 - 차 : 제다시설 등
 - 잡업 : 병발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병수확기등), 양잠 산물가공기자재(건조기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시설자금 기준단가는 별표(시설기준단가)을 참고하되 지역여건등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단, 과수신규 식재지원은 키낮은밀식사과원에 한함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논에 비이외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 지양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농기계가격은 생산업체가 농림부에 신고한 형식별 가격기준을 적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대출취급승인을 받은 지역 및 전문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종합서비스금융팀 (02) 397-6535
 - 시·도지역본부 : 정책자금 담당과
 - 시·군지부 : 농업금융 담당과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짐승·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자,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우형기, 선별기,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유분석장비, 축산분뇨처리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지원 대상 기계·장비는 제외)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시설자금 기준단가는 별표(시설기준단가)을 참고하되 지역여건등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다.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대출취급승인을 받은 지역축협 및 업종축협
- 사업담당부서
 - 농 립 부 :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
 - 지역 및 업종축협 : 종합자금담당자

<별표>

시설기준단가참고자료

< 노지채소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지 원 기 준
<생산시설>				715	1.지원단가: 500백만원(표준사업비 715백만원의 70%)
발 정 지	ha	5	30	150	2.기타사업: 제시되지 아니한 생산·유통시설, 생력기계화장비 등
관수시설	ha	5	10	50	3.발정지,관수시설,반출도로개설 및 보수사업은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
반출로 개설 및 보수	km	2	90	180	아지거나 적어질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실제가격을 적용
비가림재배시설	ha	3	74	222	4.수송차량 등 기계류는 실구입 단가를 적용
육묘시설	개소	1	18	18	
수송차량	대	1	17(30)	17(30)	
방제기	대	1	5	5	
관리기	대	1	1.5	1.5	
기 타					

< 시설채소 및 화훼 >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생산시설> ○ 유리온실	평 1,500	천원 500	백만원 750	○ 기본시설(450천원/평) - 기초, 철골, 알루미늄피복, 천·측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비장치, 난방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 농가선택 사양(50천원/평) - CO ₂ 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기화냉각장치, 관리기, 운반차
○ 철골경질온실	1,500	310	465	○ 기본시설(272천원/평) - 기초, 철골, 알루미늄피복, 천측창개폐장치,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기, 집중컨트롤장치 ○ 농가선택 사양(38천원/평) - CO ₂ 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파이프비닐온실	1,500	123	185	○ 기본시설(90천원/평) - 골조, 피복, 지붕1.2중 및 측면개폐장치, 수평커튼장치, 집중컨트롤장치, 온풍난방기 ○ 농가선택 사양(23천원/평) - CO ₂ 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공정육묘장	1,500	667	1,000	○ 에너지 절감시설(10.4천원/평) - 지중가온시설 : 5.5천원/평 - 북측면반사필름 : 0.2천원/평 - 수막시설 : 4.7천원/평 ○ 육묘장(450천원/평) - 유라온실1,500평 ○ 부대기계장치(217천원/평) - 상토혼합기, 자동과중시스템, 운반대차, 발아실, 지게차, 자동설비관수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벤치시설, 베드, 자동이동라인
○ 양액재배시설★ (자루배지양액시설)	1,500 (1,500)	50 (23)	775 (345)	○ 고품배지경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 조직배양실	10	2,500	25	○ 블록조 또는 조립식건물, 항온·항습 설비 배양시설
○ 암반관정	1공	37,000	37	○ 1일채수량 200m' 이상
○ 소형관정	5공	700	3.5	○ 1일채수량 50m' 이상
○ 비상발전기△	1대	25,000	25	○ 철골은실1ha,파이프온실2ha이상집단화
○ 전기인입△	km	44,000	44	○ "
○ 변전시설△	셀	30,000	30	○ "
○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km	90,000	90	○ "
○ 벤치시설★	1,500평	70	105	○ 프레임 및 익스펜디드공장제작후 용융도금하여 설치
○ 보광시설*	1,500평	25	37.5	○ 전조재배시설
○ 심야전기이용*	1,000평	10	10	○ 축열식 전기보일러, 순환펌프, 배관파이프 온도감지
○ 수막시설*	1,500평	4.7	7	○ 파이프온실610평의 경우(관정미포함)
○ 지중난방시설*	1,500평	5.5	8.3	○ 파이프온실610평 시설적용
○ 보온커튼시설*	1,500평	18	27	○ 파이프온실 부직포,트로피칼 기준
○ 자동개폐시설*	1,500평	5.7	8.5	○ 파이프온실610평시설 적용
○ 퇴비 및 석회 검용살포기	1대	2,100/ 2,200	2.1/2.2	○ 트랙터부착형,적용트랙터22-36/39-50 ps,살포능률30~40분/10a
<유통시설>				
○ 예냉시설	50평	3,500	175	○ 중앙 흡입식 차압 예냉시설
○ 저온저장고 (화훼용)	50평	4,500 (2,500)	225 (125)	○ 구근류 등의 저장고 (기타 화훼류의 저장고)
○ 저온처리실	20평	1,100	22	○ 블록조 또는 조립식건물냉동,단열등
○ 집하장	100평	1,167	117	○ 콘크리트 블록조 건물
○ 선별처리장△	50평	500	25	○ 유리온실이상 건물면적의 1/10이상저온 저장고 건설가능
○ 선별기	1대	17,000	17	○ 전자식 또는 기계식
○ 절화선별결속기	2대	5,000	10	○ 선별,절단,결속장치 등
○ 저온수송차량	1대	15,000	15	○ 2.5톤이상 보냉 또는 냉장차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신모델온실> ○경량형 각관 경질필름형온실	평 900	천원 240	백만원 216	○기본시설(240천원/평) -독립기초,아연도각관,지붕/경질필름, 벽체/장기연질필름,차광용·보온용/2중 알미늄커튼,권취식측면알미늄커튼, 권취식측창개폐장치,방풍보호벽,온풍 난방기,LCP중앙집중제어 등
○경량형 각관 경질파판형온실	900	270	243	○기본시설(270천원/평) -독립기초,아연도각관,지붕/경질파판, 벽체/장기연질필름,차광용·보온용/2중 알미늄커튼,권취식알미늄측면커튼, 권취식측창개폐장치, 방풍보호벽, 온풍 난방기,LCP중앙집중제어 등
○경량형 각관 비닐온실	900	170	153	○기본시설(170천원/평) -독립기초,아연도각관,지붕/연질필름, 벽체/장기연질필름,이중커튼,권취식 측면커튼,권취식측창개폐장치,방풍 보호벽,온풍난방기,LCP중앙집중제어 등
○단동생력화 온실	150×6	40	36	○기본시설(40천원/평) -골조(Ø25mm×1.5t),연질외피복, 내부터널,천창환기구(굴뚝형환기창), 권취식측창개폐기,생력화장비(모노 레일,파워라인,전동식무빙헤드),부착 작업기(운반기,보온덮개개폐장치), 자동관수분배기,지중가온장치,무인방 제장치(초미립자방제기)등

주]*표시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표시는 인센티브사업,★표시는 신규 또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임

< 과 실 >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200평 /1동	백만원 2.5	백만원 500	법인경영체, 생산자단체 공동이용시설로 지원 ○건평 100-200평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50평까지 가능하나 농협시·도지역본부장 확인서 첨부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컴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 이상 ○에어커튼 설치 ○응축기 : 컴프레서와 동일 마력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1식(시간당 20ℓ 이상) ○메인닥트 : 1식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 ※ 건축에 관한사항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음
선 과 장	150평/1 동	200	200	○건평 150평 규모 - 제함기, 테이핑기, 밴딩기, 전자저울각 1대 -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콘베어 각 1식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는 50평까지 가능하나 농협시·도지역본부장 확인서 첨부 ○선과기 : 3조식 1대 기준(선과능력 : 3만개/시간)으로 설치하되 선과물량을 감안 하여 1조식이나 2조식으로도 조정가능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기계시설만 설치가능 ○단가는 실구입 가격적용
집 하 장	200평	1.0	200	○건평 100~200평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는 50평까지 가능하나 농협시·도지역본부장 확인서 첨부 ○표준설계도 참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6-209호 : '96. 7)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공동퇴비장	200평	1.7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 200평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는 100평까지 가능 하나 농협시·도지역본부장 확인서 첨부 ○ 발효조 시설 : 년산 2,500톤 기준 ○ 제품보관 및 관리시설 : 1조 ○ 혼합기 및 스키드로다 : 각 1대 ○ 톱밥 및 왕겨분쇄기 : 1대 ○ 콘베어 시스템 : 1조 ○ 원료투입기 : 1대 ○ 자동포장기 : 1대
수송차량	1대	10	10	○ 차종별 실구입가격 적용
지게차	1대	15	15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콘베어	1대	10	10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파레트	400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규격별 실구입가격 적용 (개별경영체도 지원 가능)
키넛은사과원조성	1ha	36	36	○ 기반정비, 토양개량, 관·배수시설, 관정, 묘목, 지주설치등
품종갱신	1ha	4~10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갱신 유형에 따라 사업비 지원 - 동일과종 우량 신품종 개식(묘목비+식재비) - 동일과종 우량 신품종 고접갱신(접목 개수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수분수 부족포장 수분수 확보 : 주품종의 15%~20%
배수시설	1ha	3~4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 ○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관정	1공	3~5	3~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ha	2~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수동, 자동) 설치가격 적용 ○ 점적관비 1식, 액비혼합기 1식
다목적 스프링클러	1ha	4~8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식 : 노즐 및 노즐대 1식, 펌프식파이프시설 1식 ○ 상하이동식 : 탱크용량 3톤 이상, 상하 이동거리 80-250cm
모노레일	1ha	10~18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 : 30° 이상 ○ 등판능력 : 250kg 이상/1회
과원내운반차량	1대	1~8	1~8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가지절단기	1대	1~2	1~2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부직포	1ha	3	3	○ 부직포 구입비
덕시설	1ha	4~20	4~20	○ 유형별 실설치가격 기준
비가림시설	1ha	8~130	8~130	○ 유형별(하우스형, 간이형) 실제설치가격 기준
서리방제시설	1ha	10~28	10~28	○ 쉘 10개이상/ha, 온도감지장치 및 자동콘트롤설비, 실제 설치가격 기준
인공수분기	1조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약파기, 화분정선기 등 5종 1조 기준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방조망	1조	23~30	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 피복 등 실제 설치가격 적용 ※ 농촌진흥청 '98과수방조망시설 설계서 참조

<사과대표 생산사업>

(재식거리 : 1.0×0.4m, 25,000주/1ha 기준)

비 용	세부항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100,000,000원		
재 료 비	유기질비료	6,300,000	1,000포×6,300원	혼합유박15kg
	석회비료	750,000	500포×1,500원	소석회20kg
	복합비료	2,940,000	200포×2년×7,350원	과수용복비20kg
	농 약	2,240,000	14회×18통×20,000원	2년간 14회살포
	촉지발생제	1,800,000	4회×3병×150,000원	포미나
	지 주	10,000,000	25,000주×400원	대나무 등
자근대목		37,500,000	25,000주×1,500원	왜화성 대목
관수시설		10,000,000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토지임차료		18,000,000	3,000평×2년×3,000원	
소농기구		1,000,000		소농기구구입비
수리비,기타		1,000,000		농기계수리, 부품교체 등
고용노력비	소 계	8,470,000		
	경운정지	150,000	3일×50,000원	트랙터, 남자
	대목재식	1,500,000	2명×3일×50,000원 8명×5일×30,000원	남 2, 여 8
	병해충방제	1,120,000	7회×2년×50,000원 7회×2년×30,000원	남 1 여 1
	제 초	2,760,000	3회×2일×10명×30,000원 3회×2일×2년×80,000원	김매기(1년차) 약제살포(남1,여1)
	굴 취	2,940,000	3명×7일×50,000원 9명×7일×30,000원	남 3, 여 9

□ 대목의 종류 및 규격

○ 계통이 확실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M9 등 왜화성이 높은 자근대목

- 자근대목 기준 : 지제부 10cm부위의 굵기가 0.6cm이상되고, 뿌리는 길이 10cm 이상의 부정근이 아닌 충실한 뿌리 10개이상

※ 자근대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 묘목규격

○ 2년양성묘로 접목부위로부터 10cm위의 굵기가 1.3cm이상되고, 잘 발달된 측지가 5개이상되어야 함.

<특작>

세부사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p>○ 버 섯</p> <p>-첨단재배시설</p>	<p>1개소 (150평/동)</p>	<p>백만원 200</p>	<p>백만원 200</p>	<p>○ 건축물(전기,수도,실험실,무균실등 부대 시설 포함)</p> <p>○ 기기(툰밥제조기,툰밥채,혼합기,콘베어,입병기, 고압살균기,자동접종기,균긋기,억제기, 탈병기,가습기,냉동기,온습도 자동제어 장치,진공포장기 등)</p>
<p>-균상재배시설</p>	<p>3개소 (35평/동)</p>	<p>15</p>	<p>45</p>	<p>○ 건축물(전기,수도,난방,온습도조절 시설등 부대시설 포함)</p>
<p>○ 생 약</p> <p>-조제시설</p>	<p>1개소 (100평/동)</p>	<p>200</p>	<p>200</p>	<p>○ 건축물(전기,수도 등 부대시설 포함)</p> <p>○ 기기(선별기, 탈퇴기, 세척기, 탈수이동콘베어, 절단기, 건조기, 상승콘베어, 자동포장기 지게차 등)</p>
<p>○ 차</p> <p>-제다시설</p>	<p>1개소 (50평/동)</p>	<p>2096</p>	<p>2096</p>	<p>○ 건축물(전기,수도 등 부대시설 포함)</p> <p>○ 기기[급엽기, 증기 냉각기, 증엽기(증엽콘베어, 증엽투입, 증엽개량), 조유기, 유념기, 증유기, 건조기, 포장기 등]</p> <p>○ 저온저장고 30평 1동</p>

<인삼>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산출근거
			천원	천원	
계				932,960	
◇인삼(기준면적:40ha)					
□ 인삼식재	개소	40ha	20,000	800,000	○ 10a당 식재년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2,000천원 적용
□ 시설기자재현대화	ha		92,390	132,960	
○ 우량묘삼생산	"	2	40,570	81,140	○ 묘삼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소독대 등
○ 재배시설개선	"	1	10,230	10,230	○ 4각백관 및 코팅지주목 등 신소재 자재
○ 토양개량	"	1	3,080	3,080	○ 인삼전용거름, 작물종자 등
○ 도난경보시설	"	1	5,130	5,130	○ 고압경보기, 싸이렌, 적외선 감지방식 등
○ 관수시설	"	1	7,420	7,420	○ 경질호스, 점적호스 등
○ 전용농기계					
- 다목적운반차량	대	1	6,760	6,760	SC-신형
- 작반기	"	1	1,470	1,470	'96-110DHB
- 수화기	"	1	5,440	5,440	GH-1300T, DR-1300S
- 이식기	"	1	3,090	3,090	GP-9000, SN-940
- 관리기	"	1	1,750	1,750	AMC-880S
- 작반정지기	"	1	590	590	BR-900
- 해가림설치기	"	1	2,760	2,760	GC-600
- 해가림철거기	"	1	980	980	SR-600
- 고랑제초기	"	1	150	150	RW-900
- 묘포상광설치기	"	1	560	560	HR-850
- 인삼파종기	"	1	2,410	2,410	GS-900

※ 1개소당 지원단가 680백만원(표준사업비 932,960의 73% 수준적용)

※ 우량농기자재 사용

- 지원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 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구입

< 잠업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뽕밭 조성	1ha	21.0	21.0	묘목대, 식재비
관 정	1	3.5	3.5	
뽕수확기	1	4	4	안장식
절 단 기	1	0.5	0.5	
관 리 기	1	2.0	2.0	대동, 동양
애누에잠실	1동/30평	18.0	18.0	
간이잠실	6동/20평	3.0	18.0	
냉·온풍기	1	2.5	2.5	만도, 삼성, LG
예 취 기	1	0.3	0.3	계양, LG
건 조 기	1	3.5	3.5	국제, 신홍
분쇄기	1	3	3	
잔가지파쇄기	1	3	3	한양, 안장식
저온저장고	1동(3평)	5	5	한양, 삼원냉열
자동온풍기	1	1.5	1.5	한양
에어콘(냉방)	1	1.5	1.5	
누에환제조기	1세트	5	5	반죽기, 장환기, 제환기, 당위기
백 년 쉼	20조	0.06	1.2	한양
상 족 망	10조	0.07	0.7	잠원사
포 장 기	1	2	2	
자동소독기	1	1.5	1.5	세기
견면채취기	1	1.0	1.0	한양

< 원예특작분야 기준단가 적용시 유의사항 >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및 예냉시설 단가(표준설계도 참조)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 세부사업별 사업량, 규모, 시설등은 예시기준이므로 지역실정이나 사업자의 사업 신청물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에는 대출취급사무소의 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단,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공동퇴비장의 규모는 지원기준 적용)
 - 조정시에는 위 단가기준을 참고하고 실제비용을 감안하되,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함
 - 대출건별 보고는 하지 않되 반기별로 업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단가조정 의견을 제출
 - 이 지침에서 제시한 시설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선택 설치. 규모의 증감 및 제시한 시설 이외의 시설도 설치 가능하되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규모 및 적정단가 제시
 -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
- 건설교통부 승인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설계단가 적용

< 축산분야 >

사 업 별		지 원 단 가
기 반	진입로개설	Km당 100백만원(노폭4m, 포장3m)
	목로개설	Km당 45백만원(노폭4m)
시 설	용수개발	공당 30백만원
	전기시설	Km당 5,500천원
사 육 시 설	축 사	한우사 : 평당 420천원 유우사 : 평당 700천원 돈 사 : 평당 820천원 산란계사 : 평당 650천원 육계사 : 평당 360천원 기타가축 : 실비적용
	유기축산시설	실비 적용
	창 고	평당 300천원
	관리사	평당 300천원
	운동장비가림시설	평당 100천원
	수리, 개보수	신축비용의 80% 이내
관리용기계기구장비		실비 적용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의 구입비		전년도 전국 평균 거래가격의 50%

○ 단가기준(VAT포함)

- 세부사업별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이므로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성격(무창돈사, 무창계사 등)에 따라 지역·업종축협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 조정시에는 위 단가기준을 참고하고 실제비용을 감안하되,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함
 - 대출건별 보고는 하지 않되 반기별로 업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단가조정 의견을 제출
 - 이 지침에서 제시한 시설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선택 설치. 규모의 증감 및 제시한 시설 이외의 시설도 설치 가능하되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규모 및 적정단가 제시
 -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
- 전력인입은 한전실비적용, 사육장비는 조달청구매단가 또는 최근 물가정보기준가격을 적용하되 실제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서식1호>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대상자 선정결과

(2000. . 현재, 취급사무소명)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농장명)	대표자 (연령)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총사업비		
			품목 (축종)	사업 규모	중점추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종료 일자		계	용자	자부담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	(-)									
합 계		개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계			
								지원누계			

우리 사무소의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드리니, 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시장(군수) 귀하

- (주) 1. 사업추진개요 : 종합자금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중점추진내용 : 종합자금 사업내용중 대상자의 중점추진 사항을 기재
 3. 지원누계 : 종합자금 대출잔액을 기재. 신규 지원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4. 통보시기 : 취급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변경 포함)시 수시 통보

<서식2호>

지역별 종합자금 융자지원현황

(기간)

(단위 : 백만원)

지 역			융자금지원		용 도 별			채권보전형태별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건수	금액	시설	개보수	운영	신용대출	자산담보	보증서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 율	100.0	100.0						

- (주) 1. 대출취급기관은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 시·군에 통보하며, 각 계통사무소는 이를 해당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2. 통보주기 : 월별, 분기별

<서식3호>

품목(축종)별 종합자금 용자지원현황

(기간)

(단위 : 백만원)

지 역	품목(축종)	용자금지원		경 영 형 태 별				자 금 용 도 별		
		건수	금액	개 인		법 인		시설	개보수	운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전 국 합 계										
비 율		100.0	100.0							

- (주) 1. 대출취급기관은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하고 시설과 노지를 추가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 과실·화훼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3. 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 한우, 돼지는 '비육', '번식'으로, 닭은 '육계', '산란계'로 구분
 -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4. 보고주기 : 월별, 분기별, 년별

<서식4호>

지역별 사업비투입내역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업비합계				자부담				용자지원			
시·도	시·군	취 급 사무소	계	시설	개보수	운영	계	시설	개보수	운영	계	시설	개보수	운영
		소계(1)												
		비율	A	A1	A2	A3	B	B1	B2	B3	C	C1	C2	C3
		소계(n)												
		비율												
		⋮	⋮				⋮				⋮			
		⋮	⋮				⋮				⋮			
		⋮	⋮				⋮				⋮			
		사·도·소계 (1+⋯+n)												
		비율												
		⋮	⋮				⋮				⋮			
		⋮	⋮				⋮				⋮			
		전국합계												
		비율												

- (주) 1. 대출취급기관은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2.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100\%$, $B=B1+B2+B3$, $C=C1+C2+C3$
 3. 보고주기 : 월별, 분기별, 년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5호>

품목별 사업비 투입내역

품목 (축종)	사업비합계				자부담(백만원)				용자지원(백만원)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계 (비율)	시설	개보수	운영
	A	A1	A2	A3	B	B1	B2	B3	C	C1	C2	C3
합 계												

- (주) 1.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2. 축종 : 한우, 젓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3. 대출취급기관은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4.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100\%$, $B=B1+B2+B3$, $C=C1+C2+C3$
 5. 보고주기 : 월별, 분기별, 년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종합자금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 목 종 중	성 명 (법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미 집 행
		세 부 사 업 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계	용 자	자 부 담	계	용 자	자 부 담				
합계					%										

-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율,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
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
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
6.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서식7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0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방문 전화, 서면	
주 소				전 화		
종 사 분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영 농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록 방 법	부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여액)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회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설
		기타융자			자	금
		자부담			개	수
		합 계			보	금
					운	영
					자	금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 담 자 의 견						
상 담 후 조치사항						

-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서식7-1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 02-500-2654~5, 503-7294) 입니다.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기 지원중인 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 거

- '89. 4. 28,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

4. 년도별 지원실적(정산기준)

구 분	'90~'92	'93~'96	'97	'98	'99예산	2000(P)
사업량 (명)	624,447	405,383	95,148	87,432	92,000	84,000
사업비 (백만원)	148,038	172,113	50,663	47,746	59,248	50,232
- 국 비	148,038	56,549	15,187	14,311	17,774	15,070
- 지방비	-	115,564	35,476	33,435	41,474	35,162

* '90~'92 전액 국비, '93~'96 국비 1/3, 지방비 2/3, '97이후 국비 30%, 지방비 7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내용설명

- ①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란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생의 부모가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②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란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남이하인 호주(세대주)가 동생을 보호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③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지원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3) 실업계고등학교의 종류와 범위

실업계고등학교라 함은 농업·임업·공업·상업·수산·해양·실업·종합 고등학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함

- 농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임업고등학교 : 임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실업고등학교 : 농업,임업,공업,상업,수산,해양,가정계중 2개이상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교 또는 가정계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종합고등학교 : 실업계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된 학교
 ※ 종합고교의 경우 실업계학생만 지원

4)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 < 별표 > 참조

5)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 같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장학금」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나. 2000년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명	백만원			
84,000	50,232	15,070	35,162	1인당 평균지원단가 598천원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구비 35%)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 【 (02) 500-2654~5 】
- 시·도 : 농업정책과(농정과)
- 시·군·구 : 농업정책과(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참조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 농업인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2월말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같은)
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요망
 -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1월15일까지 조회 [별지 제2호 서식]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주여부는 특별히 확인요망)
 -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후 지원대상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 * 재학확인 통보기일 : 년초에는 1. 20까지, 기타는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내에 소요액 신청
 - 1·2분기(2월10일), 3분기(6월10일), 4분기(9월10일)
- 시장·군수·구청장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0일(1·2분기), 6월15일(3분기), 9월15일(4분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 : 시·군·구 자료 취합후 2월28일(1·2분기), 6월20일(3분기), 9월20일(4분기)까지 농림부에 학생수 및 소요예산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학자금에 대한 총사업비중 국비부담금을 시·도에 배정 → 시·도에서는 시·도부담금을 합하여 시·군·구에 배정 → 시·군·구는 시·군·구의 부담금을 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정 또는 집행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 '99년말에 학자금 지원신청을 누락하여 2000년도중에 추가신청할 경우 '99년말을 기준으로 한 거주확인, 지원대상 여부, 재학사실 등을 모두 소급하여 확인한 이후 소급지원 가능
(단, 당해 회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소급지원)

○ 학자금지원 홍보

-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 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익년도 3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 보고
 - 시·도지사 :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국고잔액 반납 : 정산보고후 연말까지 아래구좌로 납입 및 영수증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1 : 농업인 자녀학자금 반납금)

<행정사항>

○ 업무별 · 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 (이장경유)	→12.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1.2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	→1.31			
- 1/4, 2/4분기 국비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2.10	→2.20	→2.28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6.5			
- 3/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6.10	→6.15	→6.20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9.5			
- 4/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9.10	→9.15	→9.20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12.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2월말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	→2월말		
○ 학자금 정산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3.15	→3.31
○ 보조금예산 통지	장 관				10.15←	——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장 관		11.30←	11.25←	11.20←	——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 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 별표 >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인 및 연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젖소,사슴 : 30마리미만 ○ 돼지,개 : 200마리미만 ○ 산양,면양 : 300마리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 5,000마리미만 ○ 가금 : 10,000마리미만 ○ 양봉 : 150군미만 ○ 기타위에 준하는 양축인 및 연간 9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소유규모 260,000㎡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임업인 및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15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업인 및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7,000㎡ 소유, 소 25마리 및 돼지 1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 >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 같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장학금」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생에 대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다른 가족(학생본인 포함)이 직장 등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 화				
· 신 청 내 용	성 명		학생과의		행 정 기 관 확 인 내 용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관 계			녹지지역·		
	영농(어) 규모					개발제한		
	영농(어) 일수					구역 확인		
	학생 성명		학 생			공부(公簿)	경지	m'
	학 교 명		생 년월일			확인내용	임야	m'
	학 년		학 과 명				가축	두
학 교 주 소		학 교			어선	M/T		
		우 편번호			재학조회			
					발 송 일			
					보 호 자			
					통 보일자			
<p>※ 시지역인 경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여부 필히 확인요망</p> <p style="text-align: center;">2000 년 월 일</p> <p>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p> <p>확 인 : 이·통장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읍·면·동장 귀하</p>								
<p>※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p>								
신 청 인		이 · 통 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확 인		접 수				
				검 토		재학확인		
				확 정				
지원여부 통보								

(민원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학교명 :									
학생명	보호자 성명	학 과	학년 반	학교재학 확인(학적변동 및 학과를 기재)					
				학년초	1/4	2/4	3/4	4/4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학교 기재사항	금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명					
				구좌번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 학교재학 확인란(학교에서 작성) 기재요령 ○ 작성기준일 : 매 분기말(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 학과, 날짜 기재 - 전입시 : 이전 학교명, 학과, 날짜 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농업인 자녀학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국비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4호 서식]

(총 공통 - 9)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명	천원	명	원	명	원	명	원
면지역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읍지역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시지역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합 계	국 비	-		-		-		-	
	지방비	-		-		-		-	
	소 계							-	-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읍·면·동에 배정된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요망
 5.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6. 잔액 과다발생 또는 국고부담비율을 3%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별지 또는 하단에 사유를 작성·제출

(보고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심재천, 행정사무관 남태헌)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
- 컨설팅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강화하고 농가의 컨설팅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적 시장기구에 의한 컨설팅 추진(소프트웨어적 공공투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수요 및 민간컨설팅기관의 공급능력이 취약함을 감안, 2000년도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컨설팅필요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이하 컨설팅기관·업체)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기관(농림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등)은 계약의 알선과 적정화, 계약이행여부 감독, 정보제공 및 제도정비에 주력
- 지원대상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 및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유통체계와 사업관리체계를 정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지원사업 관련정보를 집중시켜 사업 참가자의 정보활용도 제고
-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 실시
 - 컨설턴트 역량제고 및 컨설팅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	2000	2001~2004
사업량(개소)	400	400	-
·법인경영체	200	200	-
·개별농가	200	200	-
사업비(백만원)	2,800	4,000	-
·국고보조	840	1,200	-
·지방비보조	560	800	-
·자부담	1,400	2,000	-

(*) 사업량은 수요·공급자간의 실제계약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 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사업이 조기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
- 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희망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및 개별농가)에 대해 컨설팅료 일부를 지원,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실행토록 함

(2) 지원대상 :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로서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영체

※ 둘이상의 개별농업경영체는 공동의 계약주체로서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컨설팅비용 지원 : 1경영체당 평균 10백만원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 사업비한도 : 법인 - 3백 ~ 14백만원

개별농가 - 2백~7백만원

※ 계약금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계약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효일이 2000.12.31이내인 경우 2001년까지 지원도 가능

(4) 지원내역

○ 지원대상경영체에 대해 사업비한도내에서 컨설팅료의 50% 지원(1~7백만원까지 정부지원)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대상컨설팅은 [별표2]에 예시된 바에 따르며 [별표2] 이외의 컨설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통보

나. 2000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농업경영컨설팅 지 원 사 업	개소 400	백만원 4,000	1,200	800	2,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사업 추진 관련 자문, 사업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시·도 농정담당공무원, 지도계통 전문가, 농업계대학 교수·연구자, 선도농가, 농업·비농업분야의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 자문 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농업여건, 컨설팅가능 기관·업체의 존재 여부 등을 감안, 원예·특작·축산 분야중 세부사업분야를 지정하며, 이 사항을 포함하여 컨설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지침 제정 가능(자체지침 제정시 농림부에 통보)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전화 : 02-503-7216, FAX : 02-503-7217)
- 시·도 : 농정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담당부서 혹은 농업기술센터

다.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1)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원예·특작분야 혹은 축산 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
 - ※ 둘이상의 개별농업경영체도 공동의 계약주체로서 지원가능
- 시·도 및 시·군단위 정보화교육기관(사설기관포함),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등의 농업정보화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경영체로서 신청시점 현재 농림수산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이거나 활용 의사가 있는 경영체
 - ※ AFFIS, 인터넷, 기타 상용서비스 가입·사용자로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이 갖추어진 농업인은 정보/통신서비스회사가 발행하는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사용실적을 증빙하는 문서(가입일시, 접속회수, 사용시간 등을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정보화교육 이수에 갈음할 수 있음

2) 선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 지원대상경영체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로서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 종합컨설팅(별표2 참조)을 받고자 하는 경영체
- 지원 신청 시점 현재 인터넷계정이 있거나 농림수산정보망 회원인 경영체
 - 농림수산정보망회원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1시간 이상 사용실적이 있어야 함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부실화 우려나 운영상 애로가 있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영체
-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

3) 선정절차

- 시·도별 지원대상경영체수 확정 : 농림부
 -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별 경영체수를 감안,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시·도의 계약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구별 지원대상경영체수 확정 : 시·도지사
- 지원대상경영체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경영체 중 컨설팅희망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천 가능
 - 컨설팅 희망경영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선정요건 및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시·군에 배정된 지원대상경영체수의 2배수를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추천(추천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을 경우 동순위로 표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 관할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
- 지원대상경영체 확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한 경영체에 대해 본 지침 및 시·도 지침이 정하는 선정요건 및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경영체 확정후 농림부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자문위원회(또는 농정심)에 사후 집계 보고
 - 시·도지사는 추천받은 경영체 전체에 대해 순위를 매기며 계약체결 이전에 선순위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대체선정
 - 일단 지원대상경영체로 선정된 연후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컨설팅기관·업체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컨설팅공급기관·업체 지정

1) 지정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농업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고용계약이나 법인설립에 의해 전문인력을 4인 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대학 포함 - 이하 '기관'이란 대학을 포함함)·업체 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팀
 - 기관·업체에는 그 부속기관도 포함. 다만, 계약의 이행책임은 당해 기관·업체에 귀속되며 이를 계약에 명시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컨설팅기관·업체
- 컨설팅기관·업체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그룹을 확보해야 함
 - 1) 내부 전문인력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포함
 - 2) 「별표2」에서 분류한 컨설팅 서비스분야 중 내부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는 각 2인 이상의 외부 인력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컨설팅기관·업체 (전문가팀은 대표컨설턴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함)
- ※ '전문인력' : 법령상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 기관·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 해당 분야 기관·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자
(시설원예온실의 경우 3년 이상의 생산온실 현장경험 포함)
 - 선도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 1개 컨설팅기관·업체는 1개 시·도내에서 종합컨설팅계약 혹은 생산관리를 포함한 부분컨설팅계약을 4건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음(종합컨설팅, 부분컨설팅의 정의는 별표2 참조)
 - 다만, 해당 컨설팅공급자의 보유인력을 감안하여 공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물량 수주로 컨설팅부실화가 우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적용
- ※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의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전문가그룹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1인은 1개 기관·업체를 포함, 3개 그룹까지만 참여 가능

2) 지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최근 2년 이내에 유료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의 경우 컨설턴트 개인의 최근 2년 이내 컨설팅계약실적을 전문가팀의 계약실적으로 할 수 있음)
 - 컨설팅계약건수와 컨설팅계약액 총액 및 컨설팅 성과를 상호 비교 평가
 - 연구용역,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은 유료컨설팅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컨설팅 가능분야 시설·장비 보유현황이 우수한 컨설팅기관·업체
- 컨설팅 가능분야 보유인력 및 외부전문가그룹이 충실한 컨설팅기관·업체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의 전자우편, 게시판, DB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중인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지원대상경영체가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등을 고려, 지정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가능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에 있어 지역제한은 두지 않음

3) 지정절차

- '99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서 계약 1건 이상 수주업체는 변경 사항만 신고하고 재지정절차 생략(컨설팅 공급자 지정 신청서[별지서식]는 제출)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과 지정우선순위에 따라 컨설팅기관·업체를 10~20개소 지정
 - 시·도지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동위원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컨설팅기관·업체를 지정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시·도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개 미만이거나, 가용 예산에 의한 농가추가선정시 컨설팅 가능한 기관·업체가 1개소 이하인 경우 지역농정시책이나 지원대상경영체의 컨설팅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업체 등을 직권으로 추가 지정
 - 지원대상경영체에 컨설팅기관·업체에 대한 상세한 참고자료·소개문을 서신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 게시 하는 한편 지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도지사는 지정심사시 지역농업시책이나 농가수요를 감안, [회계·재무], [원예], [특작] 분야 등을 구분하여 기관·업체를 심사할 수 있음

4) 컨설턴트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상세내용 별도차침 시달 예정

라. 사업시행

(1) 계약체결 유도 및 지원금액 결정

○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

- 참가대상 : 선정·지정된 지원대상경영체 및 컨설팅기관·업체 대표
- 지원대상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가 일시·장소를 정하여 1회 이상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는 컨설팅기관·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소개자료, 계약서 실례등과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경영관련기록을 계약 쌍방에게 교부,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계약 적정화 유도

○ 계약체결협의 : 지원대상경영체 및 컨설팅기관·업체

- 지원대상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 체결 협의를 거쳐 가계약서 작성후 컨설팅기관·업체가 이를 즉시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별표3]

○ 지원금액 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기관·업체로부터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경영체의 성격,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계약쌍방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사업취소 사유를 컨설팅기관·업체와 컨설팅대상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계약의 효력은 시·도지사의 지원금액 결정·통보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생함

○ 사업비 지급방법

-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기관·업체에 직접 지급
(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함)

(2) 지원대상경영체 추가선정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완료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기작성된 우선순위안에 따르거나 새로이 신청을 받아 연중 수시로 컨설팅계약체결을 알선
 - 이 경우 추진절차는 본지침을 준용하되 사업시행절차 중 게시·공고 및 신청·추천절차를 생략하고 설명회 대신 당해 경영체가 희망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기관·업체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송하는 등 시·도 사업여건에 맞게 수정 시행 가능

(3)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1) 계약의 무효

-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2) 계약의 해지

- 컨설팅기관·업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경영체와 타컨설팅업체를 알선
 - 대체계약의 체결은 연중 가능(다만, 지원금액결정일 및 계약발효일이 2000.12.31 이내여야 함)
 -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는 실비의 범위에 따르며 그 부담은 계약금액, 지원금액결정시 책정된 사업비한도 및 지원조건을 감안, 비례적으로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안내함(이하 실비를 제외한 자금회수를 규정한 경우 동일 내용 적용)
- 지원대상경영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3) 계약의 변경

- 계약서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라야 함
 - 중요계약사항변경 : 계약금액, 컨설팅서비스 내용 및 컨설팅의 기대 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계약에 청해진 컨설팅팀의 구성 변경(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컨설팅팀 참가인원을 늘이는 계약변경은 제외),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서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계약변경이유서(서식자유, 계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즉시 보고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지급
- 사업비는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나누어 지급
 -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비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50%씩 균분하여 집행가능

<예시> 계약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고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30%, 30%, 40%이며, 계약금액 36백만원, 인정사업비가 10백만원인 경우

계약금액 지급	기간1(30%)	기간2(30%)	기간3(40%)
초과액 26백만원	자부담 7.8백만원	자부담 6.8백만원	자부담 11.4백만원
사업비 10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보조금 2백만원	보조금 3백만원
사업비 집행	기간1(30%)	기간2(40%)	기간3(30%)

-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름
 - 계약금 : 경영현황기술서 제출후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 잔 금 : 컨설팅결과보고서(혹은 컨설팅결과요약보고)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 ※ 컨설팅결과요약보고(별지서식 7-3)와 컨설팅결과보고서는 계약기간 종료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확인후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계약의 이행 촉구
-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컨설팅지원사업의 목적 이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상세한 것은 '사후관리'항목 참조)

○ 보조금 교부신청

- 컨설팅기관·업체는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또는 컨설팅결과요약보고) 제출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5) 추진일정(별표4 참조)

○ 본지침 및 시·도지침의 게시·공고 및 사업참가신청 : 2000.2.15까지

- 농림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달 이상 게시·공고하되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도 게시·공고
- 컨설팅기관·업체에 대한 지침 및 안내문 발송은 농림부가 담당
- 신청서 제출기관
 - 컨설팅희망경영체 : 시·군
 - 컨설팅기관·업체 : 시·도청
- 제출서류
 - 컨설팅기관·업체와 컨설팅대상경영체는 다음 서류를 선정 또는 지정 신청시 각각 시·도청, 시·군에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추천시 관련 신청서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이송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컨설팅기관·업체	•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공급자지정신청서 1부 등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소개자료	별지서식1,1-1,1-2,1-3 및 첨부서류 신청자 희망에 따라 제출
• 컨설팅희망경영체	• 농업경영컨설팅신청서 1부	별지서식2 및 첨부서류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설명회시 지원대상경영체에 공개

- 1) 당해 기관·업체 등의 일반현황(전문인력, 협조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포함)
- 2) 제공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가급적 상세히)
- 3) 기존 컨설팅실적 및 효과(계약서 사본 포함)
- 4)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 5)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제공계획

○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 연중수시신청

- 시장·군수는 신청접수후 2주 이내 자체심사(심사결과는 별지서식3-1을 활용)를 거쳐 컨설팅대상 경영체 추천대상자 확정 및 시·도 보고
- 시·도는 시·군의 추천후 2주 이내 자체심사(심사결과는 별지서식 3-2를 활용) 및 자문위원회(또는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 2000.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신청접수 후 4주 이내 자체 심사(심사결과는 별지서식3-3을 활용) 및 자문위원회(또는 사·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30개소의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 계약체결절차 : 연중수시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기관·업체 지정후 2주 이내 (각도 자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에 컨설팅지원사업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간의 계약서 검토 후 4주 이내에 지원금액결정
- (* 계약의 효력 발생후 사업개시
- (* 시·도지사는 지원금액결정후 계약체결상황을 즉시 농림부에 보고

※ 이상의 추진일정은 각시·도의 사업추진준비 및 여건에 따라 수정 시행 가능

- (6) 농업경영종합자금 신청 혹은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신청시 우선 지원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 시·도지사

-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시 시·도지사는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실시후 농림부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 보고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대상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내용과 기대효과를 컨설팅기관·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컨설팅계약기간중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며, 계약기간 종료후 2년 동안 지원대상경영체의 경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컨설팅팀을 중심으로 각 분야 컨설팅전문가를 위촉, 컨설팅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컨설팅계약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감독
 - 컨설팅대상농가별 전담관리 병행

(2)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기관·업체는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체제 구축(농림수산정보센터와 협의)
-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부와 각도,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 간에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컨설팅지원반 편성(농림수산정보센터 전화 : 02-589-2041)

- 농림수산정보센터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업정보교육원 경영정보화교육이수확인서 및 이용실적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경영체의 농림수산정보망 이용 실적을 농림부와 각시·도지사에게 계약발효후 매월 10일까지 보고
- 농림부는 경영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지원대상경영체가 경영정보화교육을 이수하기를 원할 경우 농림수산정보센터의 협조를 얻어 정규 또는 특별 교육과정 마련(자부담 20~25%)

(3)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는 계약 발효 즉시 쌍방 협조하에 해당 경영체의 경영현황을 조사, 계약쌍방이 서명날인한 경영현황기술서(별지서식 7-1)를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농업용자산보유현황, 최근3년간 자산/부채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 경영개선목표, 농업경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계량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컨설팅일지(별지서식 6-1, 6-2)를 기록
 - 시·도지사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별지서식7-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컨설팅기관·업체는 계약기간종료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요약보고(별지서식 7-3)와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 농업용자산보유 변동, 자산/부채현황 변화 등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현황기술서에 기재된 경영개선목표의 달성 정도,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컨설팅기관·업체는 매보고시 해당 작목 농진청 진단표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진단서식에 따른 진단결과를 작성·제출

(4) 사업취소

1) 개별 계약의 지원결정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컨설팅의 내실화 또는 지원대상 경영체의 적극 협조를 1차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기관·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경영체와 타 컨설팅기관·업체를 알선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경영체에 있을 경우 경영체 선정을 취소하고 컨설팅기관·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컨설팅료보조지원액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대상경영체 선정자격 제한
- 계약의 무효·해지의 경우에는 본지침 '계약의 무효·해지·변경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

2) 컨설팅기관·업체의 지정 취소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후 계약기간진행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경영체와 타컨설팅 업체를 알선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컨설팅기관·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취소후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동일업체 지정불가 및 참여인력 타공급업체 참여 제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선정결과 보고 : 매월말 보고(별지서식 3-2)
 - 컨설팅기관·업체지정결과 보고 : 2000. 3월말까지(별지서식3-3)
 - 컨설팅계약체결상황보고 : 2000. 5.15까지(별지서식8-1)
 - 컨설팅추진상황중간보고 : 2000. 7월말까지(별지서식8-2)
 - 컨설팅추진실적최종보고 : 2001. 7월말까지(별지서식8-2)
- (*)2001.7월말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은 계약이 있을 경우 7월말 잠정 보고후 최종계약종료후 최종보고
- 시·도지사는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사업 시행 차기년도에 경영체별로 경영, 기술 개선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문서사본일체를 농림부에 수시 제출
- 컨설팅기관·업체와 지원대상경영체는 시·도지사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디스켓의 형태로도 제출해야 함
 -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파일제출 권장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0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추진방향 재검토후 별도 시행

[별표1] 도별 컨설팅지원예산 배정내역

시·도	도 별 경영체배정	지 원 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개소(농가)	천원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39	390,000	117,000	78,000	195,000
강원	48	480,000	144,000	96,000	240,000
충북	30	300,000	90,000	60,000	150,000
충남	45	450,000	135,000	90,000	225,000
전북	83	830,000	249,000	166,000	415,000
전남	48	480,000	144,000	96,000	240,000
경북	47	470,000	141,000	94,000	235,000
경남	40	400,000	120,000	80,000	200,000
제주	20	200,000	60,000	40,000	100,000
계	400	4,000,000	1,200,000	800,000	2,000,000

(*) 위 내역은 추후 변경가능하며 시·도지사는 원예·축산분야간 사업량 배정을 고르게 하되 컨설팅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

[별표2] 컨설팅서비스의 분류(예시)

	분 류
컨설팅내용에 따른 분류	1)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컨설팅
	2) 기장·회계·재무관리컨설팅
	3) 기술·생산관리컨설팅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치자문, 축산분야의 시설·환경·위생 방역분야는 별도의 컨설팅분야로 볼 수 있음
	4) 농자재조달·가공·마케팅컨설팅·농기계이용
	5) 정보화컨설팅
	6) 기타 농업경영혁신에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컨설팅
컨설팅의 구성· 결합 방식에 따른 분류	종합컨설팅 : 위 분류상 1), 2)를 반드시 포함하고 3) 또는 4)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컨설팅
	부분컨설팅 : 종합컨설팅이 아닌 컨설팅으로 1),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컨설팅. 다만 정보화컨설팅만을 시행하는 컨설팅은 본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별표3] 컨설팅용역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료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p>※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현황기술서에 따른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p>
○ 컨설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지침 [별표2]를 참고하되, 시·도지사 승인하에 지침에 없는 내용도 컨설팅내용으로 채택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비방문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 컨설팅료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인지, 행정기관인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별표4] 추진일정 도시

컨설팅사업지침 확정		
시·도 지침 확정		
게시·광고	<경영체> 선정신청, 심사·추천 (사·군) ※연중 수시신청	<기관·업체> 지정신청접수 (시·도)
	2배수 심사·추천	
컨설팅기관·업체 지정 (시·도)		2월말까지
설명회 개최 (시·도)		
계약 체결		연중수시
지원금액 결정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기관·업체등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소속	자격 및 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 력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 ※ 전문인력 개개인에 대해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 ※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등 증빙첨부

[별지서식1-2]

외부전문가그룹 확보현황

(컨설팅기관·업체등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소속	자격 및 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 력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 별첨 : 전문가그룹참가동의서(개인별)

[별지서식1-3]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컨설팅기관·업체등 작성용)

컨설팅 기간	컨설팅대상 경영체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으로)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력 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주소) (전화)				전담 ()명 보조 ()명	

※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서식2]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신청서

(농업경영체 작성용)

법인명(성명)		대표자명		
소재지				
설립일		'98판매금액		
전화		F A X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종합자금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종합컨설팅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지도계통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컨설팅기관		
정책자금 지원현황	지원연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컨설팅경험	연도	컨설팅업체	성 과	
				확인란
개인용컴퓨터보유·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보유·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보유·사용			
정보통신활용능력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가입통신망 (,)			
농업정보화교육이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수(이수연월 :)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농업정보화교육이수의향	<input type="checkbox"/> 이수 예정 <input type="checkbox"/> 이수할 생각 없음			

(*) 확인란은 행정기관이 농림수산정보센터에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함

컨설팅필요분야 (해당항목 모두 표시)	<input type="checkbox"/>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수립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장·회계·재무관리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술·생산관리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농자재구입·가공·마케팅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경영정보화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구체적으로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구체적으로)	
경영상태 평가의견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99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법인명(성명) : (인)
 대표자 : (인)

- 별첨 : 1. 최근 1년간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사본 1부
 2.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와 진단결과 의견서(서식자유) 첨부
 3. 정보통신서비스 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 이용실적증빙

농업경영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심사결과(추천)

(○○시·군)

(법인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희망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컨설팅	종합 컨설팅 희망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P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려등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해 당 사 항 없 음													

(개별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희망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컨설팅	종합 컨설팅 희망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P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려등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 해당란에 ○ 표시

농업경영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심사결과(선정결과)

(○○사·도)

(법인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희망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컨설팅	종합 컨설팅 희망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I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려등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해 당 사 항 없 음												

(개별경영체)

추천 순위	코드 번호	법인명 (ID, EMAIL)	공동 계약 희망	종합 자금 지원	지도 계통 컨설팅	종합 컨설팅 희망	정책자금지원		컴퓨터 보유 사용	정보화 교육 이수	인터넷 계정 보유	AFIS 회원 여부	경영 장부등 기록	부실 화우 려등	경영 규모
							기타 자금	축산 자금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방법 :

- 형식 : AABBCDD 예) 9912122(99년 지원대상 전북의 법인 22순위)

(AA : 연도, BB : 시·도수신처기호, C : 법인(1), 전업농등(2), 공동(3), DD : 순위)

컨설팅서비스공급자 심사결과(지정결과)

(○○시·도)

기관업체명	품목	조직 형태	소속기관 체	컨설팅 분야	전문 인력 (명)	외부 인력 (명)	사업자 등록	'97~'98 유료계약 (천 백만원)	품 목 관 련 주요시설장비			정보통신서비스		
									1	2	3	시행중	시행 예정	

- (*) 품목 : 원예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으로 대분류하고 ()속에 세부 품목을 기입.
축산분야는 축종을 기입
- (*)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형태, 부속기관(연구소), 학교법인, 국공립대학, 전문가팀 등
- (*) 컨설팅분야 : [별표2]를 참고하여 종합/부분을 구분하고, () 속에 세부컨설팅가능분야 기입
- (*) 사업자등록여부 : ○, ×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유료계약에는 정보화컨설팅, 경영교육, 연구용역 등 불포함
- (*) 정보통신서비스 : 해당란에 ○ 표시
-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별지서식4]

농업정보화교육이수확인서

성명		소속	
주소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책임자		전화	
특기사항			

위 사람은 (예 :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화교육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행한 농업정보화교육 ()과정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예 :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별지서식6-1]

농업경영컨설팅일지

(농가보관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팅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농가	컨설팅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서식6-2]

농업경영컨설팅일지

(컨설팅기관·업체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경영체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 컨설팅공급업체가 2건이상 컨설팅공급계약체결시 대상경영체별로 컨설팅일지 작성

[별지서식7-1]

경 영 현 황 기 술 서

(컨설팅기관·업체 작성용)

컨설팅기관·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주제배작목		부제배작목	
경 영 규 모		영 농 경 력	
농업용자산 현 황	자산종류	계약채결시장부가액	활 용 및 관 리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지원자금	계약채결시지원내역	용 도
부 채 현 황	부채종류	계약채결시 부채액	평균금리
	정책자금		
	제도금융		
	사 채		
	합 계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 용 및 기 대 효 과	내 용		기 대 효 과	
	경영현황 및 개 선 목 표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구체적으로)	에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 현재 경영현황을 공동 조사한 후 이상과 같이 경영
개선목표를 수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별첨 : 조사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별지서식7-3]

컨설팅 결과 요약 보고

(컨설팅기관·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기관·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제배작목		부제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농업용자산 보유변경 상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장부가액	자산종류	계약종료시장부가액
정책자금 추가지원	지원자금	계약체결시지원내역	지원자금	계약종료시지원내역
	합계		합계	
부채변동상황	부채종류	계약체결시 부채액	부채종류	계약종료시 부채액
	정책자금		정책자금	
	제도금융		제도금융	
	사채		사채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경영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 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별첨 :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보고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컨설팅 계약 체결 상황 보고

- 0000(시·도) -

시·군	품목	컨설팅기관 업체명	컨설팅 대상 경영체 법인명 (성명)				컨설팅 분야	계약액 (만원)	보조액 (만원)	계약 기간	컨설팅 내용	경 영 개선목표
			주소	전화	주민번호	경영규모						
		(ID)	(ID)	주소								
		(ID)	(ID)	전화								
		(ID)	(ID)	주민번호								
		(ID)	(ID)	경영규모								
		(ID)	(ID)	주소								
		(ID)	(ID)	전화								
		(ID)	(ID)	주민번호								
		(ID)	(ID)	경영규모								
		(ID)	(ID)	주소								
		(ID)	(ID)	전화								
		(ID)	(ID)	주민번호								
		(ID)	(ID)	경영규모								

[별지서식8-2]

컨설팅추진상황중간보고
(컨설팅추진실적최종보고)

- ○○○○(시·도) -

시·군	품목	컨설팅기관 업체명	컨설팅대상 경영체명	컨설팅 분야	컨설팅 내용	경 영 개선목표	경 영 개선실적	문제점과 향후과제	시·도 평가의견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V. 소득원 개발

여 백

5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차장 이상필, 토목 사무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하므로서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 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의 도모
- 농업과 연계된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의 다양화
 - 관광농원 : 농원으로서의 특성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하여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 휴양단지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공청회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농촌민박마을 : 숙박위주의 조성보다 지역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
 - 주말농원 : 도시근교 유휴농지를 개발 도시민의 비영리목적 영농활동에 활용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휴양자원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92~'97년	'98년	'99년	2000년 (예산안)	2001~2004
사업량	513	59	25	15<10>	298
사업비					
계	158,508	24,135	12,150	7,860	108,445
국고용자부담	114,098	16,894	8,800	6,100	81,160
자부담	44,410	7,241	3,350	1,760	27,285

※ 1) < >외서는 계속지구

2) 추진목표

- 관광농원('84~2004) : 시·군당 4개소기준 544개소 조성
- 휴양단지('89~2004) : 시·도별 2개소기준 22개소 조성
- 민박마을('91~2004) : 군당 3개마을 기준 408개마을 조성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지원대상자

- 관광농원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자기 소유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3호이상 공동참여
 - ※ 공동참여방법 : 농원 조성·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 출자등
 -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설립후 1년이상 경과 및 출자규모가 3억원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휴양단지개발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 농촌민박마을사업 : 마을당 5호이상 공동참여농가로서 민박을 목적으로 보유한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
- 주말농원개발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반공사, 농협, 농업인

(3)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관광농원개발	휴양단지개발	농촌민박마을
용자한도	○ 총사업비의 70%이내로서 지구당 450백만원이내 - 신규지구 : 200백만원 이내(1차년도) - 기성지구 : 250백만원 이내(2차년도 이후)	○ 총사업비의 100% 이내로서 지구당 2,500백만원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로서 마을당 300백만원, 농가당 15백만원이내
용자조건	○ 연리 8%,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연리 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대상	○ 지정된 농원내의 과수·가축등 다년생 작목입식 ○ 농원의 부대편의시설 설치 및 도로등 기반조성사업	○ 지정된 휴양단지내의 농업부대시설, 기반 조성시설 및 편의시설 등 설치	○ 민박대상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 시설 및 소요자재비

- 관광농원사업은 신규지구 지원은 억제하고 시·도별 예산지원액 범위 내에서 기성(계속)지구의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되, 규정면적이상 농장이 조성되어 있는 농원 지원
- 주말농원사업은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

(4) 구비서류

- 관광농원개발사업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휴양단지개발사업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농촌민박마을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5) 세부사업내용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을 참조

○ 사업규모 및 내용

- 지구지정면적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장면적(영농체험시설) : 작목입식면적이 4,000㎡이상으로서 지구 지정면적의 4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농특산물판매시설 : 3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휴양 시설, 숙박시설, 음식제공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최소한의 적정규모로 설치

·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을 원칙으로 하고 여관·여인숙 시설은 제외함. 또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령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의 억제

※ 관광농원이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이후 신규지정된 관광농원의 숙박·식당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

- 숙박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10%이내

- 식당시설면적(건물연면적) : 농장면적의 5%이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등 관계법령의 기준 적용)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사업규모 : 30,000㎡ ~ 100,000㎡미만

○개발방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게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관련시설등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수 있도록 개발

○시설규모 및 내용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용수개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 부대시설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농특산물판매시설(30㎡이상)
 - 기타편의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
(편의시설)농원여관 호텔등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체육·휴양시설)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등
(교양시설)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다) 농촌민박마을사업

○사업규모 : 마을당 5호이상 농가 공동참여

○개발방법

- 기존의 농가주택을 호당 5실한도내에서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본시설인 숙박시설 및 취사시설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농촌민박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관련된 화장실, 욕실(샤워장포함)등 시설의 개·보수등 .

(다) 주말농원개발사업

○사업규모 : 50,000m'미만

- 이용객에게 임대하는 농지면적이 전체면적의 40%이상이고 임대농지를 포함한 영농이용 농지면적이 60%이상일 것

○사업내용

-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
- 기타시설은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기구보관창고, 관리사무실등 주말농원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설치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계	보조	융자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15<10>	7,860	6,100	-	6,100		1,760	

※ 1) < >외서는 기성지구

2) 2000년 예산내역(안) : 25지구 6,100백만원(자부담 1,760백만원)

- 관광농원 : 2,000백만원(자부담 860백만원 ; 10개 기성지구 마무리)

- 휴양단지 : 2,000백만원(제주도 1지구)

- 민박마을 : 2,100백만원(자부담 900백만원 ; 14개마을 조성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4-9404,9405)
- 시·도 : 농정(농정산림, 농림수산)국 농업정책(농정유통, 농업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및 예산내시
- 사업자 :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다름
 - 관광농원개발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생산자단체(농·축·임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 휴양단지개발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 농촌민박마을사업 : 농업인
- ※ 사업자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시·군 :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심의(농정심의회 심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하고 그내용을 고시
- ※ 사업추진체계도 : 붙임 표2와 같음

라. 사업시행

(1)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가) 공통사항(농촌민박사업 제외)

-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지구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사업자가 농어촌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학계, 협회, 전문연구기관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시장·군수가 지구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4조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나) 농촌민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 농촌민박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건축, 위생관련 부서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가) 공통사항(농촌민박사업 제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달성 또는 현지여건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작목입식변경중 작목종류 일부변경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신고후 실시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등 제반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면밀검토
 -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개발사업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계획변경에 대해 변경코자하는 총 지정면적의 4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 여부 결정
 - 사업자 경영상태에 비해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강화
 -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농촌민박사업
 -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추진

(가) 공통사항(농촌민박사업 제외)

- 사업자는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인허가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제9-1호 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50호서식)
 - 사업준공검사와 사업자 지정 동시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지제51호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준공 및 사업자 지정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내용을 취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개발사업
 - 사업시행은 지구 지정년도부터 다음연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사업계획변경)을 얻어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축분야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등 실시

○ 휴양단지개발사업

- 공공기관에 의한 사업시행임을 감안하여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업 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비는 실비정산으로 함.
- 지적공부정리 및 분양등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휴양단지내의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농업인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분양(임대포함)
 - 분양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당해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 (지방비등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보 1은 공제함)

○민박마을조성사업

- 사업추진은 예산이 지원된 당해년도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지원은 민박을 위한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기본시설인 취사 시설 포함)에 한하여 지원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별도 시·도별로 예산 내시

(2) 자금의 운용관리

-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정계획 및 분기별 용자금 소요액과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정부자금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관광농원개발 및 농촌민박사업은 자부담금 전액을 우선집행한 경우에 지원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이 공정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년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실시

(4) 용자요령

- 용자금 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또는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시설물이 수반되는 경우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 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는 제외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행정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자는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등의 방지등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호화시설등에 과도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2)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 및 임대할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 또한 사업자가 관광농원의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공통사항

(가)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단속강화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공정계획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
- 점검결과 조치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지구지정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융자금은 농협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개별사항

(가) 관광농원개발사업

- 사업시행단계(조성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광농원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또한,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각개별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차사업자가 관광농원사업 운영의 공동참여자로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승인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적격 자격자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시정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 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나) 휴양단지개발사업

- 시장·군수는 휴양단지개발사업이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 사업시행 및 운영이 건실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
- 기반조성시설은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선량하게 관리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 기타 휴양단지의 지정 및 지구지정취소 등은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다) 농촌민박조성사업

- 시장·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설과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강화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정부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않고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지원과 정산절차를 제외한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 사업절차등은 지원사업과 동일

라. 보고

- 도지사는 2000년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의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제11-1,2호 및 제14호 서식)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신규 휴양단지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서 포함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5-1, 15-2, 15-3, 15-4, 15-5, 15-6, 15-7)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결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본사업시행지침 “5.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의 지원대상자”의 사업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자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 단, 휴양단지개발사업 및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 2001년 신규지정은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라. 구비서류 :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1호, 제16-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상수도보호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농촌관광휴양자원으로의 개발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지역민의 호응이 높고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예정지에 지구지정 예정면적의 40%이상에 농장(과수원,목장,특수작목재배지등)이 기초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동일지역내 수개의 농원이 난립되지 않는 지역

(2) 우선순위

- 상기선정기준(1)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 농가참여호수 및 예상취업자수가 많은 지구
 - 작목입식규모 및 운영등에 있어 농업활동의 비중이 높은 지구
 -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액이 많아 농업발전 및 소득증대가 높게 예상되는 지구
 - 주변여건이 좋아 도·농교류의 촉진이 높게 예상되는 지구
- 기존 논의 타목적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확정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 관광농원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자는 가장 낮은 순위 부여
- 농촌민박사업의 경우
 -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로서 5호이상 다수의 공동참여마을 우선 선정
농가당 5실이하로 시설기준 제한
 -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등은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존 농가주택의 개·보수, 증·개축이 아닌 주택신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3)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다, 라”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지원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확인등을 거쳐 사업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
 - 필요시 해당사업 관련기관(관광농업학회, 관광농원협회등)과 사전협의 검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을 결정
- 관광농원의 경우 농산물생산을 위한 농장구비여부를 확인한후 관련서류를 용자취급기관(단위농협 또는 농협군지부)에 송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접수전 신용조사 우선실시 가능
 - 용자취급기관은 신용조사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시·군	매년1.1~2.21	별지제1,10,12호서식 별지제2-1,2-2,11-1,11-2,13,14호서식
3.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시·군→도 도→농림부	3.10 3.20	별지제2-1,2-2호서식 별지제1-1,11-2호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4. 자부담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보고	도→농림부	6.30	별지제2-1,11-1호 서식준용
5. 농촌휴양자원개발 사업추진 실적 보고	시·군→도 도→농림부	1.15 1.25	별지제15-1,15-2,15-3,15-4,15-5,15-6,15-7호서식

○ 관광농원개발추진시 사업자, 시·군 및 농협에서 참고할 서식

구 분	작 성 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3.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추천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4호 서식
5. 각 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5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단위농협 (농협군지부)	시·군	별지 제6호 서식
7.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농정심의회	별지 제7호 서식
8.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8호 서식
9. 관광농원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9-1호 서식
10.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11.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표 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초지,특수작물재배지등), 농특산물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형	운영형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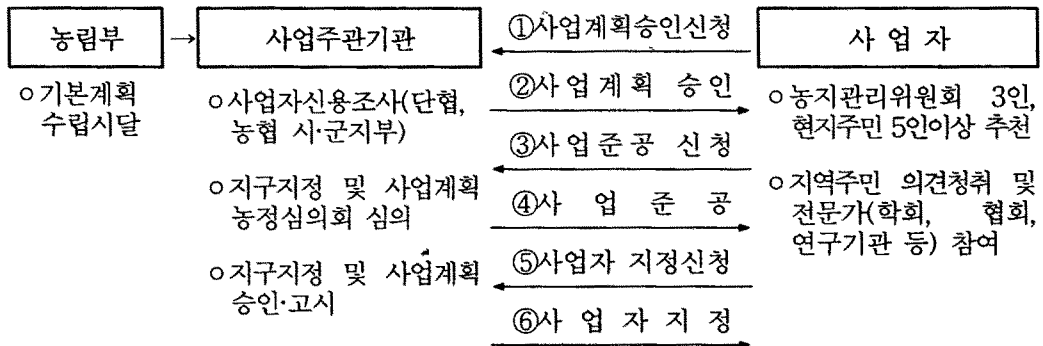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가축을 사육장에서 관광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물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여관, 민박, 야영장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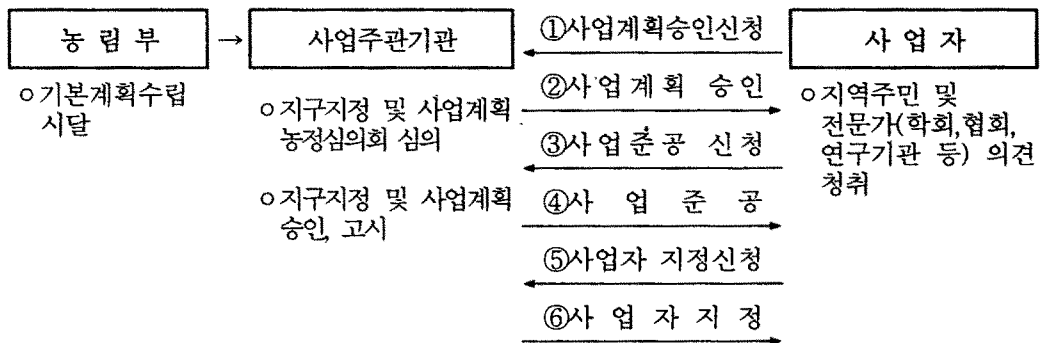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인. 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을 원칙으로 하고, 여관·여인숙은 숙박시설에서 제외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 2] 사업별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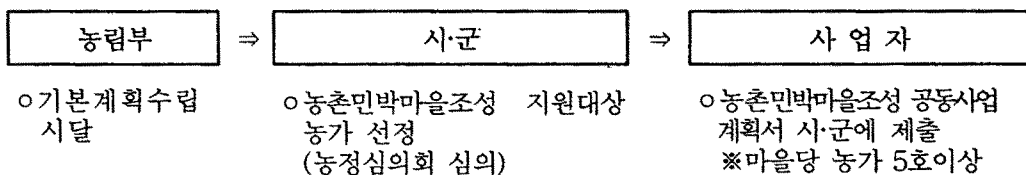
1. 관광농원개발사업



2. 휴양단지개발사업



3.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m²,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정지면적 (ha)	사업자 (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2000계획				2000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00 관 광 농 원	00도 00군 00면 00리				합계																				
					작 목 입 식	합계																			
						유실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마리 ㎡																		
						농 업 부 대 시 설	농업창고 직판장																		
					편 의 시 설	식당 숙박시설 테니스장 휴게소 주차장																			
						기 반 시 설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특이사항 기재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1. 농원관리 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물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고

※ 운영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 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뉘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뉘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 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의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농원특산물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추천서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2000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2000관광농원 개발사업 참여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가. 관광농원개발조성예정지 :

나. 규 모 : m²(ha)

- ※농업여건조성여부 : 1) 지구지정예정지 ○○작목 ○○평 기초성, ○○가축 ○○두 사육중
- 2) 지구지정예정지의 연접지역 ○○작목 ○○평 기초성, ○○가축 ○○두 사육중

다. 주요사업내용

라. 사업참여자(대표자)

- 성 명 : (남·여)
- 주민등록번호 :
- 소유경지면적 :
- 주 소(현지거주기간) : (년 개월)
- 참 여 능 가 :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와관계	참여 형태	참여 내용	소유경지면적				
							전 평	답	과원	기타	계

※ 소유경지면적란중 지구내 경지면적이 있을시는 ()안에 별도면적을 표시

추천인(농지관리위원장)	(인)
(농지관리위원)	(인)
"	(인)
(현지주민5인이상)주소·성명	(인)
"	(인)
"	(인)
"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의견서

관광농원 대출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대출누계액		대출제도초과여부	
기상환액			
대출잔액(A)			
금차대출신청액(B)			
A + B			

차주별	차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용조사결과	자기자금조달능력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담보제공능력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충분·적정·부족)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 가능여부
	신용상태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 종합의견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종합의견

확인자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20

○○시장·군수

인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서

- 위 치 :
- 지 구 (농 원) 명 :
- 규 모 : m²(ha)
- 사 업 기 간 :
- 사 업 비 :
- 사업자(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다 음 -

- 지구지정후 용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 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

시장·군수

인

[별지 제9-1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사업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지정번호)			위 치			TEL	
대 표 자	한글		규 모	평(m ²)			
	한문						
사업기간	. 부터 . 까지		완료일자				
신 청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관광농업개발지구내에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 준공검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별지 제9-2호 서식]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 과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축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10평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10평

[별지 제11-1호 서식]

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m², 백만원)

단지명	소재지	지구지정면적 (ha)	사업자 (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내용		총계획				2000계획				2000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4	2/4	3/4				4/4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용자									지방비	자부담
00 휴양 단지	00도 00군 00면 00리				합계																			
					기 반 시 설	도로																		
						하수정화 설 전기·통신 설																		
					농 수 산 부 대 시 설	농업전시관																		
						직판장 농산물 집하장																		
편 의 시 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주차장																							
기 반 시 설	상수도	식																						

※ 비고란에는 지구지정년월일 및 특이사항 기재(자부담개발여부등)

[별지 제12호 서식]

농촌민박사업신청서

가. 신청인 주소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가옥소재지

마.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민박가능방수	사업내용	소요자금			산출근거
		계	용자	자부담	
○실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보수				
	계				

바. 경지면적 및 소득효과

경지면적 (m ²)					소득효과추정(년간)		
계	전	답	과수원	기타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천원	천원	
						()	

※농외소득란의 ()는 민박으로 인한 소득액을 표시

위와 같이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_____ (인)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

(단위 : 천원)

마을명	소재지 주소 (전화 번호)	참여 농명	민박마을		수용 가능 인원	년 간 정 용 수 추 이 객	세 부 사 내 용	자금조달계획						인 관 자 원		
			실	평				사업비			분기별용자금소요					
								계	용 자	자 부 담	계	1/4	2/4		3/4	4/4
					명	명										
계	호															

- ※ 1. 민박규모는 농가별로 민박 제공가능한 방수와 총평수, 수용가능인원은 1회 수용
가능인원기재
- 2. 세부사업내용은 개보수(방수리, 화장실, 샤워장등), 증·개축으로 구분 기재
- 3. 용자신청액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실적

1. 관광농원개발사업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종사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연간 이용자수	명	기능에의한 유형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운영현황
			계획	실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양어장	주/평 두/평 평평			
농업부대시설	창고 하장 저장 직판장				
편의시설	숙박 - 농원여관 - 민박 - 방갈로 - 식당 - 휴게소 - 낚시터 - 운송시설 - 화장실	방수/평/동 평/동 평평			
용자금현황 (백만원)					
용자		상환		용자금상환잔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농원여관, 여인숙, 여관, 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전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해서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제15-2호 서식]

2. 관광농원개발실태

〈농원수〉

(단위 : 설치농원수)

시도	관광농원수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농산물판매장	교양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농부시설	업대시설	정화시설(폐수처리)
		숙박시설농원수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등	음점설치농원	식점설치농원	일음점	반식점							
(예시) 00도	20	15	1	10	5	1	5	10	10	-	20	19	10	20	20	20	10	
				(1 ¹)				(9 ²)										

※ ¹ : 건평이 100평이상인 여관을 설치한 농원수,

² :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설치한 농원수

〈농원시설규모〉

시·군	농원명	지구지정면적(A)	작목입식						숙박시설(건평)						음식점시설			농특산물전시판매장(건평)	교양시설(개소)	운동시설(개소)	편의시설(개소)	농업부대시설(개소)	정화시설(개소)		
			계(B)	B/A(%)	작물,임산물	양어장	사육장초지등	하우스분재원	...	계(C)	C/B(%)	농원여관	여관	여인숙	민박	방갈로등	계(D)							D/B(%)	일반음식점
(예시) 0000		10000	5000	50	4000	500	200	300	100	2	1동/100(10실)					50(○) ¹	1	1동/50(50인) ²		30	2	3	3	2	1

※ ¹ : 토속음식판매여부(○, ×), ² : 수용가능인원

[별지 제15-2호 서식] 관광농원개발실태는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보고

[별지 제15-4호 서식]

4.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소득효과(관광농원, 휴양단지농촌민박마을)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단지명 (농원마을명)	지구지정면적	지정년도	사업시행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수 (방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 (B)	순소득 (A-B)
									계	융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00																			
계																			

※ I. 관광농원개발사업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준공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II. 휴양단지개발사업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개장포함)된 휴양단지와 미개장된 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III. 농촌민박마을조성사업

1. 지구지정면적은 기재하지 말고, 종사자수(방수)란에는 방수만을 기재.

[별지 제15-5호 서식]

5. 지정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단지명 (농원명)	치정년도	사업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 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 소 사 유	비 고
						계	용 자	자 부 담	기 타			
00도												
계												

※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15-6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 지도·점검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농 원 명	지정 년도	지적 일자	지 적 사 항	조치결과(시정내역)		비 고
						완 료	미 완 료	
00도								

※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원별로 작성보고, 미완료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추진일정을 기재

농촌휴양단지사업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조직형태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생산자 단체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량)		
	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 · 농업진흥지역밖		
	사업비 (천 원)	계	용자	자부담		
<p>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시장·군수 귀하						
<p>첨부서류 : 1. 농촌휴양단지시설의 조성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 명세서 3. 시설물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농촌휴양단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촌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p>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천원)

시·군	지구명	구분	총사업비			'98 까 지			'99예산액			'99검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응 자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자	기 부 담 타	계	응 자 자	기 부 담 타		

※ 구분란에는 계속, 신규기재

55	농공단지육성(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토목 사무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입주업체 및 신규지정 활성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각종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2004년까지 312개소(14백만평) 조성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97	'98	'99	2000 (예산안)
사업량(개소)		50	3(5)	1(4)	-(1)
사 업 비	계	369,980	19,640	13,142	3,720
	국 비 보조	87,241	7,000	5,297	1,108
	국 비 용자	88,405	3,000	2,216	462
	지방비보조	13,622	1,104	475	203
	지방비용자	180,712	8,536	5,154	1,947

※ ()외서는 계속지구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 (2) 지원대상 : 공영개발 농공단지
- (3)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 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6)	-
충 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8)	태안군, 청양군(2)
전 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 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여천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 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울산시, 함안군, 양산시(7)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	북제주군(1)	남제주군(1)
합 계	25 (18시, 7군)	48 (22시, 26군)	48 (2시, 46군)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2000년까지는 일반농어촌중 충주시(중원군),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옥구군), 익산시(익산군), 광양시(광양군), 포항시(영일군), 구미시(선산군), 창원·마산시(창원군)은 추가지원농어촌으로, 추가지원농어촌중 춘천시(춘천군), 삼척시, 보령시, 남원시, 김제시, 안동시(안동군),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진주시(진양군)은 우선지원농어촌으로 봄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4)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된 읍·면
-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실수요자 부담으로 조성하는 경우 330천㎡이내에서 추가지정 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65~330천㎡이내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제한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 산정시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않은 농공단지면적과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지정면적을 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나,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3분의1이상인 경우
 - 단,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5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지정 가능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지방비 용 자
			소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계	1	3,720	1,570	1,108	462	203	1,947
계 속	1	3,720	1,570	1,108	462	203	1,947
신 규	-	-	-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립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 중소기업청장 :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지원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참고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 립 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02-500-2664, 5)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입지환경과(02-500-2450~2)
- 건설교통부 토 지 국 입지계획과(02-500-4105~6)
- 환 경 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02-500-4292~4)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042-481-4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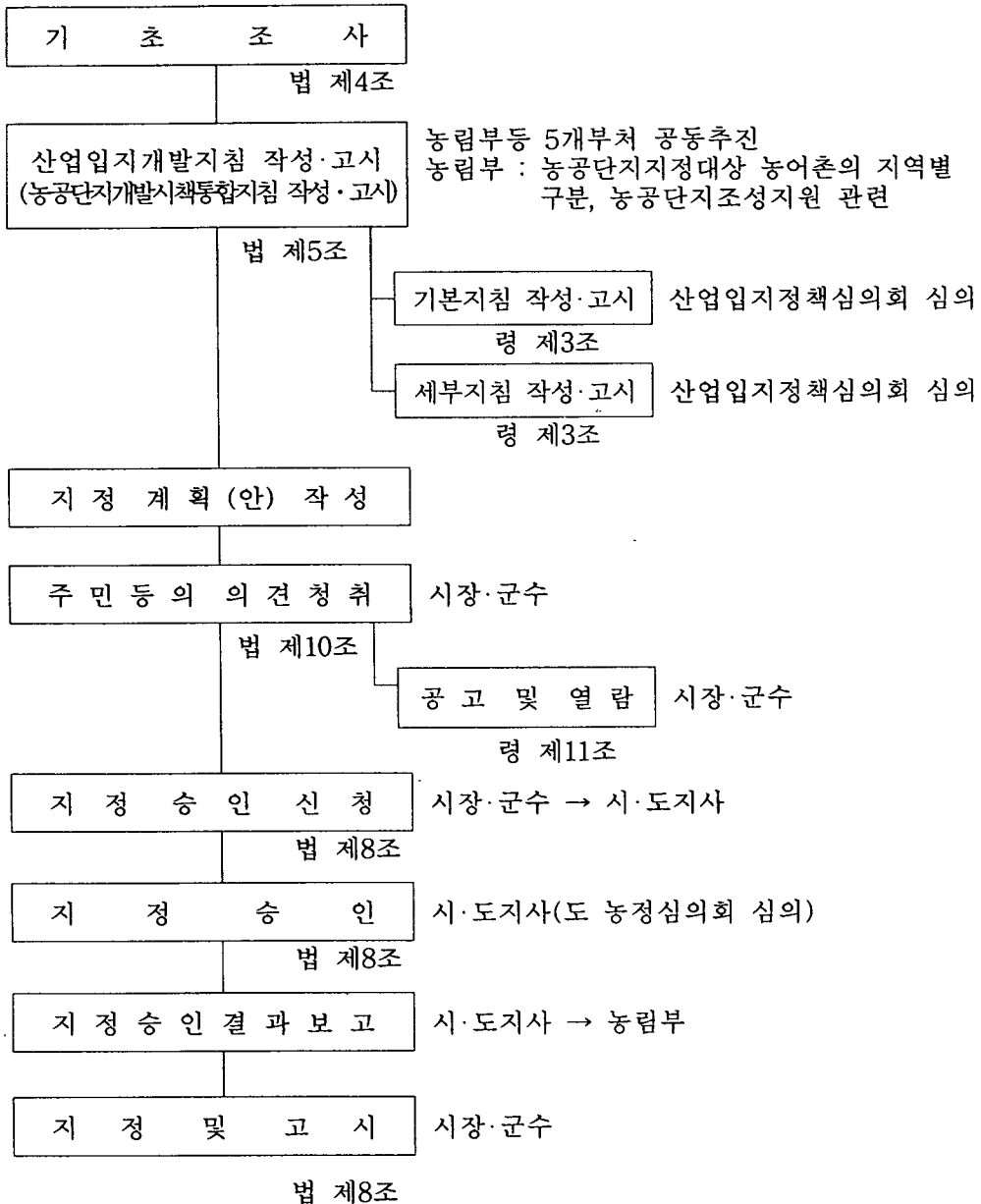
○ 시·도 : 경제통상(진흥)국 중소기업지원(공업(지원,기술), 기업지원, 투자통상, 산업자원, 지역경제)과

○ 시·군 : 지역경제(공단조성)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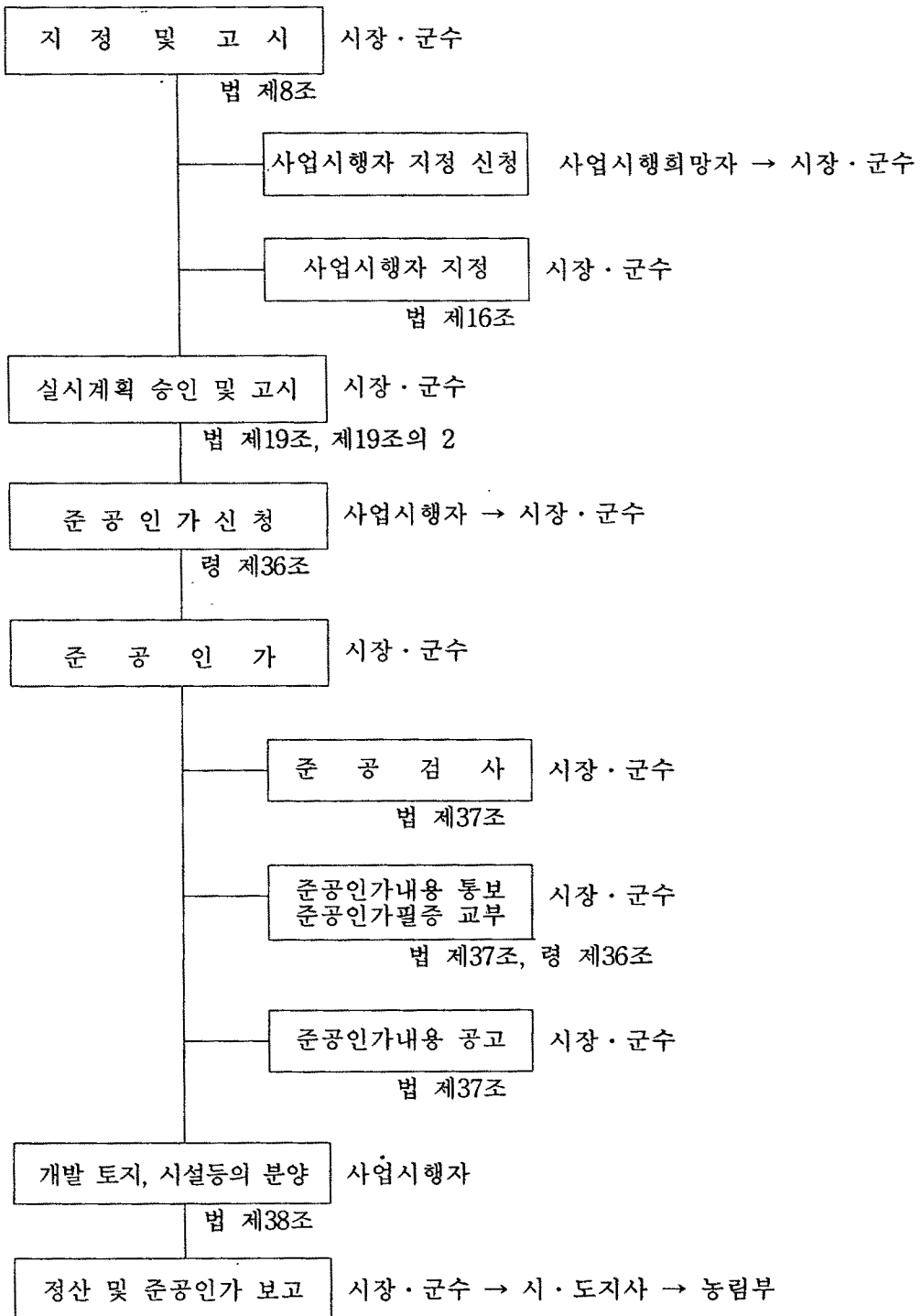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 개발절차 >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단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업·농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2)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세부설계실시 및 실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실시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토목직공무원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 다만, 조성비 일체를 입주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 공동이용건축물의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건축직공무원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일반농공단지 지원기준>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국 비 보 조	15(-)	30(15)	45(15)
국 비 용 자	10(-)	20(10)	20(10)
지방비 보조	5(-)	5(5)	5(5)
합 계	30(-)	55(30)	70(30)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
- 2) ()내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임
- 3) 예산지원 : 지원금(보조,용자)은 사업규모와 진도에 따라 2~3년간 분할지원
- 4) 용자조건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광산촌농공단지 및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합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방비보조
85	50	30	5

- ※1) 광산촌농공단지 국비보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 2) 농촌부존자원활용농공단지는 부존자원을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동부존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농업용기계제조업체가 2/3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
- 3) 잔여사업비 및 국비용자금 상환조건등은 일반농공단지와 같음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지원(중소기업청)>

구 분	금 용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7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단, 설비자금은 소요의 100%까지)	년 6.5% (변동가능)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3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6.5% (변동가능)	4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계	10억원이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환경부)>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 가 지 원 농 어 촌			우 선 지 원 농 어 촌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합 계	보 조	용 자
100	30	70	100	50	50	100	70	30

- ※ 1)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2) 용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등으로 충당
 3) 용자조건은 연 5.5%로써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임.

(2) 자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근거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4개부 처공동고시)
 -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별지 3호서식)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오·폐수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별지 4호서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농업기반공사는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 가능인력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 공 단지명	지 정 승인일	실 시 계 획 승인일	부 지 조 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 공 예정일	보 조	용 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 정 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별지 2호서식]

총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합계				실집행액						
농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이월액					잔액 (불용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보조금제27조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기간	착수년도	완공년도	2000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보조	자담
					소계	보조	융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고창○○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순창○○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부안○○ (신규)	관계기관협의(100%) 농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 구 분	지정면 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및기한	비 고
	착공일	준공일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토목 사무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여건과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정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
- 개발혜택이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6~'97	'98	'99	2000(예산안)
사 업 량	12	4	5	2	1
사업비(용자)	16,328	5,966	4,400	2,762	3,200

※ 사업량은 계속사업으로 5지구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96부터 시행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및 그 중앙회
- 지원단가 : 지구당 40억원 수준 용자(농지관리기금)
- 용자조건 : 연리 3.0%, 2년거치 2년균분상환
- 정비유형
 - 농림수산업적 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

나.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고	용자		
계	계속1지구	4,558	3,200	-	3,200	-	1,35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4-9404, 5)
- 시·도 : 농정국 농산지원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및 중앙회

라. 사업추진절차

정비지구 지정고시	
○ 기본 방침 수립 :	농림부장관 ----- 법 제76조
○ 예정지 조사 :	국가,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 법 제78조
○ 지구지정승인요청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 지구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법 제79조 제3항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 법 제79조 제2항



사업계획수립	
○ 정비 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 ----- 법 제77조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승인권자 ----- 법 제82조 -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 및 분양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법 제81조 제1항
○ 사업준공검사 :	승인권자 ----- 법 제94조
○ 토지 및 시설분양 :	농림어업인 및 관련단체, 실수요자에게 분양 ----- 법 제83조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계농지의 기준>

-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이하로 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지나친 소규모 지정은 억제
 -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 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제곱미터로 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개 시·군당 연면적을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함

<지구지정시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
- 지역주민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지매수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가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 받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 주변경관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등은 제외하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 지구지정후 사업착수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역주민 개발의욕 저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구지정후 차년도까지 개발착수가 가능한 지구를 우선 지정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1) 도지사 직권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도지사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2)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가)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군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자가 농업기반공사사장 또는 농·축·임협 및 그 중앙회인·경우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경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견서를 첨부
- 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25,000)와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예정지조사 보고서
 - 정비사업의 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부담(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 조서
 -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또는 대상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 관련법상 제약요건 검토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단, 다목적이용종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첨부 이 경우 예정지조사 보고서는 첨부하지 않음

라. 지구지정에 필요한 조사 등의 위탁

- 사업시행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도지사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군수의 한계농지 정비사업 시행자는 한계농지 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정비사업 시행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 및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추진

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및 그 중앙회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비사업 참여허용

※ 토지소유자의 참여방법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등 다목적이용, 농어촌휴양단지, 주말농원 등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가 한계농지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에 참여토록 함. 다만, 농림수산업적이용의 경우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라.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마.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바.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내역서, 시설물배치 및 시설 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전후 면적조서, 사업중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 수요자의 모집 및 분양

- 사업의 홍보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된 토지의 분양, 임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토지분양, 임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요자 모집 : 사업시행자는 정비된 토지 등의 수요자를 사전 확보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승인을 득한후 수요자를 모집할 수 있음

○분양·임대절차등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주택·기타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65조 및 제73조를 준용

○분양가격의 결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

○분양시의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 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민이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취득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함.

아.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이관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 및 그 부대 시설 등 기반조성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 시장·군수가 관리
- 사업시행자는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관련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그라우팅, 폐쇄공관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승인(계획변경, 준공)결과 보고 : 시행계획 승인(계획변경, 준공)시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지사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및 그 중앙회

다. 신청절차

- 예정지조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진공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장관
- 지구지정 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위치도(축척 : 1/25,000)
- 예정지 조사보고서
- 정비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의 ⅔이상의 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별도 협약에 의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귀 시.군(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로 투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①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99까지			2000 계 획							2001이후		
							계 획			실 적			B/A			
	계	응자	자담	계	응자	자담	계 (A)	응자	자담	계 (B)	응자	자담	(%)	계	응자	자담
1.순공사비																
○																
○																
○																
2.용지매수 보상																
3.관리비 기타																
○조사설계																
○공사감리																
○잡 지 출																
○																
○																
○																

I. 농업경영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박현출, 사무관 김원일)입니다.

1. 목 적

-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에 대한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 쌀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진흥지역에 간접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914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계	'92-'96	'97	'98	'99	2000
총 지원규모		273,700	126,700	33,000	38,000	38,000	38,000
사업비 (예산규모)	계	17,210	9,200	3,310	3,400	520	780
	재특회계	17,210	9,200	3,310	3,400	520	78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업경영자금 >

- 일반농업경영자(벼농사) 및 전문농업경영자(채소, 과수 등 특수작목)
- 농업경영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재해대상 농가

< 농기업경영자금 >

- 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개인 : 대상자선정후 3년이상 영농종사후계자, 전업농, 전업농 규모이상의 농업인, 작목반 등

※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 연리 5.0%, 1년 이내 상환(일반농업경영자금은 12월 말)

< 농기업경영자금 >

- 연리 5.0%, 시설자금 1년 거치 2~4년 균등 분할상환, 운전자금 1년 이내(1년간 연기 가능)

○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 이내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 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만원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이내

③ 농기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전업농규모의 70%이상의 농업인, 새농민수상자, 작목반 일정규모이상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신지식 농업인, 환경농산물 표시농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업사업자
- ※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한함(단, 농업인후계자의 경우 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시설보수 및 대체자금, 사업규모확장을 위한 설비 구입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등
- 운전자금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농업관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전자금
- ※ 지원내용중 제외되는 부문 : 농기계구입자금, 토지구입비, 기초성된 건물, 농산물매취자금

- 지원금액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시설자금은 80%, 운전자금은 100%이내

- ※ 소요금액에 따라 심사기관을 달리하고 실제융자업무는 농협시·군지부에서 취급

< 금액별 심사기관 >

구 분	시·군지부	시·도지역본부	중앙본부
지원규모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 대출심사역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지부(지점)은 50% 증액운용

④ 재해대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나. 2000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내 용 별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계	억원 38,000	38,000	38,000			
○ 일반농업경영자금 (진흥지역 특별자금)	19,700 (4,000)	19,700 (4,000)	19,700 (4,000)			
○ 전문농업경영자금	8,300	8,300	8,300			
○ 농기업경영자금	6,500	6,500	6,500			
○ 재해대책 자금	3,500	3,500	3,500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업경영자금 : 농림부 협동조합과(02 - 503 - 7218)
- 농기업경영자금 : 농림부 농촌인력과(02 - 503 - 7216)

다. 대상자 선정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조합용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농기업경영자금 : 실수요자가 농협시·군지부에 신청하여 시·군 지부에서 지원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융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조합까지 시달(농기업경영자금은 시·군지부까지)
- 지역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농협(농기업경영자금은 시·군지부)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업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업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분기별)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업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업경영자금 융자실적 보고(분기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협동조합과(농업경영자금, 02-503-7218)
 농촌인력과(농기업경영자금, 02-503-7216)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86)
- 농협지역본부 저축금융과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

II. 축산경영자금 지원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이상길, 행정사무관 박상운)입니다.

1. 목 적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및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전업규모의 축산농가, 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축산 경영체에게 가축사양비, 시설개보수 등의 운영자금을 저리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강화 제고
- 축산재해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신속한 재할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업 분야에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품질향상 부존자원활용, 방역 및 분뇨자원화, 집유일원화 참여 등 정부시책 우수추진 축산경영체에게 인센티브 부여
- 축종별·사육규모별 지원규모의 차등화를 통하여 적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생산성을 유도

3.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82 : 축산진흥기금에서 157억원 지원 시작(대출금리 연 10%)
 - '8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 시작(차입금액 200억원)
 - '94 : 정부의 한국은행 정책자금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재정으로 점진적 전환
 - '97 : 양축자금을 축산경영자금으로 명칭변경 및 제도개선(일반·전업으로 구분 지원)
 - '98 : 한은자금 지원 종료
 - '99 : 축산시책 우수농가에 자금지원 인센티브 부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2004	
지원규모	4,000	4,200	5,200	6,700	6,700	6,700		
재 원 별	재정자금 (신 규)	1,416 (248)	1,724 (368)	2,382 (738)	3,095 (833)	3,095 (120)	3,095 (210)	
	한은자금	624	416	208	-	-	-	
	축협자금	1,960	2,060	2,610	3,605	3,605	3,605	

5. 지원조건 및 자금의 용도

- 융자기간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 금 리 : 5.0%
- 자금의 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기존불량시설의 개·보수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 신규시설투자, 가축입식비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제외
단, 재해대책 경영자금의 경우는 가축입식비 지원 가능

6. 사업시행요령

가. 일반경영자금

- 1) 지원대상자 : 부업규모 축산농가
-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미만
 - 닭 : 1만수 미만
 - 기타가축
 - 전업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준·전업 축산농가

○ 지원금액

구 분	5백만 이내	10백만원인
한(육)우·말	10두미만	10두이상
젖 소	20두미만	20두이상
돼 지	100두미만	100두이상
닭	7,000수미만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읍·면·동 단위로 읍자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양축가대표 4인(후계자 1, 일반 3)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축협 1(상무 또는 전무)

○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자금지원 계획을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읍·면·동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자금신청
- 축산계장(대의원)은 “읍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순위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 축협조합장은 추천된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이나 조합게시판에 공고

< 시·군·구 단위로 읍자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2, 양축가대표 3(후계자 1, 일반 2), 시·군·구 담당 공무원 1, 축협 1(전무 또는 상무)

○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자금지원계획을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축협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용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순서, 지원액을 협의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 및 축협게시판에 공고
- ※ 축협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상기 2가지 방법중 조합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4) 우수농가 우선지원

- 용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공방단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 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벗짚이용, 남은음식물 사료화
 - 기 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나. 전업경영자금

- 1) 지원대상자 : 전업규모의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
-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아래 규모의 한(육)우, 젖소, 말,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는 개별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30두 이상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이상
 - 돼지 : 500두 이상
 - 닭 : 1만수 이상
 -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종돈업체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
 - ※ 단,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의 경우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개별축산농가 : 40백만원 이내

구 분	15백만원이내	20백만원이내	30백만원이내	40백만원이내
한(육)우	30~50두미만	100두미만	200두미만	200두이상
한우번식우·말	20~50두미만	100두미만	200두미만	200두이상
젓 소	30~50두미만	100두미만	200두미만	200두이상
돼 지	500~1천두미만	1,500두미만	2,000두미만	2,000두이상
닭	1~2만수미만	3만수미만	4만수미만	4만수이상

-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축 종	한(육)우	젓 소	돼 지	닭
한 도	2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 법인명의(축산단지 포함)로 대출을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명으로 자금 지원 불가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개별농가 >

- 축산농가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축협조합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대출신청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통보
- 축협조합장은 대출신청서류를 토대로 축산경영자금 심사평가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와 합동 심사(현장확인)하여 축종별로 지원순위 및 지원액 결정.
- 축협조합장은 축종별 지원대상자 결정내역을 도지회, 관할 시·군, 본인에게 통보

<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 등 >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협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축산경영자금심사표에 의해 관할 시장·군수와 합동 평가후 시·도지회에 제출
- 축협도지회장은 해당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4) 우수농가 우선지원

- 축산시책(가축질병, 품질개선, 부존자원 활용, 축산분뇨자원화 등)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우수농가에게 자금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표』에 반영조치
 - 가축질병예방 : 공방단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등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축 출하, 1등급 원유생산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벃짚이용, 남은음식물사료화
 - 기타 : 집유일원화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

5) 규격돈 출하지원 확대

- 양돈분야에 대한 전업경영자금 지원은 연차적으로 규격돈 출하지원실적에 의거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 세부지원기준은 별도마련 시행

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1) 지원대상자 : 축산농가중 재해를 입은 농가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연재해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로 판정된 경우
 - 중앙지원(국고 + 용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당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사고”
 - 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축사의 붕괴, 가축의 도난·폐사 등
 - ※ 기타 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금액 : 호당 300만원~1억원이내
 - ※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액
 - 자연재해 : 피해액과 정부지원액(보조 + 융자)의 차액 범위내
 - 기타사고 : 보험금·공제금 및 정부지원액(살처분보상비 등)을 제외한 피해액의 50% 범위내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법령에 의한 『재해』의 경우

- 시장·군수는 피해농가로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피해를 집계하여 농림부에 자금지원 요청, 농림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의 피해복구계획에 의한 확정액과 피해액과의 차액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시·도 및 축협중앙회에 통지
- 축협중앙회장 또는 시·도별 한도를 배정하여 축협조합을 통하여 대출 실행

○ 기타 사고에 의한 경우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축협 도지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 축협 도지회장은 중앙회장에 지원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도지회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4)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순으로 하되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7. 자금운용관리

- 축협중앙회는 배정된 한도범위내에서 사육규모, 축산농가수 등을 기준으로 시·도별, 조합별 자금배정 운용
- 시·도별, 조합별 가축사육규모 및 축산농가수의 변동추세를 감안 자금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

8. 사업신청안내

- 농림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 축협중앙회 여신지원부(02-2224-8677~8)
- 시·도 축산과, 축협 시·도지회
- 시·군 축산계, 시·군 축협조합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지·법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협에 신청

9.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제한대상
 - 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양축가 또는 법인).
 - 중앙회 임직원,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임직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기타 이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의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10. 기타사항(행정사항)

- 사후관리
 - 축산경영자금 운용요령에 의해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농림부)
 -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수시확인하고, 정책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축협중앙회, 축협조합)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축협조합이나 축협 시·도지회의 협조요청에 즉시 응하여 기관간 협의지연으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축협중앙회장은 세부집행계획 및 용자 실행결과 등을 농림부에 보고
- 본 요령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현행법령 및 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축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V. 생활 환경 개선

여 백

I. 정주권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시설서기관 이승찬)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

나.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1,230개 면중 오지(399)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68개 정주권개발대상면 1차 지원 완료 예정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구분·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년 (예산안)	2001~2004
사업량(면수)						
- 보조사업		224	70	56	50	368
- 용자사업		306	15	17	25	410
사 업 비	계	1,234,671	204,563	206,859	261,717	829,664
	국고(양여금)	615,842	118,924	126,679	164,526	309,528
	지방비	256,479	50,692	54,291	70,511	132,655
	융자	362,350	34,947	25,889	26,680	387,481

주1] 사업량은 완료면 기준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면개발계획수립

(1) 목적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도록 함.

(2) 연차별 계획수립

- 2001년까지 768개의 면개발계획 수립완료
 - 매년 시·군별 사업추진 진도를 참고하여 연간 계획수립 면수 결정

구 분	계	'98까지	99	2000(P)	2001
면수	768	623	51	60	34

(3)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면당 계획수립비 : 2000년도 계획수립비는 별도 통보에 의함

(4)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승격등 변경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5) 중심마을생활권 설정

- 중심마을생활권은 주민편익·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마을과 그 배후의 농지·임야등 농업생산기반 및 산업기반을 포괄하며, 중심마을의 편익·공공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동일 생활권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부락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항등을 공유하는 권역
 - 공공 서비스시설(관공서, 농협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등 교육기관등)
 - 도로 및 교통의 연계성 및 접근
 - 중심마을은 50호이상의 규모 있는 거점마을
 - 시장·상가등 상업 및 유통기능
 -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 중심마을의 공공·편익시설에 의존하는 배후마을
- 중심마을은 주거 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서 및 공공시설, 학교등 교육시설, 금융기관등 서비스시설, 시장 및 공동이용시설,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의 거점마을로 배후마을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
 - 마을 규모 50호 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
 - 도로·교통등 접근성이 좋은 마을
 - 공공·기초서비스시설(관공소, 보건소, 농협, 의료시설, 학교등 교육시설)이 있는 마을
 - 시장, 상가등 유통기능이 있는 마을
 - 복지회관(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이 집중된 마을

(6)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1, 2단계로 구분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과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1단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등을 검토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7)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개발계획 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8)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1년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등을 취하여야 함

(9)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10)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11)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농발계획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권개발대상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2단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중심마을정비계획은 개발방향, 개발계획, 사업효과등을 상세하게 수립함
 - 도상계획(1:5,000도면)
 - 소요사업비
 - 상·하수도계획

- 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 등과 연계하여 계획수립
-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문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타부문계획으로 수립하고, 농발계획 및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함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12)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나. 정주권개발사업

(1) 사업내용설명

(가)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법정도로는 제외)
- 농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등
- ※ 타부문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면당 45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용자 15억원)

- 보조사업비는 양여금70%, 지방비 30%
- 지원기준 초과사업비는 별도 재원으로 자체적 추진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해 배분
- 용자사업 : 면당 15억원 범위내에서 주택신축 및 개량자금등 지원('95 이전 착수지구는 9억원)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 년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년리 4.0%, 3년거치 7년상환

(다)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용자 (농특회계)		
일반정주권개발		261,717	191,206	164,526	26,680	70,511	-
- 보조사업	50	235,037	164,526	164,526	-	70,511	-
- 용자사업	25	26,680	26,680	-	26,680	-	-

※ 사업량은 지원완료면 기준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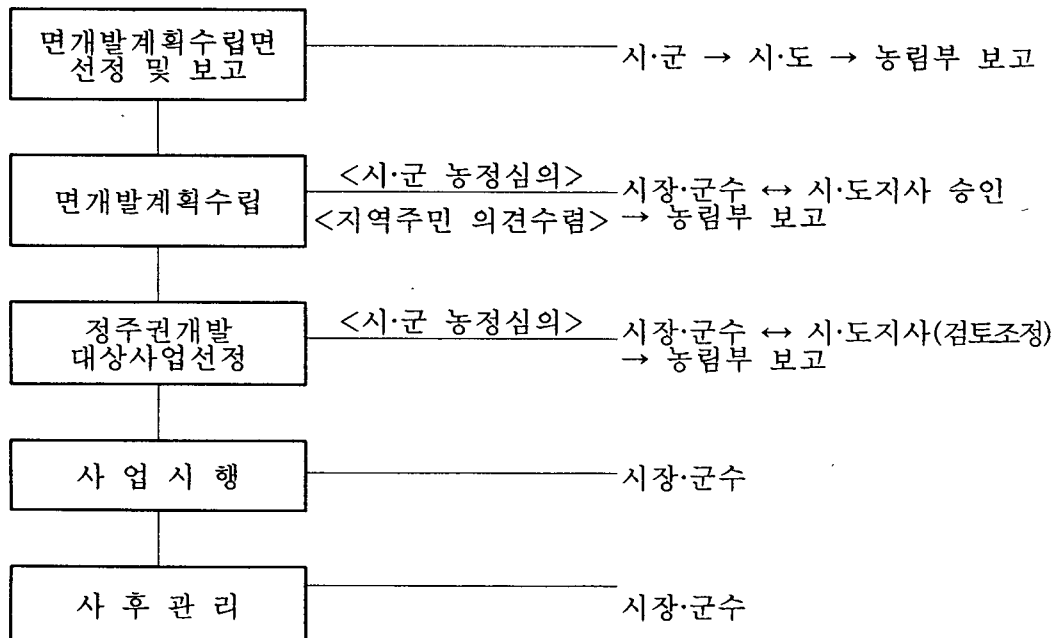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 또는 농정과(충북, 충남, 전북, 제주)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전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대상사업선정

(1) 사업대상면 선정

-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 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기간이 6년이상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신규착수 억제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계속 지원가능(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3개내외의 중심마을생활권을 선정

(3)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 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1단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 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1단계 추진 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용지매수, 공사준비 등을 실시하고 2차 년도에 완공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1) 보조사업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사업자가 시행시 현지 여건상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등을 보관하여야 함

(2) 융자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내용
 - 농촌주택정비, 농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마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과 연계 지원)

- 용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용자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용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용자방법
 - 용자금 대출은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시설물수반시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에 따라 진도(기성고) 확인후 자금지원 단, 용자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별표 1)

나.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름

라.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을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시·군의 면수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되, 시장·군수는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
 -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양여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용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면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나. 보고

- 면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개발계획승인시(별지 제1호 서식)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3호 서식)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3.10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정주권개발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정주권개발사업 완료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6호 서식)

[별표 1]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1. 용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정주권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시·도지사
○ 주택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개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주택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농촌용수시설(상·하수도 포함)	○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시·도지사

2. 용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용지매수	4.0	4	2	2	○ 사업지구당 100억원 이내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임대주택	5.0	20	5	15	○ 지구당 5억원 이내	○ 전체사업비의 50%이내
○ 주택신축(문화마을)	5.5 (5.0)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70% 이내
○ 주택개량	4.0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민편익시설	5.0	5	2	3	○ 사업자당 3천만원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농촌용수시설(상·하수도 포함)	4.0	20	5	15	○ 지구당 3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50%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 업 명	자 금 의 용 도	용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 사업	○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진공)
○ 임대주택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	시장·군수 (농진공)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 민
○ 주민편익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편익시 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촌용수 (상·하수도 포함)	○ 농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사업을 시 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 ○○면 면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

면적 (m ²)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

구 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하수도시설	Km								
○상수도시설	개소 (명)								
○하천정비	Km								
○복지회관	개소								
○마을회관	개소								
○주택정비	동								
○경지정리	ha								
○수리답율	%								

4.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구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어촌용배수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농촌주택정비						
10. 기타지역개발						

5. 1단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

○1단계 투자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26-65

년도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시·도)

시·군명	대상 면수	사업시행(면수)			개발계획수립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면수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획	
							면수	면 명
계								

[별지 제3호 서식]

총26-61

2000년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 면수	시행면 (지구)	합 계		문화마을조성			정주권개발				비 고	
			보조	용자	보조	용 자		보조	용 자				
						계	용지 매입		주택 신축	계	주택 신축		주택 개량
계							()			()	()	()	

- ※ 1. ()는 주택호수등 물량
- 2.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방비

II. 문화마을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시설서기관 이승찬)입니다.

1. 목 적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생활권의 거점마을(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발전가능성이 큰 면단위 정주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반 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시설), 주택정비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개발 사업등 연계 추진

나. 장기 사업목표 : 전국 정주권개발대상면에 대하여 면당 1개마을 선정하여 생활환경정비(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2004
사업량 (완료)		93 (51)	12 (21)	10 (22)	23 (11)	52 (85)
사업 비	계	325,937	82,349	57,445	74,871	178,696
	국고(양여금)	110,826	31,918	28,225	36,798	59,662
	지방비	47,497	13,539	12,097	15,771	25,569
	융자	167,614	36,892	17,123	22,302	93,465

주1] 사업량은 착수지구 기준, ()는 단지조성 완료지구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면개발계획서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마을생활권 지역의 거점마을(중심 마을)에 대하여 마을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 추진
- 마을의 원지형을 기본 토대로 지역의 특성(전통성, 문화성)을 고려하여 마을 정비
 - 기존마을의 토지·주택등의 합리적 재배치
 - 마을기반시설(마을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전기·통신시설등)과 농촌 주택정비
 - 복지(마을)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익 및 공동 이용시설
 -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연계 지원
- 필요한 경우 마을기능보강을 위하여 기존중심마을내 또는 인접하여 소규모 주택용지 및 공동이용시설용지 조성

나. 지원조건

○지원규모

- 보조 : 20~30억원수준(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 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
- 용자 : 15억원 수준(농촌주택정비 및 주택용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보상)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000만원(연리 5.0%,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 : 호당 500만원(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용지매수보상(주택용지조성시) : 소요액(연리 4.0%, 2년거치 2년상환)
- 보조사업비 재원 :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3]에 의한 문화 마을 조성사업의 양여기준 적용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확보 추진

다.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양여금)	고 용자		
문화마을조성사업		74,871	59,100	36,798	22,302	15,771	-
○단지조성	44	53,818	38,047	36,798	1,249	15,771	-
○주택건축	81	21,053	21,053	-	21,053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또는 농정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자치행정국 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
(경남), 주택과(경기, 전남)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시·군 : 건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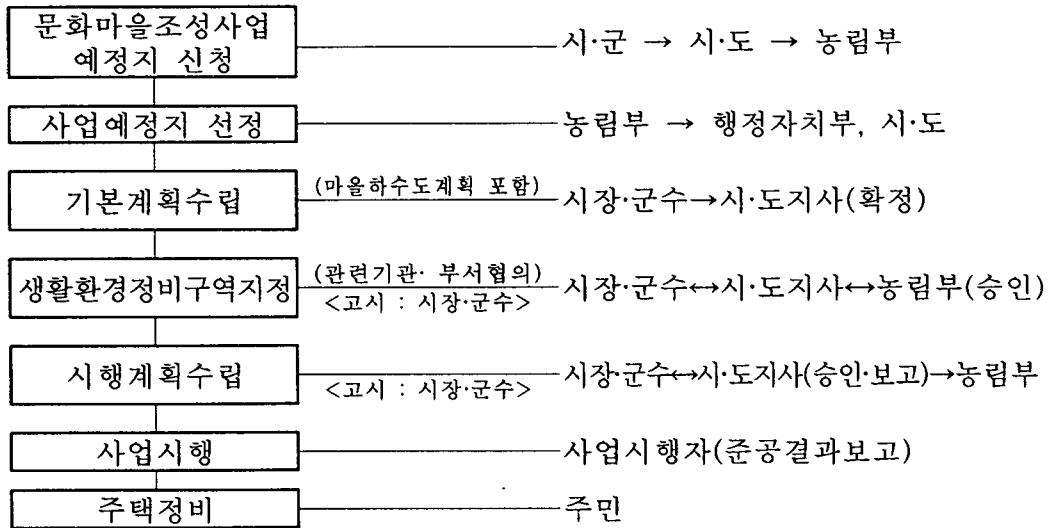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 및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
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시행시에는 가능
한한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등을 일괄하여 위탁하며,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사업시행자는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면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중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마을중에서 선정
 - 교통·경제·문화등 중심생활권으로서 발전가능성이 크며, 50호 수준으로 규모화가 가능한 마을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사업등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마을
 - 타부문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마을
 - 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도시근교지역, 주변땅값이 비싼 지역등은 제외)
- 마을기능 보강을 위하여 주택용지조성 및 공동이용시설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

(2)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를 선정하여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1개면에 1개지구. 단,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개발중이거나 기 개발된 면은 제외)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신규착수 예정지중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예정지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현황(호수, 인구<농업인/비농업인>),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현황, 주소득원, 호당 연간평균소득,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시설현황, 편익·복지시설현황 등)
 - 정비하여야 할 구역의 면적
 -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 위치평면도(1:25,000) 및 개발계획도(1:5,000)
 - 개발계획내용 - 주택정비계획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타부문 투자계획 -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장계획
 - 사업시행후 마을의 발전 전망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구에 대하여 필요시 농림부장관이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예정지구 확정(단, 신청지구가 많을 경우 년도별 지원기준에 의거도별 사업량 결정)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다음년도 사업예정지구가 선정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한 선정 당해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정주권개발사업비로 계상된 보조사업비중 일부를 기본계획수립비로 전용하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설정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마을현황,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포함), 마을하수도시설계획, 주택개량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등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어촌도로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함

- 기존마을정비시 농촌주택개량계획은 사업시행되는 마을에서 주민신청에 의하여 소요물량을 정확히 판단하여야하며, 사업기간내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회관, 농기계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용지와 건축공사비에 대한 재원 및 조달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확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 농림부소관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등)과 타부처소관 연관사업(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은 “농·산·어촌마을 현대화사업통합지침(정비51370-216, '96. 6. 7)”에 의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을 결정하며,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함(별지 제1호 서식)
 - 단, 기존마을만 정비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기본계획서(필요시 환경성검토서 포함) 1부
 - 위치평면도(1:25,000)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각 1부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토록 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비조달계획
 - 농촌마을정비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 편·익복지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계획

(3)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계획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 자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수립
 - 계획수립 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사업시행>

가. 년도별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년도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 예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별표 1) 징구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마.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는 기존마을정비시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택개량(개축 및 개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주택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준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마을정비시 농촌주택개량(개축, 개량)은 주민의 신청에 의하며, 주택개량의 용자지원기간은 문화마을조성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규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준공전 분양시는 준공)후 1년 이내에 착수한 주택에 우선 지원함
- 기존마을정비시 주상복합건물의 개축은 용자지원을 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건축을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신규택지에 건축시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지도를 하며, 택지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등의 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등 요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 49조(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의 요율범위 내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 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음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후 필요시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보정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양여금지원기준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주택 및 신규택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비 융자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전체 소요사업비중 양여금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면)의 면정주권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양여금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당해지구의 공동이용시설과 면정주권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과 연계 지원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생활환경정비 사업 지구에 상호연계하여 종합지원 되도록 추진

- 용자사업추진
 - 사업시행자는 주택개량자가 선정되면 용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며,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후 용지매수·보상에 소요되는 용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실적 확인 없이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용자지원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용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용자대상 : 단독주택(신규마을조성시 상가겸용주택 포함)에 한하며, 기존마을정비시 상가겸용주택 개량(개축)은 제외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자를 신청할 경우 용자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용자지원(후취담보적극 활용)
 - 용자금 취급기관은 용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 정주권개발 용자사업의(별표1)참조
- 사업비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조성용지등의 분양

-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 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부가 정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조성된용지및농어촌주택등의분양업무처리규정(‘99.3.12)”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수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택자금등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조성용지 및 주택등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공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위탁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후 귀속) 사업시행자는 차입한 융자금을 기한내 상환하여야 함
단,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된 용지는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특별회계로,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전까지의 당해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정비사업
- 분양을 시행한 지구중 공동주택용지등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용지가 있는 경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용지등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는 분양수익금 또는 기타(지방비등)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나. 보 고

-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승인시(별지 제2호서식)
-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별지 제3호서식)
- 정주권개발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 계획수립시(별지 제4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준공보고 : 준공시(별지 제6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다. 사업추진일정

-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구 신청(시·군→시·도→농림부) : 전년 5월말까지
- 사업예정지구 선정시달(농림부→시·도→시·군) : 전년 7월 말까지
- 기본계획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신청(시·도→농림부) : 전년 12월 말까지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농림부→시·도) : 당해년도 3월말까지
- 시행계획 수립(시·군→시·도 승인→농림부 보고) : 당해년도 7월 말까지

라.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주권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중심마을현대화사업의 마을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_____ 군수(시장)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첨언함)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면 적	비고
시·군	읍·면·동	리					

2000년 . . .

승락자 주소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 %)

구 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	용 자 (농특회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신규택지 조성)	○ 용지 확보	-	100	○ 발생이자등 포함
	○ 공 사 비	100	-	○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등 포함
	○ 잡 지 출	100	-	○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등 포함
	○ 관 리 비	100	-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주택건축관리비, 사업관리비, 회변경협의, 시설물관리비, 환경 환경성검토비, 포함
마을하수 처리시설	○ 용지 확보 및 제공사비	100	-	
기존마을 정 비	○ 기반시설사업	100	-	○ 정주권개발비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 용지매수보상	100	-	

[별지 제1호서식]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업명	○○ ○○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대상 지역의 요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면 적	㎡ (평)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p>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0년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도지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각 3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고				
- 지방안여금				
- 지방비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합계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 고
	면적(A)	구성비 (%)	필지	면적(B)	구성비 (%)	필지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지방안여금				
- 지방비				
○음차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마을기반정비]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4호서식]

총26-63

정주권개발(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 년	누 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3.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확정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사업시행기간 : ~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보 조							
- 국 방 양 여 고							
- 지 방 양 여 금							
- 지 방 양 비							
○용 차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마을기반조성]							
○공 사 비							
-							
-							
-							
-							
○자 재 대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상							
- 보 상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농촌주택정비등]							
○주 택 신 · 개 축							
○주 택 개 량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 보 조								
- 국 지방양여금비								
- 지방양여금비								
○ 읍 자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마을기반조성]								
○ 공 사 비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주 택 정 비								
○ 기 타								
[농촌주택정비등]								
○ 주택신·개축								
○ 주택 개 량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1. 조성용지 분양 현황

구분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개입	분양계획(필지)					분양현황(필지)					분양 율 (B/A)	분양 실시 예정
					계 (A)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B)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분양계																
계획계																

※ 분양율은 분양이 실시된 지구 기준으로 작성, 분양계획지구는 분양계획과 예정일만 기재

2. 단독주택용지 분양 현황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필지	거주지별(필지)			직업별(필지)					비고
				면지 역	군지 역	기타 지역	농업	회사원	공무원	상업	기타	
계												

3. 지구별 조성용지 평균 분양가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단독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		비고
			계획필지	조성원가 (천원/평)	감정가 (천원/평)	계획필지	감정가 (천원/평)	
계								

※ 위탁시행자는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Ⅲ. 농촌마을하수도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시설서기관 이승찬)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결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문화마을조성사업등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기존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가능한 지역

나. 장기사업목표

- 전국 정주권개발대상 면단위지역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에 1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2004
사업량(개소)		51	17	23	9	90
사업비	계	20,000	6,800	8,400	3,600	23,200
	국 고	20,000	6,800	8,400	3,600	23,2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와 기존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를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2)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 지구당 4억원 수준(국고 100%)

나. 2000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마을하수도시설	9 (10)	3,600	3,600	3,600	-	-	-

※ 9지구 완료, 10지구 착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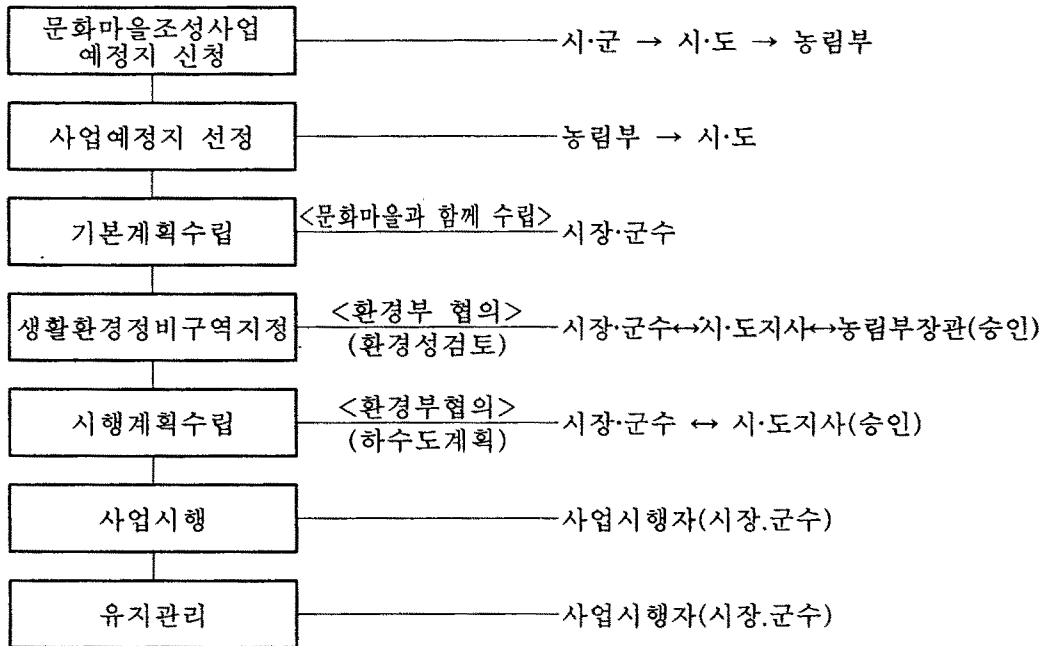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전화 02-504-9404~5)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농지개발과(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거환경개선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전남)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농어촌정비법 제 33조제2항)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마을하수도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설계·시공등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도록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마을하수도 사업시행을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추진상황, 사업비정산보고등)을 총괄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로 기선정된 지구와 하수체계상 병행처리가 가능한 인근마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가급적 마을규모가 50호 수준이상인 지역으로써
 - 기존마을의 하수체계,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마을
 - 환경오염이 심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

나.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마을하수도업무편람(환경부 1996) 및 하수도시설기준(1997. 12)에 맞게 수립
-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립시에는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처리효율이 우수한 시설로 계획하며, 무인·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함
- 마을하수도시설의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도록 계획

< 마을하수도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

(단위: mg/ℓ)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비 고
집중처리시설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인 : 8이하
현장처리시설	30이하	40이하	30이하	

※ 총질소,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의 지역에 적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마을하수도시설의 기본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서에 관한 사항
 - 슬러지처리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기존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6조의2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후 또는 시행계획승인전에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
-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문화마을조성사업(단지조성)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위탁시행할 경우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위탁시행자에게 일괄위탁토록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준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수한 토지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함.
- 용지매수는 가능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매수시 일괄매입 함

다.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법 조항 동일)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지방비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라. 설계감리등 요율

-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오·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등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에 준함

마.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바. 사업의 준공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 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사업비의 예산은 지구당 4억원(농특회계)을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별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당해년 예산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지방비 등)확보 추진
- 사업비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마을 단지조성 준공년도(문화마을조성 2~3차년도)에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나.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준공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준공시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부서 및 해당 기술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필요시 시·군 조례를 정하여 조달 가능)
 - 현지 상주직원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중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을 측정·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별지 제6호 서식)
- 시설물관리자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점검대장을 비치하며,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

- 마을하수도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수립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마을하수도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별지 제2호 서식)
- 마을하수도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3호 서식)
- 마을하수도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마을하수도준공결과보고 : 준공시(별지 제5호 서식)

다. 참고사항

- 시·군에서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하수도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할 경우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을 참고
- 사업시행자는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 의하여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로 등록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위치 :
- 시설규모 : m³/일(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설계기관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 기본계획수립 :
-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
- 마을하수도계획협의 :

3.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고
문화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등)(D)					
합계(C+D)					

4. 계획공법 및 처리수질

- 계획처리공법 :
- 계획처리수질

(단위 : mg/ℓ)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보조				
- 국 지방양여 - 지방양여 - 지방양여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계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지 구 명 :

○위 치 :

○시설규모 : m³/일(부지면적 : m²)

○사업기간 :

○주요공사

-

-

-

-

-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

○설계기관 :

○공사감리기관 :

2. 주요변경내용

3.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고				
- 지방양여				
- 지방비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사업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4. 기타사항(승인조건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총26-63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보고

1. 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 년	누 계	1/4				2/4				3/4				4/4								
							1	2	3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계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3.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 구 명 :
- 기본계획승인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준공 예정일 : . . .
- 처 리 용 량 : m³/일(처리계획호수 : 호, 처리계획인구 : 명)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 리 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사업 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처리계획			주요시설		총계획(A)			'99까지(B)			2000 계획						누계 진도 (B+D)/A (%)	비 고				
시 군	면 리	처리 용량 (m ³ /일)	처리 호수 (호)	처리 인구 (명)	처리 장 (m ²)	하수 관로 (m)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획(C)			()월말까지 실적(D)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	국 고	양 여 금	지 방 비
계																								

- ※ 1.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착공시기, 완료시기, 미착공시 추진상황 (설계중, 발주준비중, 협의중 등)등 기재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 고
				년	년	년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 고
				년	년	년	
계							
○ 공 사 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 리 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사업 관리비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지 구 명 :
- 위 치 :
- 처 리 용 량 :
- 설 치 연 도 :
- 가 동 개 시 일 :
- 처 리 공 법 :
- 유 지 관 리 부 서 :

수질검사 년 월 일	시설용량 (m ³ /일)	처리용량 (m ³ /일)	유입수질(mg/ℓ)					방류수질(mg/ℓ)					
			BOD	COD	SS	T-P	T-N	BOD	COD	SS	T-P	T-N	
전년평균													
년 월 일													
년평균													

※ 수질검사 성적표 첨부

IV. 농가주거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님
지도관 박영자)입니다.

1. 목 적

-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에 의거 추진
- 생활개선시범마을·행자부 팩키지마을의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연계
- 농가의 주거환경 중 부엌개량, 목욕실설치를 중심으로 추진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사업 발굴 지원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94.9)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2- 2004년
사 업 량		호 74,500	8,000	6,000	2,570	2,500	7,500
사 업 비	계	백만원 256,000	40,000	31,800	15,420	20,000	60,000
	용 자	179,200	28,000	22,260	10,794	14,000	42,000
	자부담	76,800	12,000	9,540	4,626	6,000	18,00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배경

-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가의 주거실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98 농진청 조사결과 실태 : 부엌개량 73.2%, 목욕실설치 73.7%
 - *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2) 지원사업의 내용

-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 부엌개량 :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작업대설치, 환기·채광시설 등
 - 목욕실설치 : 상하수도시설, 욕조 또는 샤워기 설치, 방수·환기시설 등

(3) 지원대상자 : 전국의 농가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으며 융자수혜가 가능한 농가)

(4) 지원단가 : 농가당 420만원 융자(사업비 부담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나. 2000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계	호 2,570	백만원 15,420.0	백만원 10,794.0	-	백만원 10,794.0	-	백만원 4,626.0
대 구	13	78.0	54.6	-	54.6	-	23.4
인 천	2	12.0	8.4	-	8.4	-	3.6
광 주	32	192.0	134.4	-	134.4	-	57.6
대 전	11	66.0	46.2	-	46.2	-	19.8
경 기	26	156.0	109.2	-	109.2	-	46.8
강 원	140	840.0	588.0	-	588.0	-	252.0
충 북	60	360.0	252.0	-	252.0	-	108.0
충 남	614	3,684.0	2,578.8	-	2,578.8	-	1,105.2
전 북	593	3,558.0	2,490.6	-	2,490.6	-	1,067.4
전 남	555	3,330.0	2,331.0	-	2,331.0	-	999.0
경 북	223	1,338.0	936.6	-	936.6	-	401.4
경 남	251	1,506.0	1,054.2	-	1,054.2	-	451.8
세 주	50	300.0	210.0	-	210.0	-	90.0

* 융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후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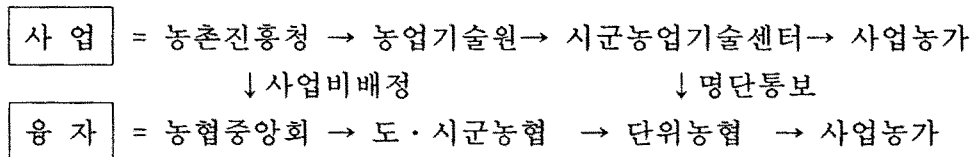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 (0331-299-2679)
- 시 · 도 : 도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신청한 농가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계획수립 : 본 시행지침에 의거 도, 광역시,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 광역시, 시군단위 농가교육 실시 : 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실시.
- 사업추진상황 파악 : 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3) 사업비 집행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대출취급기관(농협)에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 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출금액이 확정 통보되면 사업 실적 확인 없이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출금을 일시 전액 지급함(선융자 후사업 가능)

(4) 추진순기표(예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지침시달, 계획수립												
○ 농가선정, 기술교육												
○ 사업추진												
○ 자금배정 및 용자지원												
○ 평 가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 사업실시 후 농가별 사업평가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비정산은 농가별로 자체 정산토록 하고 총사업비 소요량을 파악 평가서에 기재

바.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본 사업용도로 지원된 용자금이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용자 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 조치함

<행정사항>

- 시군농업기술센터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별지 제1호서식)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전국의 농가

다. 신청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서면으로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농가의 가옥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

(2) 우선 순위

- 생활개선시범마을, 행자부 팩키지마을 거주농가에 우선 지원

(3) 농가 선정시기

- 전년도 사업신청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주거실태 등을 참고로 사업량만 신청하고, 당해 년도에 농가신청을 받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총 사업량 만 심의
- 농가선정에 대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업년도 초(1/4분기)에 실시

(4) 선정절차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 농가에 통보
-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액융자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변경 농가 심의는 해당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결재로 대신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위의 경우 시도별로 사업의 종류를 1~2가지로 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선정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기대되는 성과,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등

[별지 제1호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개량실적

(매분기말)

시도별	개량실적(호)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응자액	자부담	기 타

○ 시설설치내용

(단위 : 호)

시도별	개량실적	개량비용(만원)				작업대배치				목욕실유형	
		500 이하	501~700	701~1,000	1001 이상	-자형	┌자형	└자형	=자형	온냉수	냉수

○ 개량지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평가

* 3/4분기 보고시는 사업 전·후 사진을 부록·목욕실 각 2매씩 제출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을구분 : 시범마을, 일반마을

마을명 : 읍면 리

농가명			사업규모(평)			투자계획(천원)			사업시기 (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역	목욕실	기타	계	음자	자부담	

위와 같이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평 가 서

주 소	농가명	사 업 규 모(평)			소요사업비(천원)			완료일	평 가
		부 업	목욕실	기타	계	용 자	자부담		
						(%)	(%)		

첨부 : 개량후 사진 매. 끝

200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권상필, 시설서기관 이승찬) 입니다.

1. 목 적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된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지하수를 개발, 음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농업·축산용수 등 다목적용수 공급
-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 시설채소재배 수요 등을 사전예측하여 필요수량 확보
-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
- 2004년까지 5,000개소의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4~'97	'98	'99	2000 (예산안)	2001~ 2004	
사업량(개소)	5,000	1,464	400	425	425	2,286	
사 업 비	계	850,000	253,000	68,000	72,250	72,250	384,500
	국 고	425,000	126,500	34,000	36,125	36,125	192,250
	지방교부금	425,000	126,500	34,000	36,125	36,125	192,250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사업추진배경 :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
- 사업내용
 - 지하수 기초조사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영향조사 등
 - 수 원 공 개 발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오염방지그라우팅, 폐공처리 등
 - ※ 지구당 시추조사는 필요심도까지 1공을 시행한 후, 실패시는 추가로 1공을 시추조사할 수 있음.
 - ※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우물 자재 구경은 200mm, 1일채수량은 공당 150톤 이상으로 하며,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도지사 책임하에 공당 1일 채수량 100톤 이상으로 조정가능
 - 이용시설설치 : 송·배수관, 배수지(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재난시 비상급수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시설 규격의 소화전 설치
 -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23조)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및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지역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기초조사 포함) 80백만원
 - 이용시설설치 9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나. 2000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지 방 교부금	자부담
	사업비 계	예산액(백만원)			응 자		
		계	국 고	응 자			
425	72,250	36,125	36,125	-	36,12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전화 : 02-500-2665)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농축산과, 주택과, 주택지적과, 농지개발과, 수자원 개발사업소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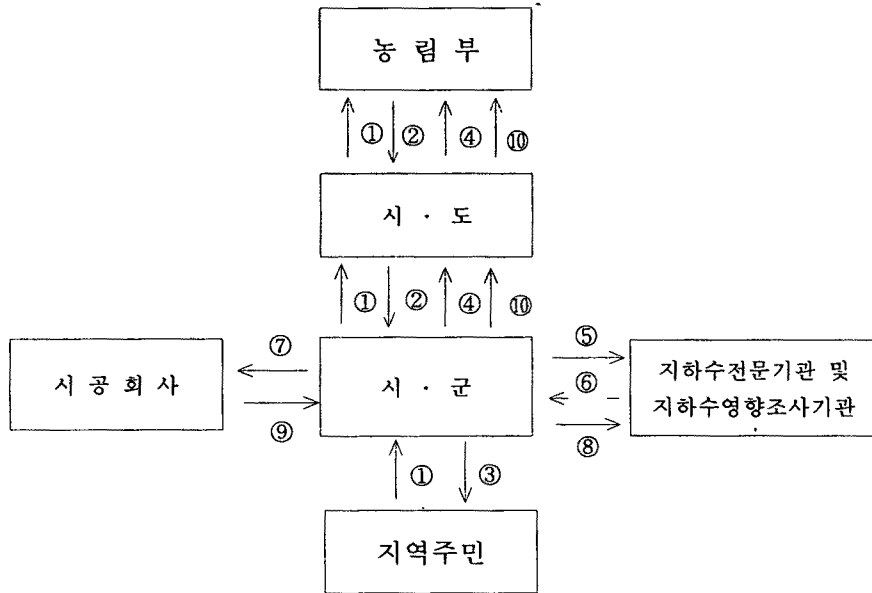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1) 선정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기 관 명	추진내용
농 립 부	○ 기본지침 작성
시·도지사	○ 대상지 검토확정
시장·군수	○ 사업홍보(사업내용, 지원조건 등), 대상지선정
지 역 주 민	○ 사업후보지 신청

2) 사업시행 체계도



- ①사업후보지 선정 ②예산내시 및 실시요령 시달 ③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설명
 ④사업지구 선정 보고 ⑤기초조사 및*영향조사 의뢰 ⑥조사성과품 제출 ⑦사업시행
 ⑧공사감독 위탁 및 승인 ⑨사업준공 및 정산 ⑩사업 준공보고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지구 및 우선순위

- 전국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중 우물 및 하천수 이용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로서 이용 가구수가 많은 마을(50호 이상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정주권개발 및 한계농지정비사업 등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마을
-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2)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 설치비용 등 자부담능력, 주민호응도, 사후관리 능력, 사업의 효율성, 개발시급성 등을 감안선정
- 지역주민이 자발적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후관리 등에 적극적인 지원여부 등을 고려(정부에서 강요하는 사업이 아님을 주지시킬 것)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제외
 - 상수도계획 수립예정이거나 수립된 지역
 - 자연수이용 마을이더라도 수질오염이 안된 수량이 풍부한 지역
 - 인구감소로 앞으로 존속할 수 없는 지역
 - 수몰예정지 등 항구적 주거지로 부적합한 지역
- 특히 본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 관리조직 구성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관리비 징수, 적립금 적립이 부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와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 립 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기초조사(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개발 및 이용시설설치로 구분 수립(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진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시행계획 변경

- 현지어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시행 단, 지구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협의보상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용

5) 설계 및 시공

<세부설계시 고려사항>

- 정주권 개발사업과 동일 지구일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설계 실시
- 각종 시설 및 자재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 사업비 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 10. 12)을 참고하여 동일공종의 공인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지하수기초조사 및 지하수개발영향조사>

- 시장·군수는 지하수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영향권내의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현저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수원공 개발>

-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양수시험 등 수원공개발은 지하수기초조사 및 영향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에 명시된 정부투자기관 또는 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토록 함.
- 수원공의 확공위치는 안정수위 이하의 심도까지 적합하게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착정 및 우물자재 등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확인
- 수원공개발시(착정)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가 날인
 - ※ 수원공개발시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수량부족 등의 사유로 개발을 포기하거나 관정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수질검사 : 수원공 개발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 관련규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항목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을 발견시에는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개발추진
 - (별표1)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
 - 가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이 미설치된 지구의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지구에 한하여 이용
 - 이용시설설치 후 생활용수를 공급하기전에 반드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항목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용수공급

<이용시설설치>

- 이용시설은 정비 51370-246('95. 7. 21)호로 시달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계획 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
 - 배수지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는 용수사용량(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을 고려하여 결정
(예 : 도시지역 1일 용수사용량 : 450 ℓ/인)
 -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정수시설 필요시 정수시설 설치비는 최고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 등을 투입토록 함.
 - 배수지시설은 외부인 출입방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울타리)을 반드시 설치하고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설치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 설치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관정 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1개소당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2) 자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지구여건을 감안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구간 조정시행 가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관리자 : 시장·군수
 - 4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적격자(시·군수도과 등)와 생활용수관리조직 대표자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시설물을 관리
-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로 등록하여 시·군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관리비용 등 : 시장·군수가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 등 포함)를 징수하여 지급·적립조치(지역주민 의견 반영)
- 수질검사 : 관련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조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수·암모니아성질소 및 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전항목검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이용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거 시행

- 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지원(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배수지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
특히, 양수장, 물탱크 :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와 기술 및 운영관리 측면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8. 30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월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기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한다.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실시 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8. 200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생활용수개발 신청서
- 위치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별표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생물에 관한 기준(3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세균	100CFU/ml	하수오물, 폐기물,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수처리 효율의 지표로 이용되며,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의 판단자료
2 대장균군	불검출/50ml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3 여시니아균	음성/2ℓ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10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납(Pb)	0.05mg/ℓ	안료, 도료, 활자제조업, 연판제조업, 인쇄공장, 유리제조공장 등의 폐수 및 납관에서의 유출	0.5mg/day이상 섭취시 축적성 만성중독 - 정신착란, 심근마비, 악성빈혈 급성중독 - 복통, 구토 소아 : 신경, 면역장애
5 불소(F)	1mg/ℓ	지하수중의 천연상태 (불소인회석), 살충제, 방부제, 불소화학	1mg/ℓ 이하 - 충치예방효과 만성중독(1mg/ℓ 이상) - 반상치 신장 : 지방산 산화효소활성저하, 간 : 질소, 지방함량 감소
6 비소(As)	0.05mg/ℓ	광산제련공업, 의약품 및 비소계 살충제 제조공장 폐수, 안료 및 도료공업 유기, 무기상태 (3, 5가 : 독성크다)	만성중독(0.21mg/ℓ 이상) - 수족지각장애, 수족각화증, 빈혈, 흑피증, 손톱, 모발의 위축, 급성중독(성인 : 5~50mg섭취) - 구토, 설사 100~150mg : 경구치사량
7 셀레늄(Se)	0.01mg/ℓ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에 이용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성착색, 치아장애, 위장관으로 93%흡수, 알칼리병, 혈운증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8	수 은 (Hg)	불검출	8소다공업, 농약제조, 수 은정제공장, 도료공장폐 수, 폐건전지 무기상태(1,2가염 : 15% 흡수), 유기수은(메틸수 은 : 미생물에 의해 생 성, 100% 흡수되어 먹이 사슬에 축적)	만성중독 : 언어장애, 지각이상, 신경쇠약, 난청유발, 생식선 자극(돌연변이) 급성중독 : 위장병, 구내염, 신장 장애(단백뇨) 유기수은이 축적된 담수어의 섭취 (일본 : 미나마타병)
9	시 안 (CN)	불검출	도금공장, 가스공업, 코 크스공장, 정유공장 등 폐수 염소처리에 의한 무해한 시안산염으로	세포호흡저해, 질식성경련, 의식장 해, 뇌의 젓산함량증가로 인한 혼수 상태와 뇌손상 50~60mg : 경구치사량 0.05mg/l 이상 : 물고기에 유해
10	6가크롬 (Cr)	0.05mg/l	염색공업, 피혁제조, 석 유화학공업, 도금공장폐 수	만성중독 - 피부궤양, 폐암유발 급성중독 - 미각장애, 위장염 0.1mg/l : 음용수로서 유해
11	암모니아성 질소 (NH ₄ -N)	0.5mg/l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 물배설물, 비료, 폐기물 의 침출수, 자동차 및 연소기관, 대기중의 낙 진, 토양내의 유기물질	
12	질산성질소 (NO ₃ -N)	10mg/l		유아 : 10mg/l 이상의 물과 우유는 청색증(Blue baby) 유발 (Methemoglobinemia : 혈액과 반응 하여 호흡장애)
13	카드뮴 (Cd)	0.01mg/l	광산(갱내수의 산성화에 의한 용출, 광재, 습식제 련공정중 가용성염의 용 출, 도금공장폐수 및 급 수설비에 의한 오염)	간, 신장, 갑상선, 뼈에 축적 만성중독 - 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애, 골연화증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섭취 (일본 : 이따이 이따이병)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7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4	페놀 (C-H-OH) 0.005mg/ℓ	석탄,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약, 페놀계 합성수지공장폐수, 살충제의 미생물 분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 생성(독성보다 악취가 문제) 만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15	총트리할로메탄 (THM) CHCl & CHBr Cl & CHBr 0.1mg/ℓ	자연유기물(폴빈산, 휴민산)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발암성물질(THM) 생성	발암성 물질 만성중독 - 불안, 불면, 흥분, 간위축, 신장장해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피부탈지
16	다이아지논 0.02mg/ℓ	유기인계 농약물질, 살충제 합성제조, 석유제품 촉매	맹독성, 발암성물질, 신경과 뇌신경계 마비증상, 근육경련
17	파라티온 0.06mg/ℓ		
18	말라티온 0.25mg/ℓ		
19	페니트로티온 0.04mg/ℓ		
20	카바릴 0.07mg/ℓ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감퇴, 혼수, 호흡곤란
21	1.1.1-트리클로로에탄 C H Cl 0.1mg/ℓ		눈 점막자극 고농도 : 마취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C Cl 0.01mg/ℓ	금속탈지공업, 드라이클리닝용매, 염소화탄산수소류 생산공장	중추신경계 억제, 불쾌감, 마취 고농도 : 의식불명, 반사기능 저하, 간장장해, 다발성신경염, 간종양유발(새앙쥐)
23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C HCl 0.03mg/ℓ	금속산업 : 비윤활용매, 드라이클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억제, 두통, 간장해, 관절이상, 간종양유발(새앙쥐)
24	디클로로메탄 CH Cl 0.02mg/ℓ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5	벤젠 CH	0.01mg/ℓ	화학공장 : 페놀, 사이크로헥산 생산의 중간물질 공업 :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합성을 위한 중간물질이나 용매, 기체코크생산의 부산물
26	톨루엔 C H CH	0.7mg/ℓ	
27	에틸벤젠 C H C H	0.3mg/ℓ	
28	크실렌 CH ₄ (CH ₃) ₂	0.5mg/ℓ	메스꺼움, 구토, 의식불명 유발, 신장 및 간장손상
29	1,1-디클로로에틸렌	0.3mg/ℓ 이하	
30	사염화탄소	0.002mg/ℓ 이하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16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1	경도	300mg/ℓ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 (Ca, Mg, Sr, Ba)
32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폐기된 유기물
33	냄새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용수원의 수질변화 물처리공정의 결합,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미생물 성장을 암시
34	맛	맛이외는 무미무취	
35	동(Cu)	1mg/ℓ	동제련공장, 금속표면(도금)업소, 수도용 동관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6	색도	5도	미생물, 플랑크톤의 번식 용해성물질, 오수 등의 혼입	심미적 나쁜영향
37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0.5mg/l	합성세제	1.0~1.5mg/l : 기름기있고, 생선 냄새 규제이유 : 맛, 거품
38	수소이온농도 (pH)	5.8~8.5	알칼리폐수 또는 산폐수	낮은 pH : 수도시설의 부식 높은 pH : 쓴맛, 미끈미끈한 느낌, pH8.0이하에서 염소소독이 효과적
39	아연(Zn)	1mg/l	광산제련공업, 지하수중 천연유래	20~30mg/l : 금속맛, 땀은맛 급성중독 : 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 불균형
40	염소이온 (Cl)	150mg/l	세균소독을 위해 투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41	중발잔유물	500mg/l	맛, 경도, 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스템의 부식, 스케일의 형성
42	철(Fe)	0.3mg/l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 수중에서 천연유래	0.3mg/l : 황갈색, 적갈색 0.5~1mg/l : 금속성맛 급성중독 - 설사, 구토, 혈액증
43	망간(Mn)	0.3mg/l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 수중에서 천연유래	0.05mg/l : 흑색, 흑갈색 0.5~1mg/l : 금속성맛 56mg/l : 개의 치사량
44	탁도	2도	가정 및 산업용수의 일반적인 수질오염지표	살균소독방해, 유기체의 의한 질병 감염 우려, 부유물질의 함유의미
45	황산이온 (SO ₄)	200mg/l	산업폐수, 대기방출, 화석연료의 연소	1000mg/l : 설사유발 알카리도 낮은 물에서 급수계 금속 부식
46	알루미늄	0.2mg/l	산업폐기물, 광물, 토양 침출, 응집처리	0.1mg/l 이상 : 변색(퇴색)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뱀 제외), 호흡기 흡입시 허파와 임파선에 축적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치			개발공수	급수대상							사업비(백만원)				선정기준		수맥조사		비고			
		군	면	리		총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공업등	계	국고	지방교부금	기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시		미 실시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작	전작											m³/일	ha
계					공	m³/일	m³/일	호	명	m³/일	ha	ha	m³/일											

- ※ 1. 생활용수는 250 ℓ -300 ℓ/인/일 기준
-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단위 : 천원)

	승인액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 수 원 공	공													
○ 이 용 시 설														
- 양수장	m'													
- 물탱크	m'													
- 송수관	m													
- 기 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 업 계 획			사 업 비(백만원)				진 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자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m'	m								

[별지 제4호 서식]

지하수개발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명)			
○ 기타용수 :				
주요 시설 내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³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³				
- 양 수 장 : 평				
- 송·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증)모타펌프				
- 구경 ()m/m, 설치심도 ()m				
- 마력 ()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c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 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 측정관 (○, ×)
	상부보호공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 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자체가26-1-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재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치내용	비 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

알 린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생활용수 급수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와 관리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 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군 ○○ 면 ○○ 리
- 시설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시행자 : ○○ 시장·군수
- 관리자 : ○○ 시·군 ○○ 면 ○○ 리 ○○ 번지
 성명 ○○○(TEL)

○○ 시·군 ○○ 과 ○○ 계
성명 ○○○(TEL)

※ 오염행위 및 시설이상을 발견시에는 ○○ 시·군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100cm , 세로 80cm
- 재질 및 두께 : 스테리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배수장 울타리 출입문 옆 지상 1.2m